

상속세제 과세방식별 공제제도 비교연구
- OECD 회원국 사례를 중심으로

- 2023. 12. -

이 연구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연구용역사업으로 수행된 것으로서,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한 연구자의 개인 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김영순

상속세제 과세방식별 공제제도 비교연구
- OECD 회원국 사례를 중심으로

2023. 12.

책임연구원 김 영 순 (인하대학교)

연 구 원 강 민 조 (동덕여자대학교)

제 출 문

국회예산정책처장 귀하

본 보고서를 「상속세제 과세방식별 공제제도 비교연구 - OECD 회원국 사례 중심으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구책임자 : 김 영 순 (인하대학교)

2023년 12월

목 차

- 제 목 차 례 -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 주요 내용 및 방법	1
II. 상속세 과세방식 일반론	2
1. 상속세 과세방식의 유형	2
가. 유산세 방식	2
나. 유산취득세 방식	2
다. 법정상속분 방식	3
2. 상속세제 과세방식별 장·단점	3
가. 유산세 방식의 장·단점	3
나. 유산취득세 방식의 장·단점	4
다. 법정상속분 방식의 장·단점	4
라. 상속세제 과세방식별 장·단점 비교	4
3. 우리나라의 상속세 과세방식	5
III. 우리나라 상속세 공제제도의 내용 및 현황	8
1. 공제제도의 연혁	8
2. 현행 공제제도 내용	10
가. 인적공제	10
나. 물적공제	12
다. 상속공제 적용의 한도	16
3. 공제제도 현황	16
4. 상속세 과세방식 전환 필요성에 대한 논의	21
가. 세계적 추세와 국내 상황	21
나. 우리나라의 상속세 폐지 견해	22
다.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 견해	22
라. 현행 유산세 방식 유지 견해	23
IV. OECD 회원국의 상속세제 공제제도 현황	24
1. OECD 회원국의 상속세 과세 현황	24
가. OECD 국가들의 상속세 현황	24

나. 캐나다의 상속세 폐지 경과	25
다. 스웨덴의 상속세 폐지 경과	26
라. 미국의 상속세 존폐 논의	28
2. 상속세를 과세하는 국가의 공제제도 현황	30
가. 영국	30
나. 미국	37
다. 덴마크	44
라. 프랑스	46
마. 독일	48
바. 일본	52
사. 벨기에	60
아. 칠레	63
자. 핀란드	65
차. 그리스	66
카. 헝가리	69
타. 아이슬란드	70
파. 아일랜드	71
하. 이탈리아	72
거. 리투아니아	73
너. 룩셈부르크	74
더. 네덜란드	76
러. 폴란드	77
머. 슬로베니아	79
버. 스페인	80
서. 터키	82
어. 포르투갈	84
저. 스위스	84
3. 시사점	95
가. 상속세 과세방식별 공제제도의 차이 여부	95
나.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인적관계의 분류	97
다. 배우자 공제의 비교	98
라. 자녀 공제의 비교	100
마. 인적관계에 따른 세율의 차이	102

바. 추가 공제	107
사.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이외의 사람에 대한 인적공제	108
아. 가족 주택에 대한 공제	109
자. 소액 상속 공제	111
4. 소결론	112
가. 배우자 공제 확대의 필요성	112
나. 인적 추가공제의 세분화 및 다양화	113
다. 물가상승을 반영한 공제금액의 변동	114
라. 인적관계에 따른 세율의 차등화	115
마. 배우자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확대하는 방안	115
바.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실효성 검증	115
V. 상속세제 과세방식 전환에 따른 세부담 효과	117
1. 과세방식 전환에 따른 세부담 변동	117
가. 재산규모의 분포	117
나. 인적 특성의 가정	118
다. 기초공제와 일괄공제를 모두 폐지하는 경우	119
라. 유산세 방식의 기초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120
마. 유산세 방식의 기초공제를 적용하면서 배우자공제 제도를 확대	121
2. 과세방식 전환에 따른 세수 증감 시뮬레이션	122
VI. 결론	126
참고문헌	127

- 표 차례 -

<표 1> 유산세 방식과 유산취득세 방식의 장단점 비교	4
<표 2> 유산세 방식과 유산취득세 방식에 따른 세부담 비교	5
<표 3> 우리나라의 상속세 과세체계	6
<표 4> 배우자 공제 제도의 연혁	8
<표 5> 금융재산 상속공제 내용	12
<표 6> 가업상속 공제의 내용	14
<표 7> 가업상속 공제한도액	15

<표 8> 총 세수 중 상속세의 비중(단위: 백만원)	16
<표 9> 우리나라의 상속세 과세 인원	17
<표 10> 연도별 상속공제액의 추이(2018~2022년) (단위: 백만원)	17
<표 11> 연도별 상속공제액의 추이(2013~2017년) (단위: 백만원)	18
<표 12> 연도별 상속공제액의 추이(2008~2012년) (단위: 백만원)	18
<표 13> 2022년 귀속 상속세 결정세액 중 상속공제액의 내용(단위: 백만원)	19
<표 14> 2021년 귀속 상속세 결정세액 중 상속공제액 내용(단위: 백만원)	19
<표 15> 상속세 분위별 결정현황 및 점유비(2022년)	20
<표 16> 상속세 분위별 결정현황 및 점유비(2018년)	20
<표 17> OECD 국가들의 상속세 과세 방식	24
<표 18> 영국의 총 세수 중에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율(단위: 백만 파운드)	31
<표 19> 영국의 상속세 과세체계	32
<표 20> 영국의 연도별 상속공제액의 비교(단위: 백만 파운드)	33
<표 21> 영국의 결혼 여부에 따른 납세액의 비교(남성과 여성 모두 포함)	34
<표 22> 영국의 유산액에 따른 상속인의 수, 상속세액 등(2020~2021)	35
<표 23> 영국의 생전 증여 기간에 따른 세율	36
<표 24> 영국의 상속세 세율(단위: %)	36
<표 25> 미국의 상속·증여세 비율(단위: 백만 달러)	39
<표 26> 미국의 상속세 과세체계	40
<표 27> 미국의 2021년 상속재산과 순자산가치(단위: 천달러)	41
<표 28> 미국의 상속공제액(단위: 천달러)	42
<표 29> 미국의 연도별 상속 공제액(2016년부터 2021년)(단위: 천달러)	43
<표 30> 미국의 사망자 수 비율과 상속세 신고(단위: 천달러)	43
<표 31> 미국의 상속세 세율	43
<표 32> 덴마크의 상속세 비율(단위: 백만 크로네)	44
<표 33> 덴마크의 상속세율	45
<표 34> 프랑스의 상속세 비율(단위: 백만 유로)	46
<표 35> 프랑스의 상속세율(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47
<표 36> 독일의 상속세 비율(단위: 백만 유로)	48
<표 37> 독일의 상속세 과세체계	49
<표 38> 독일의 물적공제 내용	50
<표 39> 독일의 인적공제 금액	51
<표 40> 독일의 추가 공제액(특별인적공제금액)	51

<표 41> 독일의 상속세율	52
<표 42> 일본의 상속세 세수 및 비중(단위: 억 엔)	55
<표 43> 일본의 상속세 과세체계	56
<표 44> 일본의 상속재산 금액별 상속공제액(2021년)	58
<표 45> 일본의 법정상속인원별 피상속인의 수(2021년)	58
<표 46> 일본의 상속세 세율	59
<표 47> 벨기에의 상속세 비중(단위: 백만 유로)	61
<표 48> 벨기에(브뤼셀 지역)의 세율	62
<표 49> 벨기에(왈론 지역)의 세율	62
<표 50> 벨기에(플레미시 지역)의 세율(배우자등)	63
<표 51> 칠레의 상속세 비중(단위: 백만 칠레페소)	64
<표 52> 칠레의 상속세 인적공제	64
<표 53> 칠레의 상속세율	64
<표 54> 핀란드의 상속세 비율(단위: 백만 유로)	65
<표 55> 핀란드의 상속세율(1그룹)	66
<표 56> 핀란드의 상속세율(2그룹)	66
<표 57> 그리스의 상속세 비중(단위: 백만 유로)	67
<표 58> 그리스의 상속세율(1그룹)	68
<표 59> 그리스의 상속세율(2그룹)	68
<표 60> 그리스의 상속세율(3그룹)	68
<표 61> 헝가리의 상속세 비중(단위: 백만 포린트)	69
<표 62> 아이슬랜드의 상속세 비중(단위: 백만 크로나)	70
<표 63> 아일랜드의 상속세 비중(단위: 백만 유로)	71
<표 64> 아일랜드의 인적공제	72
<표 65> 이탈리아의 상속세 비중(단위: 백만 유로)	72
<표 66> 이탈리아의 상속세 인적공제와 세율	73
<표 67> 리투아니아의 상속세 비중(단위: 백만 유로)	73
<표 68> 룩셈부르크의 상속세 비중(단위: 백만 유로)	74
<표 69> 룩셈부르크의 상속세율	75
<표 70> 룩셈부르크의 상속세 계수	75
<표 71> 네덜란드의 상속세 비중(단위: 백만 유로)	76
<표 72> 네덜란드의 인적공제	76
<표 73> 네덜란드의 상속세율	77

〈표 74〉 폴란드의 상속세 및 증여세 비중(단위: 백만 즈워티PLN)	77
〈표 75〉 폴란드의 인적공제	78
〈표 76〉 폴란드의 상속세율(1그룹)	78
〈표 77〉 폴란드의 상속세율(2그룹)	79
〈표 78〉 폴란드의 상속세율(3그룹)	79
〈표 79〉 슬로베니아의 상속세 및 증여세 비중(단위: 백만 유로)	79
〈표 80〉 슬로베니아의 상속세 세율	80
〈표 81〉 스페인의 상속세 및 증여세 비중(단위: 백만 유로)	80
〈표 82〉 스페인의 상속세율	82
〈표 83〉 스페인의 상속세 계수	82
〈표 84〉 터키의 상속세 및 증여세 비중(단위: 백만 리라)	83
〈표 85〉 터키의 상속세율	83
〈표 86〉 스위스(아펜젤-아우서로덴 주)의 상속세율	85
〈표 87〉 스위스(아펜젤-이너로덴 주)의 상속세율	85
〈표 88〉 스위스(바젤란트 주)의 공제금액 및 상속세율	85
〈표 89〉 스위스(바젤슈타트 주)의 상속세율	86
〈표 90〉 스위스(바젤슈타트 주)의 상속세 초과 세율	86
〈표 91〉 스위스(베른 주)의 상속세 계수	86
〈표 92〉 스위스(프리부르 주)의 상속세율	87
〈표 93〉 스위스(제네바 주)의 상속세율	87
〈표 94〉 스위스(글라루스 주)의 인적공제액	88
〈표 95〉 스위스(글라루스 주)의 상속세율	88
〈표 96〉 스위스(취라 주)의 상속세율	89
〈표 97〉 스위스(루체른 주)의 상속세율	89
〈표 98〉 스위스(뇌샤텔 주)의 상속세율	89
〈표 99〉 스위스(니트발덴 주)의 상속세율	90
〈표 100〉 스위스(샤프하우젠 주)의 공제액 및 상속세율	90
〈표 101〉 스위스(샤프하우젠 주)의 상속 계수	91
〈표 102〉 스위스(졸로투른 주)의 공제액 및 상속 세율	91
〈표 103〉 스위스(졸로투른 주)의 인적관계에 따른 세율	91
〈표 104〉 스위스(장크트갈렌 주)의 상속 세율	91
〈표 105〉 스위스(투르가우 주)의 상속 세율	92
〈표 106〉 스위스(티치노 주)의 상속 세율	93

〈표 107〉 스위스(우리 주)의 상속 세율	93
〈표 108〉 스위스(발레 주)의 상속 세율	93
〈표 109〉 스위스(보 주)의 상속 세율	93
〈표 110〉 스위스(주크 주)의 상속세율	94
〈표 111〉 스위스(주크 주)의 상속세 계수	94
〈표 112〉 스위스(취리히 주)의 상속세율	95
〈표 113〉 스위스(취리히 주)의 상속세 계수	95
〈표 114〉 유산세 방식 국가의 배우자 및 자녀 공제 비교(단위: 달러)	96
〈표 115〉 유산취득세 방식 국가의 배우자 및 자녀 공제 비교(단위: 달러)	96
〈표 116〉 국가별 인적공제 그룹 수의 비교	97
〈표 117〉 배우자 공제의 비교	99
〈표 118〉 자녀 공제액의 비교	100
〈표 119〉 배우자 공제와 자녀 공제의 비교	101
〈표 120〉 인적관계에 따른 세율 비교	103
〈표 121〉 인적관계에 따른 계수	105
〈표 122〉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이외의 자에 대한 인적공제 비교	108
〈표 123〉 소액 상속 공제 비교	111
〈표 124〉 소비자물가상승률(2010~2022년)	114
〈표 125〉 재산규모별 피상속인 비율	117
〈표 126〉 상속인 인적 구성 비율의 추정	118
〈표 127〉 기초공제와 일괄공제를 폐지하는 경우 세부담(유효세율) 변화	119
〈표 128〉 기초공제와 일괄공제를 폐지하고 배우자공제를 2배로 확대하는 경우 세부담(유효세율) 변화 ...	120
〈표 129〉 기초공제 2억원을 적용하는 경우 세부담(유효세율) 변화	120
〈표 130〉 기초공제 3억원을 적용하는 경우 세부담(유효세율) 변화	121
〈표 131〉 기초공제 2억원을 적용하고 배우자공제를 2배로 확대하는 경우 세부담(유효세율) 변화 ...	121
〈표 132〉 기초공제 3억원을 적용하고 배우자공제를 2배로 확대하는 경우 세부담(유효세율) 변화 ...	121
〈표 133〉 기초공제와 일괄공제를 폐지하는 경우 세수의 증감	123
〈표 134〉 기초공제와 일괄공제를 폐지하고 배우자공제를 2배로 확대하는 경우 세수의 증감 ...	123
〈표 135〉 기초공제 2억원을 적용하는 경우 세수의 증감	124
〈표 136〉 기초공제 3억원을 적용하는 경우 세수의 증감	124
〈표 137〉 기초공제 2억원을 적용하고 배우자공제를 2배로 확대하는 경우 세수의 증감	124
〈표 138〉 기초공제 3억원을 적용하고 배우자공제를 2배로 확대하는 경우 세수의 증감	125

- 그림 차례 -

〈그림 1〉 OECD 국가의 총 세수에서 상속증여세의 비중 (2019년) (단위: %)	25
〈그림 2〉 스웨덴 상속 및 증여세제의 역사적 변천 과정	27
〈그림 3〉 OECD 회원국의 상속세 연혁 등	29
〈그림 4〉 미국의 세목별 징수액 및 환급 현황(2021년과 2022년)(단위: 천달러)	38
〈그림 5〉 일본의 국세 세목별 세수 구성비	54
〈그림 6〉 일본의 국세 및 인지수입 결산액(일반회계)의 추이	55
〈그림 7〉 자녀 공제와 부의 분포	102
〈그림 8〉 인적관계(배우자, 자녀)에 따른 법정세율의 비교(단위: 달러)	105
〈그림 9〉 1980년과 2020년의 자녀 공제한도액과 최고세율의 변화	107

요 약

□ 상속세 과세방식의 유형 및 장·단점

- (유산세 방식)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 피상속인의 생전 누적 재산에 대한 세제 정산의 성격을 가지며, 부의 재분배 및 세무행정의 효율성이 높음. 그러나 상속인 간에 유산분할을 촉진하는 유인이 적고, 상속인들이 자신의 인적요소와 무관한 공제 혜택을 받으므로 담세력에 상응한 조세가 아니라는 비판이 있음.
- (유산취득세 방식) 피상속인의 유산은 무상으로 취득하는 상속인·수유자·수증자 등의 취득재산가액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 상속인 각자의 담세력에 합치하고, 상속 분할을 촉진하여 부를 재분하는 효과가 큼. 그러나 상속인 수를 늘려 조세를 회피할 우려와 세무행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법정상속세 방식) 기본적으로 유산취득세 방식이지만, 과세대상 금액에 각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하여 산출한 의제 상속세액을 산출하고 이를 합한 상속세 총액을 실제 상속한 과세가격의 비율로 안분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방식. 유산취득세 방식에서 우려되는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그러나 계산이 복잡하여 납세협력 비용이 증가하는 것이 단점임.
-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음. 그러나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 우리나라의 상속세 공제제도 현황

- (공제제도 연혁) 1996년 말에 각종 인적공제 제도를 전면 개편한 후 대부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음. 배우자 공제 한도액과 기초공제액, 일괄공제액은 1996년 말 이후 금액의 변화가 없으며, 2015년 자녀와 연로자(각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미성년자, 장애인에 대한 공제액(연간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을 상향하는 개정을 함.
- (현행 공제제도) 인적공제로는 배우자 공제, 자녀공제, 추가공제(미성년자, 연로자, 장애인)가 있음. 물적공제로는 금융재산 공제, 가업상속 공제, 영농상속 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재해손실 공제가 있음.
- (공제제도 현황) 2018년 기준으로 전체 피상속인 중 약 2.24%만 상속세를 부담

하고 나머지는 과세미달이었음. 그러나 2022년에는 4.52%로 늘어났음. 2018년에 상위 10%가 총결정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2.3%였으나 2022년에는 92.0%임. 상속세가 대자산을 중심으로 상당히 누진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상속공제의 내용은 1997년 개편 이후 거의 변화가 없으며, 연도별 상속공제액의 추이도 거의 비슷함. 상속공제 중에 배우자 공제의 비율은 40% 정도이고, 그 밖의 인적공제는 약 2%에 불과함. 배우자 공제는 총 상속재산가액 10~100억 원 구간에서 크게 나타나는데 비해 기타공제는 5~10억 원 이하 구간에서 크게 나타남. 즉, 상속재산이 많을수록 배우자 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상속세 과세방식 전환 필요성에 대한 논의) 1972년 이후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하는 세계적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상속세 개편 논의가 이루어짐. 상속세를 폐지하자는 견해, 현재의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견해, 현재의 유산세 방식을 유지하면서 공제제도를 개편하자는 견해 등이 제시됨.

□ OECD 회원국의 상속세 과세 현황

- OECD 회원국 38개국 중 상속 관련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는 미국, 독일, 일본, 우리나라 등 24개국임. 24개국 중에 우리나라, 덴마크, 미국, 영국은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그 외 20개국은 유산취득세 방식을 취함.

<표 17> OECD 국가들의 상속세 과세 방식

상속세 유형	국가
유산취득세형	벨기에, 칠레,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위스, 터키
유산세형	덴마크, 한국, 영국, 미국
개인소득세 하에 증여세	라트비아(상속세 없음), 리투아니아(상속세와 분리)
상속세 폐지	호주(1979), 오스트리아(2008), 캐나다(1972), 체코(2014), 이스라엘(1980), 멕시코(1961), 뉴질랜드(1992), 노르웨이(2014), 슬로바키아(2004), 스웨덴(2004)

※자료 :OECD, Inheritance Taxation in OECD Countries, 2021.

- (상속세 과세방식별 공제제도 차이 여부)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취득세로 하든 유산세로 하든 인적공제 제도에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음. 대부분 국가는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공제 한도를 최고로 인정하고 있음. 다만, 유산세 방식을 취하는 국가 중 배우자 공제에 있어서 한국만이 유일하게 공제 한도를 설정하고 있으며, 나머지 국가는 한도 없이 전액 면제하고 있음.

<표 114> 유산세 방식 국가의 배우자 및 자녀 공제(단위: 달러)

	배우자 공제	자녀 공제
미국	면제	12,920,000달러(통합세액 공제)
영국	면제	641,026 유로
덴마크	면제	321,700크로네(일괄공제 금액)
한국	2,541,778	423,630
스위스의 솔로투른 주	면제	면제

※자료: OECD(Inheritance Taxation in OECD Countries, 2021)와 IBFD의 Tax Research Platform(<https://research.ibfd.org>)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표 115> 유산취득세 방식 국가의 배우자 및 자녀 공제(단위: 달러)

	배우자 공제	자녀 공제
리투아니아	면제	면제
스위스의 대부분 의 주	면제	면제
포르투갈	면제	면제
폴란드	면제	면제
헝가리	면제	면제
아일랜드	면제	335,000유로
일본	면제	3,600만엔
프랑스	면제	100,000유로
룩셈부르크	면제	면제(법정상속분 이내)
이탈리아	1,000,000유로	1,000,000유로
네덜란드	723,526유로	22,918유로
독일	500,000유로	400,000유로
그리스	400,000유로	400,000유로
핀란드	90,000유로	60,000유로
칠레	50UTMs	50UTMs
스페인	15,956.87유로	47,858.59유로(13세 미만), 15,956.87유로(21세 미만)
벨기에	15,000유로	15,000유로

※자료: OECD(Inheritance Taxation in OECD Countries, 2021)와 IBFD의 Tax Research Platform(<https://research.ibfd.org>)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인적관계 분류) 대부분 국가는 인적관계에 따라 공제금액과 상속세율에 차등을 두고 있음. 배우자, 부모, 자녀, 삼촌과 사촌지간에 세제 혜택을 주고 있으며, 몇몇 국가는 증손자녀, 5촌 등 먼 친족까지도 세제상 혜택을 주고 있음. 인적공제 대상자를 몇 개의 그룹으로 분류하는지는 각 나라의 상속세법이나 문화적 차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표 116> 국가별 인적공제 그룹 수의 비교

그룹 수	국가
2	헝가리(배우자, 직계존비속/기타)
	리투아니아(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기타)
	포르투갈(배우자, 직계존비속/기타)
	아이슬랜드(배우자, 동거자/기타)
	터키(배우자/기타)
3	한국(배우자/직계비속/기타)
	일본(배우자/직계비속/기타)
	칠레(배우자, 직계존비속/형제자매, 삼촌지간, 사촌지간/기타)
	덴마크(배우자/가까운 친적/기타)
	그리스(배우자, 동거인, 자녀, 손자녀, 부모/증손자녀, 조부모, 증조부모, 형제자매, 삼촌지간, 배우자의 가족들/기타)
	핀란드(배우자/자녀/기타)
	룩셈부르크(배우자/직계비속/기타)
	영국(배우자/자녀/기타)
	미국(배우자/자녀/기타)
4	벨기에(배우자, 법적 동거자, 직계존비속/형제자매/삼촌지간, 사촌지간/기타)
	아일랜드(배우자/자녀, 부모/형제자매, 조카/기타)
	이탈리아(배우자, 직계존비속/형제자매/4세대 친족/기타)
	폴란드(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자녀의 배우자, 배우자의 자녀/조카, 형제자매의 배우자/기타)
	슬로베니아(배우자, 자녀/부모, 형제자매/조부모/기타)
	스페인(미성년 자녀/성년자녀, 배우자, 직계존속/형제자매, 삼촌, 사촌/기타)
5	네덜란드(배우자/자녀/질병 또는 장애 자녀/부모/기타)

6	독일(배우자/자녀/손자녀/증손자녀, 부모, 조부모/형제자매, 조카, 자녀의 배우자, 배우자의 자녀, 이혼한 배우자/기타 사람과 법적단체)
7	프랑스(배우자/형제자매/직계존비속/조카/장애인/손자녀와 증손자녀/기타)
	스위스(주에 따라 세 그룹에서 일곱 그룹까지 차이가 있음)

※자료: OECD, Inheritance Taxation in OECD Countries, 2021를 참조하여 수정

- (배우자 공제의 비교)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부부는 법률혼, 시민결합(civil union), 동거(cohabiting) 중에 선택할 수 있음. 두 나라(네덜란드, 슬로베니아)에 서만 모든 형태의 결합에 대해 같은 세제 혜택을 주고 있음. 13개 국가는 법률 혼과 시민결합에 대해서만 같은 세제 혜택을 주고 있음. 대부분 국가에서는 생 존 배우자의 상속세를 전부 면제함. 배우자에게만 가장 높은 공제를 적용하는 국가(핀란드, 독일, 네덜란드)도 있고, 자녀와 동일하게 가장 높은 공제를 적용 하는 국가(벨기에, 칠레, 그리스, 이탈리아)도 있음.

<표 117> 배우자 공제의 비교

국가	배우자 형태 ¹	배우자 공제
벨기에	MA, CU	15,000유로(한화로 2,136만1,500원) ¹⁾
칠레	MA, CU	50UTMs
덴마크	MA, CU	면제
핀란드	MA, CU	90,000유로(한화로 1억 2,816만원)
프랑스	MA, CU	면제
독일	MA, CU	500,000유로(한화로 7억 1,205만원)
그리스	MA, CU	400,000유로(한화로 5억 6,964만원)
헝가리	MA, CU	면제
아이슬랜드	MA, CU	면제
아일랜드	MA, CU	면제
이탈리아	MA, CU	1,000,000유로(한화로 14억 2,410만원)
일본	MA	한도 내 ⁴
리투아니아	MA	면제
룩셈부르크	MA, CU	면제
네덜란드	MA, CU, CH	723,526유로(한화로 10억 3,037만원)
폴란드	MA	면제
포르투갈	MA, CU	면제
슬로베니아	MA, CU, CH	면제
스페인	MA, CU	15,956.87유로(한화로 2,229만원)
스위스	MA	면제
터키	MA	2,032,742리라(자녀가 없는 경우)(한화로 9,122만원), 1,015,747리라(자녀가 있는 경우)(한화로 4,558만원)
영국	MA, CU	면제

미국	MA	면제
----	----	----

¹법률혼(married, MA), 시민결합(civil union, CU), 동거(cohabiting couple, CH)

※자료: OECD, Inheritance Taxation in OECD Countries(2021)을 참조하여 수정.

- (자녀 공제의 비교) 자녀 공제액은 국가마다 큰 차이를 보임. 아이슬랜드는 자녀 공제액이 아예 없고, 벨기에는 15,000유로를 공제하고, 이탈리아는 1,000,000유로를 공제함

<표 118> 자녀 공제액의 비교

국가	자녀 공제
벨기에	15,000유로(한화로 2,136만원)
칠레	50UTMs(한화로 385만원)
덴마크	46,147유로(한화로 6,571만원)
핀란드	60,000유로(한화로 8,544만원)
프랑스	100,000유로(한화로 1억 4,241만원)
독일	400,000유로(한화로 5억 6,964만원)
그리스	400,000유로(한화로 5억 6,964만원)
헝가리	면제
아이슬랜드	없음
아일랜드	335,000유로(한화로 4억 7,707만원)
이탈리아	1,000,000유로(한화로 14억 2,410만원)
일본	20세가 될 때까지 연간 100,000엔(한화로 91만원)
리투아니아	면제
룩셈부르크	면제(법정상속분 이내)
네덜란드	22,918유로(한화로 3,263만원)
폴란드	면제
포르투갈	면제
슬로베니아	면제
스페인	47,858.59유로(13세 미만)(한화로 6,815만원), 15,956.87유로(21세 미만)(한화로 2,272만원)
스위스의 각 주	면제(예외: 뇌사텔, 보)
터키	1,015,747리라(한화로 4,558만원)
영국	641,026파운드(한화로 10억 6,268만원)
미국	12,920,000달러(통합세액공제)(한화로 168억 4,768만원)

※자료: OECD, Inheritance Taxation in OECD Countries(2021)을 참조하여 수정.

- (인적관계에 따른 세율의 차이) 이탈리아와 덴마크는 인적관계에 따라 고정세율을 다르게 하고 있음.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국가는 대부분 인적관계에 따라 여러 구간의 세율표를 두고 있음.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세율은 일반적으로 다른 가족이나 친족관계가 없는 사람들보다 낮음.

1) 환율은 2023. 12. 15일 기준임.

<표 120> 인적관계에 따른 세율 비교

국가	인적관계	세율(%)
벨기에	배우자, 직계존비속	3~30(브뤼셀, 왈룬), 3~27(플레미시)
	형제자매	20~65(브뤼셀), 20~50(왈룬), 25~55(플레미시)
	삼촌지간, 사촌지간	35~70(브뤼셀), 25~70(왈룬), 25~55(플레미시)
칠레	배우자, 직계존비속	1~25
	형제자매, 삼촌지간, 사촌지간	1.2~30
덴마크	가까운 친척(자녀/의붓자녀와 그들의 자녀, 부모, 자녀/의붓자녀의 배우자, 피상속인과 최소 2년 이상 동거한 사람, 이혼한 배우자,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양육 자녀	15
핀란드	배우자, 가까운 친척	7~19
프랑스	직계존비속	5~45
	형제자매	35~45 (24,430유로 초과금액)
	4세대 이내 혈족	55
독일	배우자, 동성 파트너(life partner), 자녀와 의붓자녀(stepchildren), 손자녀, 증손자녀, 부모와 조부모	7~30
	형제자매, 조카, 의붓부모(step-parents), 자녀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이혼한 배우자	15~43
그리스	배우자, 피상속인과 동거계약을 체결하고 최소 2년 이상 동거한 자, 자녀, 손자녀, 부모	0~10
	증손자녀, 조부모, 증조부모, 형제자매, 이복 남매, 삼촌, 이모, 고모, 양육 부모, 배우자의 가족들, 배우자가 이전 결혼으로 낳은 자녀	0~20
이탈리아	배우자, 직계존비속	4
	형제자매	6
	4세대까지 친족, 3세대까지 인척	6
룩셈부르크	직계존비속	0 또는 25 또는 5 (법정상속분 초과분)
	형제자매	6 또는 15(법정상속분 초과분)
	삼촌, 이모, 고모, 조카, 입양 부모와 입양 자녀 사이	9 또는 15(법정상속분 초과)
	종조부모, 조카의 자녀, 입양부모와 입양자녀의 직계비속 사이	10 또는 15(법정상속분초과)
네덜란드	배우자, 파트너, 직계존비속	10 또는 20
	2세대 이상의 친족	18또는 36

폴란드	배우자, 자녀(입양 자녀와 의붓자녀 포함), 부모, 의붓부모, 형제자매중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자, 자녀의 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모	0~7
	조카, 형제자매의 배우자	0~12
슬로베니아	부모, 형제자매, 그들의 자손들	5~14
	조부모	8~17
스위스	각 주에 따라 세 그룹에서 일곱 그룹으로 구분하여 세율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부모와 조부모, 형제자매, 조카, 삼촌지간, 형제자매의 배우자, 일정기간 이상 동거자 등으로 구분, 뇌사텔주는 12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세율을 달리 정함) ¹	1~12(아펜철티이너로덴 주) 6~30(루체른)

※자료: IBFD의 Tax Research Platform(<https://research.ibfd.org>)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 (미성년자에 대한 추가 공제) 벨기에는 21세 미만의 자녀에게 21세까지 잔여연수 동안 매년 2,500유로를 추가로 공제함. 아일랜드는 미성년 자녀를 보호, 양육, 교육하는데 지출한 금액은 피상속인의 금전적 상황을 고려할 때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면 상속세를 면제함. 미성년자가 아니라도 18세 이상 25세 미만의 자녀가 대학이나 교육기관에서 전일제 교육을 받거나 나이와 상관없이 물리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영구적으로 능력을 상실한 자녀에 대해 지출한 금액도 전액 면제함. 스페인은 상속인이 13세 미만이면 각 상속인마다 최고 47,858.59유로를 공제함. 21세 미만이라면 15,956.87유로를 공제하고, 추가로 21세가 될 때까지의 잔여연수에 3,990.72유로를 곱한 금액을 공제함. 독일에서 자녀는 5세 이하라면 52,000유로, 10세 이하라면 41,000유로, 20세 이하라면 20,500유로, 27세 이하라면 10,300유로까지 추가로 공제됨. 일본의 경우 법정상속인이 20세 미만이라면 20세가 될 때까지 남은 연수에 100,000엔을 곱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 (장애인에 대한 추가공제) 프랑스는 정신이나 신체장애로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재산의 이전은 수익자마다 159,325유로를 추가로 공제함. 그리스는 상속인이 67% 이상의 장애가 있으면 산출한 세액에서 10%를 추가로 공제함. 네덜란드는 질병 또는 장애가 있는 자녀는 비장애 자녀(22,918유로)보다 더 높은 공제액인 68,740유로를 허용함. 일본은 법정상속인이 장애인이라면 85세가 될 때까지 남은 연수에 100,000엔을 곱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함. 중증 장애인이라면 곱하는 금액이 200,000엔으로 늘어남. 스페인은 상속인 중 장애인은 장애 정도에 따라서 47,858.59유로에서 150,253.03유로까지 추가로 공

제한.

-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이외의 사람에 대한 인적공제) 배우자나 자녀뿐만 아니라 삼촌이나 사촌지간, 또는 그 이외에 먼 친척까지 공제를 허용하는 국가도 상당수임. 혈족관계나 인척관계가 없더라도 피상속인과 특별한 관계를 형성한 사람에 대해서도 인적공제를 허용하는 국가가 있음.

<표 122>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이외의 자에 대한 인적공제 비교

국가	인적 관계		공제금액
칠레	삼촌지간, 사촌지간		5UTMs
프랑스	형제자매		전액공제 또는 15,932유로,
	조카		7,967유로
독일	손자녀		200,000유로
	증손자녀, 부모, 조부모		100,000유로
그리스	증손자녀, 조부모, 증조부모, 형제자매, 이복남매, 삼촌, 이모, 고모, 양육 부모, 배우자의 가족들, 배우자가 이전 결혼으로 낳은 자녀		30,000유로
아일랜드	형제자매, 조카		32,500유로
이탈리아	형제자매		100,000유로
리투아니아	피후견인, 후견인, 조부모, 손자녀, 형제자매		면제
네덜란드	배우자, 자녀, 부모가 아닌 사람		2,418유로
폴란드	자녀의 배우자, 배우자의 자녀		10,434즈위티
	조카, 형제자매의 배우자		7,878즈위티
	기타의 자		5,308즈위티
스페인	직계존속		15,956.87유로
	형제자매, 삼촌지간, 조카, 4세대까지 결혼에 의해 형성된 후손과 부모		7,993.46유로
스위스	그라우뷘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14,000스위스 프랑
	루체른	가사종사자	2,000스위스 프랑
		손자녀	1,000스위스 프랑
	투르가우	도움이 필요한 사람	100,000스위스 프랑
	주크	총 소득이 12,000 스위스 프랑을 초과하지 않는(상속 또는 증여로 인한 소득을 포함) 일을 할 수 없는 사람	60,000스위스 프랑
		대자녀(godchildren), 가족 구성원	10,000스위스 프랑
	취리히	약혼자, 대자녀(godchildren), 최소 10년 이상 고용한 가사 도우미	15,000스위스 프랑

※자료: IBFD의 Tax Research Platform(<https://research.ibfd.org>)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 (가족 주택에 대한 공제) 피상속인과 동거하던 가족이 동거 주택이나 대지를

상속받는 경우에 물적 공제를 허용하는 국가들이 다수 있음. 특히 배우자가 피상속인과 동거하던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를 전부 면제하는 경우가 있음. 벨기에나 그리스는 배우자나 법적 동거자가 가족의 주택을 상속하면 상속세를 전부 면제함. 독일은 피상속인의 사망 시 가계 주택(family home)을 배우자가 상속받으면 상속세를 면제함. 프랑스는 모든 경우에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상속세는 해당 주택 가치의 80%에 대해서만 부과함. 영국의 경우 2017. 4. 5. 이후 사망 시 직계비속에게 이전되는 주택에 대해서 공제가 인정됨.

□ 시사점 및 소결론

- (배우자 공제 확대) OECD의 많은 국가들은 배우자의 상속세를 전부 면제하고 있음. 부부간에 상속재산의 이전은 동일 세대간의 이전이므로 ‘1세대 1회’ 과세 원칙의 관철, 혼인생활 중 재산축적을 위한 생존 배우자의 기여도 인정 등을 논거로 함. 이혼 시 재산분할과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 있음.
- (인적 추가공제의 세분화 및 다양화) 피상속인은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부양하는 것이 현실이므로 자녀 공제 연령을 상향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음. 독일처럼 자녀의 나이를 구분하여 공제액을 세분화할 수도 있음. 장애인 공제에 대해 장애 등급에 따라 공제액에 차등을 두는 것이 타당함. 부의 분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적공제의 혜택을 받는 인적 관계를 넓히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음.
- (물가상승을 반영한 공제금액의 변동) 물가상승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반해 인적공제액을 이에 따라 높이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세 부담이 늘어나는 효과가 생김. 미국이나 영국은 거의 매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공제액을 인상하고 있음.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필요 있음.
- (인적관계에 따른 세율의 차등화) 유산취득세 방식을 취하는 많은 국가들은 인적관계가 가까울수록 낮은 세율표를 적용함. 이렇게 하면 상속세 세부담을 낮춰 경제 활력을 고취할 수 있고, 조세회피 행위도 다소 방지할 수 있음. 과세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한다면 인적공제액을 늘리지 않더라도 세율을 차등화하여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세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임.
- (배우자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확대하는 방안) 벨기에, 독일 등은 배우자의 동거주택 상속에 대해 상속세를 전액 면제하고 있음. 배우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배우자가 주택을 상속받을 때 별도의 공제제도를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있음. 단,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무 거주 요건을 추가할 필요 있음.

-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실효성 검증) 1993년 금융실명제를 전격적으로 실시하면서 금융재산이 양성화되자, 늘어난 세부담을 줄이고 저축을 장려한다는 명분으로 1997년 금융재산 상속공제 제도를 도입함. 그러나 현재는 부동산의 시가 반영률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금융재산에만 공제 혜택을 주는 것은 자산 간에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이 될 수 있음.

□ 과세방식 전환에 따른 세부담 효과

- (기초공제와 일괄공제를 모두 폐지하는 경우) 유산취득세 방식과 조화를 이루기 어려운 기초공제와 일괄공제를 모두 폐지하고 분할된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인별 인적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상속재산규모가 작을수록 세부담이 증가함. 상속인이 자녀 1명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규모에 관계없이 세부담이 언제나 증가하게 되며 상속재산의 규모가 작을수록 세부담 증가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게 됨.
- (유산세 방식의 기초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유산세 과세방식에서 사실상의 면세점 역할을 수행하는 기초공제와 일괄공제가 폐지되면 상속재산 규모가 크지 않고 자녀 수가 적은 상속인들의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됨. 유산세 방식과 유산취득세 방식을 혼합하여 총상속재산에 대하여 1차로 기초공제를 적용한 다음 상속인별로 분할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2차로 인적공제를 적용하게 되면 소규모·소자녀 상속인들의 세부담 증가를 경감시킬 수 있음.

<표 139> 과세방식 전환에 따른 세부담(유효세율) 변화

(단위: %)

과세방식 상속인 구성	I	II	III	IV	V	VI
배우자 단독상속	0~1.6	-14.0~0	0	-0.8~0	-15.0~0	-15.5~0
자녀 1명 단독상속	0.5~13.5	0.5~13.5	0.3~7.5	0.2~4.5	0.3~7.5	0.2~4.5
자녀 2명 공동상속	-3.0~7.0	-3.0~7.0	-4.6~3.0	-5.4~1.0	-4.6~3.0	-5.4~1.0
자녀 3명 공동상속	-7.5~5.0	-7.5~5.0	-8.5~1.0	-9.0~-1.0	-8.5~1.0	-9.0~-1.0
배우자와 자녀 1명	-2.4~6.0	-12.8~6.0	-3.2~4.6	-3.7~4.0	-13.2~4.6	-13.4~4.0

공동상속						
배우자와 자녀 2명 공동상속	-5.1~7.4	-10.9~7.4	-5.9~5.1	-6.3~4.0	-11.3~5.1	-11.6~4.0
배우자와 자녀 3명 공동상속	-6.1~7.3	-12.2~7.3	-6.7~4.7	-7.1~3.3	-12.6~4.7	-12.8~3.3
주) I: 기초공제와 일괄공제를 폐지하는 경우 II: 기초공제와 일괄공제를 폐지하고 배우자공제를 2배로 확대하는 경우 III: 기초공제 2억원을 적용하는 경우 IV: 기초공제 3억원을 적용하는 경우 V: 기초공제 2억원을 적용하고 배우자공제를 2배로 확대하는 경우 VI: 기초공제 3억원을 적용하고 배우자공제를 2배로 확대하는 경우						

※자료: 국세청 통계연보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 과세방식 전환에 따른 세수증감 효과

- 세수의 증감은 재산규모·인적특성별 연간 추정 상속건수에 상속재산금액과 유효세율 증감을 곱하여 산출함. 전체 상속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85%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속재산 규모 10억~30억 원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상속세 세수가 증가하며, 50억 원을 초과하는 구간에서는 상속세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40> 과세방식 전환에 따른 세수의 증감

(단위: 억원)

과세방식 상속재산	I	II	III	IV	V	VI
10	3,829	3,829	2,361	1,627	2,361	1,627
20	5,242	5,242	2,275	853	2,275	853
30	1,261	1,261	185	(353)	185	(353)
40	416	106	(171)	(465)	(404)	(659)
50	115	(327)	(220)	(387)	(606)	(745)
60	(79)	(538)	(280)	(377)	(688)	(763)
70	(128)	(552)	(268)	(338)	(664)	(720)
80	(238)	(701)	(360)	(422)	(797)	(844)
90	(272)	(751)	(372)	(422)	(827)	(865)
100	(260)	(719)	(339)	(378)	(778)	(808)
150	(846)	(2,808)	(1,057)	(1,162)	(2,992)	(3,084)
200	(370)	(1,328)	(460)	(505)	(1,415)	(1,458)
250	(222)	(804)	(276)	(303)	(858)	(885)
350	(111)	(396)	(137)	(150)	(422)	(435)
450	(49)	(199)	(62)	(68)	(212)	(218)
500	(129)	(489)	(162)	(179)	(522)	(539)
합계	8,158	825	656	(3,029)	(6,364)	(9,896)
주) I: 기초공제와 일괄공제를 폐지하는 경우						

II: 기초공제와 일괄공제를 폐지하고 배우자공제를 2배로 확대하는 경우

III: 기초공제 2억원을 적용하는 경우

IV: 기초공제 3억원을 적용하는 경우

V: 기초공제 2억원을 적용하고 배우자공제를 2배로 확대하는 경우

VI: 기초공제 3억원을 적용하고 배우자공제를 2배로 확대하는 경우

※자료: 국세청 통계, 통계청 인구총조사, 재정패널데이터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재 상속세제의 과세방식을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이 남긴 총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공제를 적용하여 세액이 결정되는 구조이므로 상속인 각자의 담세력과는 무관하다. 응능과세 측면에서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하여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은 재산의 크기에 따라 상속세를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견해가 많다. 또한 현재 증여세는 유산취득세형과 같은 수증자과세체계이나,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으로 운영되어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어 증여세와 체계 일관성 측면에서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이 논의되고 있다.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면 각 상속인의 인적 사정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이 달라진다. 따라서 상속세제 과세방식 전환 논의에 따른 공제제도 개편을 위한 선제적 연구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OECD 국가 중 상속세를 운영하는 국가의 공제제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한다면 향후 공제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할 때 유의미한 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공제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각 방안별로 세부담 효과를 분석한다면 향후 정책 방향을 결정할 때 계량적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주요 내용 및 방법

II 장에서는 상속세제 과세방식의 유형으로 유산세 방식과 유산취득세 방식, 법정상속분 방식을 살펴보고, 각 과세방식별 장점과 단점을 비교 분석한다.

III 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공제제도의 연혁, 현황 등을 검토한다.

IV 장에서는 OECD 회원국의 상속세 과세방식 및 공제제도의 현황을 자세히 살펴본다. OECD 회원국 중에 현재 상속세를 시행하고 있는 24개국의 공제제도 현황을 검토·비교하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V 장에서는 상속세 과세방식 전환에 따른 공제제도 개편방안과 각 방안에 따른 세부담 효과를 분석한다.

연구방법은 문헌조사의 방법으로 한다. 국내외 선행연구 자료를 검토하고 OECD 국가의 자료는 OECD의 자료와 사이트(<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와 IBFD 사이트(<https://research.ibfd.org>)를 통해 조사한다. 필요한 부분에서 각국의 국세청과 통계청의 자료를 검색하여 조사한다.

II. 상속세 과세방식 일반론

1. 상속세 과세방식의 유형

가. 유산세 방식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이는 한 개인의 일생에 걸쳐 이루어진 유산에 대한 과세이다. 분할 전 상속재산 총액에 각종 공제를 적용하고 세율을 곱하는 방식이다. 사람의 사망은 그가 생존 중에 받은 세제상의 특전 기타 조세회피 등에 의해 축적한 재산을 파악·과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며, 이때 소득세 또는 재산세의 후불로서 과세하려고 한다면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한 유산액을 과세베이스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²⁾ 이는 회피조세정산(back tax theory)에 의해 상속과세를 설명하는 것이다. 유산세 방식에서는 피상속인의 유언집행자가 원칙적인 납세의무자이다.

유산세 방식은 상속제도에 있어서 관리청산주의 입법례에서 주로 취하는 방식이다. 관리청산주의 입법례에서는 상속재산은 인격 대표자(예를 들어 신탁 등)에게 잠정적으로 귀속된다. 대표적으로 영국, 미국, 대만 등은 관리청산주의 입법례를 따르면서 유산세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³⁾

나. 유산취득세 방식

유산취득세 방식은 피상속인의 유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상속인·수유자·수증자 등의 취득재산가액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다. 상속이라는 형태로 자산이 이전되는 것으로 파악한다. 이는 상속인의 자산 증가를 특수한 형태의 소득세로 보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개별 상속인이 분할 취득한 상속가액에 공제를 적용하고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납세의무자는 각 상속인이다.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자기의 상속분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진다. 독일, 프랑스 등 OECD 다수의 국가가 유산취득세 방식을 취하고 있다. 유산취득세 방식이 선호되는 이유는 무상취득자와 무상이전자 간의 혈연관계의 원근에 따라 세율을 차별적으로 설정하는 상속과세 이론과의 결합이 용이하기 때문이다.⁴⁾ 즉,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인적관계가 가까울수록 낮은 세율표를 적용하고 멀수록 높은 세율표를 적용한다.

이 방식은 주로 상속제도에 있어서 포괄승계주의 입법례를 따르는 국가들이 도입하고 있는 방식이다.⁵⁾ 포괄승계주의는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재산이 상속인에게 직접 이전되는 형태

2) 김병일, “상속세 증여세제 개편방안”, 조세연구 제17권 제3집, 한국조세연구포럼, 2017. 9, 63쪽.

3) 신호영,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유산세방식의 헌법적 정당성 연구—헌법상 평등원칙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저스티스 통권 제163호, 2017. 12.

4) 김병일, 위 논문, 63쪽.

이다.

다. 법정상속분 방식

과거에 유산취득세를 취하던 일본에서 상속세 회피 현상이 발생하자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안된 것이 법정상속분 방식이다.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상속인 수가 많을수록 상속세액이 줄어들므로 상속인 수를 늘리기 위해 양자(養子)를 두는 등 조세회피가 문제 되었다.

법정상속분 방식에서는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에서 채무, 장례비용을 공제하고 상속세 기초공제액을 차감한 것이 과세대상금액이 된다. 과세대상금액에 각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하여 ‘의제상속세액’을 산출한다. 의제상속세액을 합하여 상속세 총액을 산출한다. 상속세 총액을 실제로 상속한 과세가격의 비율로 안분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산출세액에서 배우자의 경감세율 특례나 미성년자 공제, 장애인 공제, 증여세액공제 등의 세액공제를 한 후 실제 납부세액을 산출하는 순이다.

2. 상속세제 과세방식별 장·단점

가. 유산세 방식의 장·단점

1) 장점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의 생전 누적 재산에 대한 세제 정산의 성격을 가진다. 세대 간 격차를 시정하는 부의 재분배에 기여한다. 또한 유산세 방식에서는 세무행정의 효율성이 높다. 관할 과세관청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하나로 족하고, 피상속인별 상속세 신고서를 조사·확인하면 충분하다. 상속분할에도 불구하고 조세의 총부담액이 동일하기 때문에 분할내용을 조사할 필요가 없다.⁶⁾ 세율의 높이와 누진구조가 동일하며 유산취득세 방식에 비해 세수 생산 능력(the revenue-producing ability)이 더 크다.⁷⁾ 분할 전 유산총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 단독상속 이외에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당연히 세수가 줄어들 것이다.

2) 단점

피상속인의 총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하므로 상속인 간에 유산분할을 촉진하는 유인이 적다. 배우자·미성년자·장애인·연로자 공제 등은 사회정책적 고려에 의하여 특정한 상황에 처해 있는 상속인의 인적 사정을 과세에 반영하는 장치이다. 유산세형에서는 그러한 공제사유가 없는 상속인들에게까지 세부담을 경감시키므로 공제대상인 상속인에게는 그 혜택이 미미하게 돌아

5) 신호영, 앞의 논문, 135쪽.

6) 최명근, “우리나라 상속과세체계의 개편시론”, 재정논집 제5집, 한국재정학회, 1991, 72쪽 이하.

7) 김병일, 앞의 논문, 64쪽.

가는 모순이 있다. 또한 상속인들이 자신의 인적요소와 무관한 공제 혜택을 받기 때문에 담세력에 상응한 조세가 아니라는 비판이 가능하다.

나. 유산취득세 방식의 장·단점

1) 장점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이 받은 상속재산에서 개별 상속인의 인적요소를 반영한 공제만을 허용하므로 상속인 각자의 담세력에 합치한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상속인 수가 많을수록 상속세액이 줄어들므로 상속분할을 촉진하여 부를 재분배하는 효과가 있다.

2) 단점

상속인이 많을수록 상속세액이 줄어들므로 이를 이용한 조세회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과세관청은 모든 상속인에 대해 취득자산이나 공제의 적정성 등을 조사해야 하므로 세무행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다. 법정상속분 방식의 장·단점

1) 장점

법정상속분은 일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에 따른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므로 조세회피를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각 상속인의 인적요소를 세액공제에서 반영하므로 응능과세를 실현할 수 있다.

2) 단점

계산 방식이 상당히 복잡하여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 등이 과도하게 지출될 수 있다. 또한 실제 상속과 관계없이 법정상속분으로 상속받는다고 의제하여 상속세액을 산출하는 것도 이론상 문제가 있다.

라. 상속세제 과세방식별 장·단점 비교

유산세 방식에서는 인적요소가 없는 상속인도 각종 인적공제의 혜택을 보는 반면,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인적요소에 따라 상속인들이 개별적으로 인적공제 혜택을 받게 되므로 응능과세 원칙에 더 합치한다.

유산세 방식에서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만 조사하면 되므로 세무행정의 부담이 적은 편이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상속인별로 그 취득한 상속자산을 조사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표 1> 유산세 방식과 유산취득세 방식의 장단점 비교

구분	유산세 방식	유산취득세 방식
과세근거	피상속인이 생전에 세제상 우대 등으로 향유한 세부담 경감분을 정산	상속에 의한 유산취득은 무상소득이며, 상속인의 담세력을 증가시

	부를 재분배(세대간 공평·격차시정에 초점)	김 부를 재분배(현역 세대 내의 공평·격차 시정에 초점)
공평성 확보	확보됨	확보됨
부의 집중 억제기능	유산분할을 촉진할 유인이 없어 낮음	누진세율의 경우 유산을 다수의 상속인에게 균등하게 분할하면 할수록 세부담이 감소되어 유산분할을 촉진시키므로 높음
세수와의 관계	세액은 기본적으로 유산에 따라 결정되며, 유산분할이 어떻게 되든 세액은 변화 없어 중립적임	유산분할이 많을수록 세수가 감소하고 유산분할에 따른 세부담의 영향으로 조세회피가 발생함
세무행정 부담	피상속인의 유산만 조사하여 가벼움	모든 상속인에 대해 그 취득자산을 조사해야 하므로 무거움

※자료: 김두복(2017), “상속세 과세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7. 54쪽.

유산세 방식은 유산분할을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세액이 동일하며 중립적인데 비해, 유산취득세 방식은 다수의 상속인에게 균등하게 분할할수록 세부담이 감소되는 면이 있다. 아래 <표 2>에서 자녀가 4명인 경우를 보면, 유산세 방식에서는 각 자녀의 부담세액은 1억 6천만 원이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9천만 원에 불과하다.

<표 2> 유산세 방식과 유산취득세 방식에 따른 세부담 비교

과세방식	유산세 방식		유산취득세 방식	
상속인	자녀 2명인 경우	자녀 4명인 경우	자녀 2명인 경우	자녀 4명인 경우
각 자녀에게 이전된 자산	10억원	5억원	10억원	5억원
각 자녀들에 대한 부담세액	3억 2천만원	1억 6천만원	2억 4천만원	9천만원
총 부담세액	6억 4천만원	6억 4천만원	4억 8천만원	3억 6천만원

※자료: 강성훈, 오종현, “상속과 증여에 대한 세부담 격차 연구”, 재정학연구 제14권 제2호(통권 제109호), 77쪽.

3. 우리나라의 상속세 과세방식

우리나라의 상속세 과세체계는 피상속인의 모든 상속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여기서 공과금이나 채무, 상속공제액 등을 공제한 후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과세표준에서 누진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상속세액을 상속인들이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부담한다.

<표 3> 우리나라의 상속세 과세체계

상속재산
(-) 과세제외재산
= 상속재산가액
(-)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 상속세 과세가액
(+) 사전 증여재산 가산액
= 과세표준
(-) 상속공제 등
× 누진세율
= 상속세 산출세액
(-) 기납부 증여세액 공제
(-) 외국납부 상속세 공제
(-) 단기재상속세액공제
(-) 문화재 등 징수유예세액
(-) 신고세액공제
= (신고)결정세액
(+) 신고·납부지연가산세
= 총 결정세액
(-) 연부연납, 물납, 자진납부(분납)세액
= 고지세액

※자료: 기획재정부, 2019, 「조세개요」, 166쪽.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상속법제에 있어서는 포괄승계주의를 취한다. 즉, 피상속인의 사망 시 피상속인의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상속인들에게 승계된다.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상속재산을 공유하는 관계에 있다. 유산신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들은 일단 유산 전체에 대해 세액을 산출한 후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속법상 포괄승계주의와 상속세의 유산세 과세방식은 정합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다.⁸⁾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와 같이 유산세 방식을 취하는 국가들의 인적공제 항목은 배우자 공제 이외에는 기초공제 내지 통합세액공제만 두고 있고, 상속인들의 개별적인 상황을 반영하여 다양한 인적공제 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들 나라에 비해 비교적 다양한 인적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 따라서 인적관계가 없는 상속인들에게까지 상속세 부담 경감의 효과가 돌아가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상속공제는 인적공제와 물적공제로 구분할 수 있다. 인적공제는 생활공동체의 일원인 피상속인

8) 신호영, 앞의 논문, 137쪽.

이 사망함으로 인하여 남아있는 상속인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이다. 우리 상속세법은 배우자와 자녀,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에게 일정 금액의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상속인 중에 인적공제 대상자가 있으면 상속재산에서 우선 공제되어 상속세 과세표준이 줄어들어서 자녀들도 배우자 공제의 혜택을 받게 되고, 사실상 피부양자인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도 배우자 공제 및 자녀 공제의 혜택을 모두 받게 되는 결과가 된다.

물적공제는 금융재산공제와 재해손실공제, 가업 및 영농상속공제가 있다. 물적공제는 상속재산이 요건에 해당할 때 상속재산에서 차감하게 되며 상속인이 공제 대상 재산을 상속받았는지를 불문하고 모든 상속인에게 공제 혜택이 돌아간다.

Ⅲ. 우리나라 상속세 공제제도의 내용 및 현황

1. 공제제도의 연혁

일제강점기인 1934년 6월 훈령 제19호로 조선상속세령이 공포되고, 정부수립 후 1950년에 상속세법과 증여세법이 각각 제정·공포되었다가 1952년 증여세법이 상속세법으로 통합되었다. 1966년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변경하여 약 40회의 개정을 거쳤다.⁹⁾

1950. 3. 22에 제정된 상속법에는 기초공제의 경우 상속인이 직계비속이면 100만 원, 기타의 자는 7만 원으로 하고, 부양가족 공제는 호주상속으로서 과세가액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미성년자(18세 미만), 연로자(60세 이상), 장애인 각 1인 20만 원을 공제하였다. 1960. 1. 1. 부터 신민법이 발효됨에 따라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의 구분에 따른 부양가족 공제액의 차등적용을 폐지하면서 공제액을 50만 원으로 인상하였다. 1976년에는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2자녀 갖기 운동을 세제면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자녀 중 2인에 한하여만 미성년자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1990년에 상속재산가액의 현실화에 따라 각종 공제액을 인상하였다. 그리고 1996년 말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전면 개편하면서 공제제도를 개선하였고 그 내용이 대부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배우자 공제제도의 변천이 많았으므로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다. 1991년 전까지는 일정금액을 공제하고 결혼연수를 고려하지는 않았다. 그러면서 공제금액이 계속 인상되었다. 1991년부터는 결혼연수에 따른 추가공제 제도가 신설되었다. 그러나 1996년 말 개정에서 종전의 결혼연수에 의한 공제방식을 폐지하고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법정상속지분 내에서 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하도록 하였다.

<표 4> 배우자 공제 제도의 연혁

1961년	1968년	1972년	1974년
50만 원 ¹⁾	50만 원	150만 원	500만 원
1977년	1980년	1983년	1989년
800만 원	1,600만 원	2,000만 원	4,000만 원
1991년		1993년	
1억 원+(결혼연수×6백만 원)		1억 원+(결혼연수×1,200만 원)	
1995년		1997년 ~ 현재	
• 1억원+(결혼연수×1,200만 원) • 실제 상속받은 금액 (법정상속재산가액 또는 10억 원 한도) • 일괄공제 5억 원 중 많은 금액		• 실제 상속받은 금액 (법정상속재산가액 또는 30억 원 한도) • 일괄공제 5억 원 중 많은 금액	

※자료: 김정식, “부부단위 과세제도의 입법론적 연구-상속세 및 증여세를 중심으로-”, 조세법연구 제

9) 이하 내용은 김병일, 앞의 논문, 43쪽 이하를 참조함.

11권 제2호, 2005, 406쪽.

¹현행 화폐단위인 원으로 환산하면 5만원임.

1996년 말 개정 시 상속인의 인적구성에 따른 기초공제·기타 인적공제 항목별 공제가액과 일괄공제액 5억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또한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에 대한 공제제도를 신설하여 금융재산의 보유를 유도하고, 재해손실공제를 신설하였다.

이후 인적공제 제도는 큰 변화가 없었다. 2015년에 인적공제 중 자녀와 연로자에 대한 공제액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공제액을 연간 500만 원에서 연간 1천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고, 미성년자의 기준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연로자의 기준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각각 조정하는 정도였다.

한편 2000년 이후에는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개편이 지속해서 이루어졌다. 2007년에는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경영하던 중소기업을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30억 원으로 확대하였다. 2008년에는 가업상속 공제비율을 20%에서 40%로 인상하고 공제한도를 30억 원에서 60~1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2010년에는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에서 연간 매출액 1천 500억 원 이하의 기업으로 확대하되,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에 대해서는 상속 후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평균 인원이 상속개시연도 직전 사업연도의 100분의 120 이상을 고용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였다. 2011년에는 가업상속공제율을 40%에 70%로 확대하고 공제한도는 100~300억 원으로 인상하였다. 2012년에는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인 중견기업의 규모를 매출액 1천 500억 원 이하에서 매출액 2천억 원 이하의 기업으로 확대하였으며, 2013년에는 동 대상기업의 매출액을 3,00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공제금액을 가업상속재산의 70%에서 100%로, 공제한도를 200~500억 원으로 인상하였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1가구 1주택을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여 중산층의 기본재산을 보호·유지하고 재산형성을 세제상 지원하기 위해 1981. 12. 31. 처음으로 신설되었다.¹⁰⁾ 이후 1996년에 물적공제 대상자산의 유무에 따른 과세상 불공평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물적공제를 폐지하고 대산 한도액(1억 원)만큼 기초공제액을 인상하였다. 2008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등으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상속세 부담이 증가하자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신설하였다. 이후 약간의 개정을 거쳐 2014년에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취지에 맞도록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동거불양한 경우로 한정하였다.

10) 이정민,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요건으로서 피상속인의 당해 주택의 10년간 보유가 필요한지 여부”, 조세와 법 제8권 제1호, 2015. 6, 176쪽 이하 내용 참조.

2. 현행 공제제도 내용

가. 인적공제

1) 기초공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2억 원을 기초공제액으로 공제한다(상증세법 제18조). 1996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 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상속세의 기초공제는 상속인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호하는 의미에서 모든 상속에 대해 무조건 해주는 공제이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거주자인지 여부와 상속인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적용한다.¹¹⁾ 다만,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 원은 공제되지만 다른 상속공제는 받을 수 없다.

2) 배우자 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 원을 공제한다(상증세법 제19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한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배우자가 상속받은 상속재산가액(사전증여재산가액 및 추정상속재산가액 제외)에서 배우자가 승계하기로 한 공과금 및 채무액과 배우자 상속재산 중 비과세 재산가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다만 공제한도액을 초과한다면 공제한도액까지만 공제 가능하다.

공제한도액은 다음 ①, 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① $\text{상속재산가액} + \text{추정상속재산} + 10\text{년 이내 증여재산가액 중 상속인 수증분} - \text{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 \cdot \text{사인증여한 재산가액} - \text{비과세} \cdot \text{과세가액불산입 재산가액} - \text{공과금} \cdot \text{채무} \times (\text{배우자 법정상속지분}) - (\text{배우자의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② 30억 원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배우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함)해야 한다. 다만, 상속인 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신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은 그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11) 김두형, “상속공제 적용 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논집 제33권 제2호, 2020, 235쪽.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인정하는 취지는 배우자의 혼인생활 중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노후의 생활보장 등을 위한 것이다. 이는 실제로 공제라기보다는 재산형성에 기여한 배우자의 공로를 특별히 감안한 것이라고 본다.¹²⁾ 부부는 대부분 동일 세대에 속하므로 배우자 일방이 사망할 때 상속세를 과세하고 생존 배우자가 사망할 때 다시 상속세를 과세한다면 1세대 2회 과세가 된다. 생존 배우자의 상속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를 논거로 한다.¹³⁾ 생존 배우자도 가까운 장래에 사망하므로 이때 국가는 면제해 준 상속세액을 회복할 수 있다.

그런데 OECD 많은 국가가 배우자에게는 한도 없이 상속세를 모두 면제해주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공제 한도를 설정하고 있다. 배우자 외에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 협의에 의해 모두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명목상의 배우자 공제를 이용해 상속세의 면탈을 꾀할 우려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에 한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를 인정한다. 또한 고액 재산가의 지나친 세부담 경감을 고려하여 30억 원의 공제한도를 설정하고 있다.¹⁴⁾

3) 그 밖의 인적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자녀와 동거가족 등은 아래의 경우 인적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상증세법 제20조). 동거가족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자녀 공제는 자녀 1인당 5천만 원을 공제한다.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추가 공제가 허용된다. 즉, 미성년 자녀 수에 19세까지 잔여연수마다 1천만 원을 곱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한한다. 이는 미성년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나 교육비 등을 상속재산에서 지출하게 되므로 인정하는 것이다.¹⁵⁾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자가 있으면 연로자 공제를 허용한다. 연로자 1인당 5천만 원을 공제한다.

상속인(배우자 포함)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이 있으면 추가공제가 허용된다. 즉, 장애인 공제는 자녀·미성년자·연로자 공제 및 배우자 공제와 중복해서 적용 가능하다. 장애인 한 명당 기대여명 연수마다 1천만 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다. 기대여명은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 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를 말한다.

4) 일괄공제

12) 김두형, “배우자 상속공제와 적용요건에 관한 연구”, 일감법학 제31호,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6. 68쪽.

13) 한상국, 배준호, “상속세 배우자공제한도제도의 개편방향 검토”, 재정금융연구 제3권 제2호, 1996. 12. 161쪽.

14) 김두형(2020), 앞의 논문, 237쪽.

15) 김두형(2020), 앞의 논문, 237쪽.

배우자의 유무, 자녀의 유무와 그 인원 수, 물적공제 허용 대상 자산의 유무에 따라 상속인의 세 부담 격차가 생기게 된다. 대부분 상속의 경우 배우자 공제를 제외하면 공제액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일괄공제를 선택하도록 하고, 자녀 수가 많거나 장애인이 2인 이상 있는 가족과 같이 예외적인 사안에 한해 항목별 공제를 택하도록 하기 위해 일괄공제를 두고 있다(상증세법 제21조).¹⁶⁾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배우자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인 때에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한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 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 원을 공제하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다. 배우자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기초공제(2억 원 및 기업·영농상속공제 포함)와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계액으로만 공제받을 수 있다.

나. 물적공제

1) 금융재산 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을 공제한다(상증세법 제22조). 공제대상이 되는 금융재산가액은 「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주식 등이며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재산 중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세법상 평가방법에 따라 재산가액을 평가하는데 현실적으로 그 평가가액이 시세를 100% 반영하지 못한다. 이에 비해 금융자산은 재산가액이 100% 평가된다고 볼 수 있어 자산간 평가의 불공평성을 조정하기 위해 금융재산 공제를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¹⁷⁾

〈표 5〉 금융재산 상속공제 내용

순금융재산가액	금융재산상속공제
2,000만원 이하	해당 순금융재산가액 전액
2,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2,000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해당 순금융재산가액 × 20%
10억원 초과	2억원

※자료: 국세청 홈페이지(<https://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16) 김신언, “유산세형 상속과세제도에서 우리나라 상속공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세와 법 제4권 제2호, 2011, 84쪽.

17) 김두형(2020), 앞의 논문, 239쪽.

2) 동거주택 상속공제

동거주택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상속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¹⁸⁾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상증세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금액은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함)의 100%를 공제하며 6억원을 한도로 한다.

① 피상속인이 거주자일 것.

②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할 것.

③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 따른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에 해당할 것. 피상속인의 일시적 2주택, 혼인 합가, 등록문화재 주택, 이농·귀농 주택, 직계존속 동거보양한 경우에는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④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징집,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등으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3) 재해손실공제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난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상증세법 제23조).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이 멸실·훼손되는 경우에 실제 상속받은 재산상당액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고, 상속인 등이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자기의 고유재산을 사용하게 된다면 물적 생활기초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재해손실공제를 인정한다.¹⁹⁾

4) 가업상속공제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에 일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300억 원~600억 원 한도)을 추가로 공제한다(상증세법 제18조의2). 가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18)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2474 판결.

19) 박훈, 채현석, 「상속 증여세 실무해설」, 삼일인포마인, 2012, 315쪽.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표 6> 가업상속 공제의 내용

요건	기준	상세내역
가업	계속 경영 기업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중소기업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조특령 §2① 1,3호 요건(중소기업기본법상 매출액, 독립성 기준)을 충족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조특령 §9④ 1,3호 요건(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② / 독립성 기준)을 충족 -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
피상속인	주식보유기준	피상속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등 지분 40%(상장법인은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
	대표이사 재직요건 (3가지 중 1가지 충족)	- 가업 영위기간의 50% 이상 재직 -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職)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상속인	연령	18세 이상
	가업종사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 【예외규정】 -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 - 피상속인이 천재지변, 인재 등으로 사망(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병역·질병 등의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봄)
	취임기준	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 및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납부능력	가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 외에 상속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에 2배를 초과하지 않을 것
	배우자	배우자가 요건 충족시 상속인요건 충족으로 봄

※자료: 국세청 홈페이지(<https://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가업상속공제 한도액은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다르다.

<표 7> 가업상속 공제한도액

가업상속 공제액	피상속인의 가업 계속영위기간	공제한도액	
		'18.1.1.~'22.12.31 상속개시분	'23.1.1 이후 상속개시분
가업상속재산가액	10년 미만	가업상속공제 적용안됨	가업상속공제 적용안됨
	10년 이상~20년 미만	200억원	300억원
	20년 이상~30년 미만	300억원	400억원
	30년 이상	500억원	600억원

※자료: 국세청 홈페이지(<https://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5) 영농상속공제

영농상속의 경우에는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영농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상증세법 18조의3). 다만 30억 원을 공제한도로 한다.

피상속인의 요건으로는,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이라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 포함)에 직접 종사하고 피상속인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함), 그와 연접한 시·군·자치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해야 한다.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이라면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기업을 경영할 것, 법인의 최대주주 등으로서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할 것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상속인 요건으로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이라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함), 그와 연접한 시·군·자치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해야 한다.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이라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기업에 종사하고,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해야 한다.

영농상속 재산이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의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농지, 초지, 산림지, 축사·용지, 어선, 어업권의 재산가액을 말한다.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의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영농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출자지분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 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그 법인의 총 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은 후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영농상속은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제받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가업 또는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초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당시의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가 부과된다.

다. 상속공제 적용의 한도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기초공제, 배우자 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할 때 상속공제의 총합계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해 계산한 공제적용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공제한도액까지만 공제된다(상증세법 제24조).

공제적용한도액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사인증여(증여채무 이행 중인 재산 포함)한 재산가액 -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¹의 과세표준

¹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초과시 적용, 증여재산공제액과 재해손실공제액은 차감하여 계산하며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 주식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위의 산식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을 빼는 것이 헌법에 합치하는지가 문제 되었다. 사전 증여재산을 합산하면서도 공제적용 한도액을 계산할 때 사전 증여재산을 빼게 되면 공제한도액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공제한도액을 두는 것과 더불어 합헌결정을 하였다.²⁰⁾ 헌법재판소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였다. 즉, 상증세법에서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합산규정을 두면서 상속공제의 한도를 두지 않는다면 상속인들이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에 합산된 사전 증여재산가액까지 공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고율의 누진 상속세 적용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합산하도록 하는 법의 취지가 상실될 우려가 있다. 상속공제 한도 조항은 상속인의 실제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상속공제를 인정함으로써 사전증여재산 합산규정의 취지를 살리고자 하는 것이다. 만일 합산규정과 공제한도 규정이 없다면 피상속인은 상속인 등의 자에게 분할 증여함으로써 누진세율에 의한 상속세 부담 없이 상당한 재산을 이전할 수 있어 증여세의 상속세에 대한 보완기능이 불충분하게 되고, 고액의 재산가들이 사전증여를 통하여 누진세율을 회피하는 것이 성행한다면 재산상속을 통한 부의 집종의 완화라는 상속세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3. 공제제도 현황

우리나라 전체 세수 중에서 상속세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2% 정도이다. 비율은 크지 않지만, 최근 들어 증가 폭이 커지고 있다.

20) 헌법재판소 2003. 6. 26.자 2003헌가4결정.

<표 8> 총 세수 중 상속세의 비중(단위: 백만원)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국세청 세수	283,535,518	284,412,645	277,275,291	334,471,443	384,249,472
상속세액	2,831,509	3,154,216	3,904,234	6,944,742	7,611,302
상속세의 비중	0.998%	1.109%	1.408%	2.076%	1.980%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https://kosis.kr>)

국세통계연보의 과세유형별 상속세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기준으로 전체 피상속인 중 약 2.24%만 상속세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과세미달이었다. 그러나 2022년에는 4.52%로 늘어났다. 이는 상속세가 대자산을 중심으로 상당히 누진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9> 우리나라의 상속세 과세 인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피상속인수 (명)	356,109	345,290	351,648	344,184	348,159
과세인원(피상속인수) (명)	8,002	8,357	10,181	12,749	15,760
과세(총상속재산가액 등) (백만원)	18,278,452	19,755,407	24,981,063	30,618,766	67,793,078
과세미달인원(피상속인수) (명)	348,107	336,933	341,467	331,435	332,399
과세미달(총상속재산가액 등) (백만원)	28,344,841	19,112,653	24,471,998	25,605,569	28,257,506
피상속인 중 상속세 부담 인원 비율(%)	2.24	2.42	2.89	3.70	4.52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https://kosis.kr>)

상속공제의 내용은 1997년 개편 이후 거의 변화가 없으며, 연도별 상속공제액의 추이도 거의 비슷하다. 상속공제 중에 배우자 공제의 비율은 40% 정도이고, 그 밖의 인적공제는 약 2%에 불과하다. 그 밖의 인적공제는 주로 자녀 공제나 미성년자 공제, 연로자 공제인데 피상속인의 평균 수명이 80세를 웃도는 현실에서 그 밖의 인적공제 혜택을 받기가 힘들므로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평가가 있다.²¹⁾ 2015년 미성년자와 연로자 추가공제 금액이 늘어나면서 2017년 이후 그 밖의 인적공제 금액이 증가하였다.

<표 10> 연도별 상속공제액의 추이(2018~2022년) (단위: 백만원)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기초공제	691,345	420,681	622,863	633,544	691,345
배우자공제	6,204,099	3,502,719	3,981,678	4,956,984	6,204,099
그밖의 인적공제	341,912	183,556	217,058	275,367	341,912

21) 박성욱, 이재호, 전해진, “상속세 세율 및 인적공제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 조세연구 제23권 제3집, 한국조세연구포럼, 2023, 154쪽.

기타공제 ¹	8,205,882	4,400,190	5,246,808	6,626,899	8,205,882
공제적용 한도초과액	729,209	599,440	586,392	696,734	729,209
소계 ²	14,714,030	7,907,706	9,482,014	11,796,060	14,714,030

¹기타공제에는 일괄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이 포함됨

²상속공제=기초공제 + 배우자공제 + 그 밖의 인적공제 + 기타공제 - 공제적용한도초과액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https://kosis.kr>)

<표 11> 연도별 상속공제액의 추이(2013~2017년) (단위: 백만원)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기초공제	160,374	241,548	271,339	388,436	312,272
배우자공제	2,211,910	2,658,868	2,278,060	2,725,878	2,787,413
그밖의 인적공제	67,666	63,249	19,987	24,011	95,711
기타공제 ¹	3,068,456	3,727,936	3,358,216	3,877,073	3,682,519
공제적용 한도초과액	1,126,183	1,269,725	1,039,806	1,079,725	672,118
소계 ²	4,382,223	5,421,876	4,887,796	5,935,673	6,205,797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https://kosis.kr>)

<표 12> 연도별 상속공제액의 추이(2008~2012년) (단위: 백만원)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기초공제	66,982	61,508	99,196	160,835	160,805
배우자공제	1,691,617	1,920,737	1,900,327	2,216,611	2,243,657
그밖의 인적공제	33,180	33,381	49,477	65,421	68,840
기타공제 ¹	1,941,428	2,173,264	2,239,141	2,711,143	2,952,708
공제적용 한도초과액	363,489	417,111	567,048	929,158	1,098,748
소계 ²	3,369,718	3,771,779	3,721,093	4,224,852	4,327,262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https://kosis.kr>)

조금 더 상세하게 연도별로 살펴보면, 총 상속재산가액 규모별 상속공제액의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배우자 공제나 기타 공제 등은 총 상속재산가액이 10억 원 초과에서 20억 원 이하일 때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배우자 공제는 20~100억 원 구간에서도 크게 나타나는데 비해 기타 공제는 5~10억 원 이하 구간에서 크게 나타난다. 즉, 상속재산이 많을수록 배우자 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3> 2022년 귀속 상속세 결정세액 중 상속공제액의 내용(단위: 백만원)

구분	2022					
	상속공제					
	소계	기초공제	배우자 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	기타 공제	공제적용 한도초과 액
2022년	14,714,030	691,345	6,204,099	341,912	8,205,882	729,209
총상속재산 가액	14,714,030	691,345	6,204,099	341,912	8,205,882	729,209

등 규모별						
1억 이하	843	200	3,500	0	26,281	29,137
3억 이하	14,733	3,800	23,005	1,350	108,446	121,867
5억 이하	25,676	5,800	18,500	480	83,528	82,632
10억 이하	2,025,158	44,922	218,150	71,145	2,002,411	311,470
20억 이하	6,015,743	130,112	2,307,859	160,505	3,574,652	157,386
30억 이하	2,229,414	67,252	1,030,639	42,924	1,107,273	18,674
50억 이하	1,815,096	102,980	982,504	33,795	708,569	12,751
100억 이하	1,430,524	117,731	909,266	20,040	386,373	2,886
500억 이하	992,921	183,640	620,073	7,920	182,413	1,125
500억 초과	146,735	70,818	61,000	700	14,217	0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https://kosis.kr>)

<표 14> 2021년 귀속 상속세 결정세액 중 상속공제액 내용(단위: 백만원)

구분	귀속연 도	2021					
	항목2	상속공제					
	항목1	소계	기초공제	배우자 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	기타공제	공제적용 한도초과 액
귀속연도		11,796,060	633,544	4,956,984	275,367	6,626,899	696,734
총상속재산 가액 등 규모별		11,796,060	633,544	4,956,984	275,367	6,626,899	696,734
1억 이하		778	1,200	6,500	0	33,242	40,164
3억 이하		15,527	4,147	24,500	600	105,749	119,469
5억 이하		31,555	5,000	17,500	1,250	85,349	77,544
10억 이하		1,597,380	39,092	196,199	55,005	1,576,411	269,328
20억 이하		4,814,601	108,043	1,856,120	116,135	2,874,172	139,869
30억 이하		1,798,287	83,541	807,667	48,281	881,058	22,260
50억 이하		1,462,519	74,096	799,438	26,900	570,861	8,776
100억 이하		1,063,040	55,839	690,029	18,400	300,824	2,051
500억 이하		852,318	218,708	483,134	4,050	147,567	1,142
500억 초과		99,372	44,892	39,500	1,250	13,730	0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https://kosis.kr>)

또한, 상속세 최고 법정세율은 50%이지만, 동일한 과세표준 구간의 실효세율은 약 28%로 그 격차가 22%p로 나타난다. 이는 공제제도 등으로 인해 법정 세부담과 실제 세부담 간의 차이가 발생함을 보여준다.²²⁾ 아래 표는 2018년과 2022년의 소득분위별로 피상속인의 수와 총상속재산가

22) 강성훈, 오종현, “상속과 증여에 대한 세부담 격차 연구”, 재정학연구 제14권 제2호(통권 제109호), 2021, 78쪽.

액금액, 총결정세액을 분석한 것이다. 2018년에 상위 10%가 총결정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2.3%였다. 그러나 2022년에는 92.0%이다. 자산가격의 상승과 부의 불평등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표 15> 상속세 분위별 결정현황 및 점유비(2022년)

총상속재산 가액기준분 위별	2022						
	피상속인수		총상속재산가액		과세표준		총결정세액
	인원 (명)	금액 (백만원)	점유비 (%)	금액 (백만원)	점유비 (%)	금액 (백만원)	점유비 (%)
합계	15,760	62,726,926	100.0	46,516,419	100.0	19,260,324	100.0
상위 10%	1,576	45,038,493	72.0	38,853,567	84.0	17,734,348	92.0
상위 20%	1,576	4,193,462	7.0	2,154,035	5.0	583,265	3.0
상위 30%	1,576	3,019,919	5.0	1,299,401	3.0	293,587	2.0
상위 40%	1,576	2,442,992	4.0	906,553	2.0	181,408	1.0
상위 50%	1,576	2,067,318	3.0	658,585	1.0	118,367	1.0
상위 60%	1,576	1,795,068	3.0	538,797	1.0	92,326	1.0
상위 70%	1,576	1,525,187	2.0	553,268	1.0	83,334	0.0
상위 80%	1,576	1,227,813	2.0	449,209	1.0	56,898	0.0
상위 90%	1,576	955,903	2.0	271,701	1.0	28,010	0.0
상위 100%	1,576	335,523	1.0	710,728	2.0	51,966	0.0
경정	-	125,248	-	120,574	-	36,815	-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https://kosis.kr>)

<표 16> 상속세 분위별 결정현황 및 점유비(2018년)

총상속재산 가액기준분 위별	2018						
	피상속인수		총상속재산가액		과세표준		총결정세액
	인원 (명)	금액 (백만원)	점유비 (%)	금액 (백만원)	점유비 (%)	금액 (백만원)	점유비 (%)
합계	8,002	15,147,855	100.0	9,034,714	100.0	2,519,664	100.0
상위 10%	801	6,445,681	43.5	4,894,052	57.2	1,712,074	72.3
상위 20%	800	2,070,297	14.0	991,897	11.6	249,360	10.5
상위 30%	800	1,494,122	10.1	660,913	7.7	136,828	5.8
상위 40%	800	1,205,710	8.1	442,759	5.2	80,183	3.4
상위 50%	800	1,021,203	6.9	345,755	4.0	60,763	2.6

상위 60%	800	869,025	5.9	265,572	3.1	41,045	1.7
상위 70%	800	704,660	4.8	266,653	3.1	37,915	1.6
상위 80%	800	549,679	3.7	164,509	1.9	18,887	0.8
상위 90%	800	380,955	2.6	224,484	2.6	15,488	0.7
상위 100%	801	66,502	0.4	292,709	3.4	14,171	0.6
경정	-	340,021	-	485,409	-	152,953	-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https://kosis.kr>)

4. 상속세 과세방식 전환 필요성에 대한 논의

가. 세계적 추세와 국내 상황

1999년 김대중 대통령의 상속세 과세 강화 정책에 이어,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도 상속과세 완전포괄주의를 시행하는 등 상속세와 증여세를 강화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상속세와 증여세 강화 정책은 세계적 추세와 반대되는 방향이었다. 많은 나라들은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하거나 증여세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캐나다는 세계 최초로 1972년 유산과세형 상속세를 폐지하고 배우자간의 무상이전을 제외한 유증과 증여에 대해 자본이득세를 과세하는 세제 개혁을 하였다. 호주는 1977년 상속세를 점진적으로 폐지하였고, 뉴질랜드는 1992년 이후 사망자부터 상속세를 폐지하였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강화를 재벌의 변칙적인 상속에 대한 사회적 반작용이라는 한국적 특수성과 자본이득과세(양도소득)의 미비라는 조세체계 특성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²³⁾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조세회피와 불법이 개입되기도 하고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상속세 강화는 일응 사회적으로 타당한 측면도 인정된다. 그러나 최근 자산 가격의 급등과 물가상승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고소득 계층에서 중산층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기고 있다. 이 때문에 상속세와 증여세제를 전면적 혹은 부분적으로라도 개편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미국에서는 2001년에 상속세 폐지에 대한 이론적이고 정치적인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상속세 폐지론자들은 상속과세를 폐지하면 경제에 활력을 주고 생산증가, 고용 확대, 자본 축적, 장기적 세수 증가 등의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존속론자들은 상속과세를 폐지하면 현존하는 문제들은 제거되겠지만 가장 누진적인 조세 장치를 제거함으로써 소득과 부의 분배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상속과세를 유지하되 미국의 유산과세형을 취득과세형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였다. 즉, 유산을 여러 사람에게 분산하여 이전하도록 유도하여 부의 집중을 완화하고 기회균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보았다.²⁴⁾

23) 김석환, “이전세제 개편 논의와 시사점에 대한 고찰-미국의 유산세 폐지와 우리나라의 포괄주의 증여과세를 중심으로”, 강원법학 제28권, 2009.

24) 최명근, 「미국의 유산세 폐지와 정책적 시사점」, 한국조세연구원, 2002, 10쪽.

나. 우리나라의 상속세 폐지 견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를 폐지하자는 견해는 상속세를 폐지하는 대신 자본이득세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상속세 폐지의 국제적 동향, 전체 세수에서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1% 내외인 점, 상속세의 부정적 효과(저축의 감소, 부의 국외 유출, 국적 이동 등의 문제), 소득세에 대한 이중과세, 부의 재분배 효과 미비 등을 논거로 제시한다.²⁵⁾

다.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 견해

상속세 과세방식을 기존의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유산세 방식은 일제 강점기에 시행되었던 조선상속세령을 참조하여 도입된 것이다. 일본은 이미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고 다시 법정상속세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유산세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과세방식 전환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견해는 중산층에 과중한 상속세 부담, 초고령화 사회 등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상속세의 문제 등을 지적한다. 이론적으로 증여세가 수증자에게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증여세와의 통일성을 논거로 들기도 한다. 폐지론을 받아들여려면 최소한 자본이득 과세제도가 완비되어야 하고, 특히 유가증권 양도 소득 과세의 정상화가 중요하므로 폐지론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현행 유산과세형을 취득과세형으로 전환하는 정도의 개혁이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²⁶⁾ 이 견해는 핵가족이 경제주체가 된 사회 변화를 반영하여야 하고, 행정편의나 세수기여도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부의 집중을 억제하고 세부담의 형평성 관점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하자는 견해도 있다.²⁷⁾ 이 견해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할 때 일괄공제를 폐지하고, 상속공제금액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헌법적 관점에서 현행 유산세 방식이 헌법적 정당성이 없으므로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²⁸⁾ 유산세 방식은 상속인 및 수유자 각자가 자신에게 귀속된 담세력에 따라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응능과세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 그러나 포괄승계주의 상속 법제를 취하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차별대우를 정당화할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더 논의를 전개하여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했을 때 예측되는 조세회피에 대한 대책까지 논의하는 견해가 있다. 일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했을 때 조세회피 문제로 인해 법정상속분 방식으로 전환했듯이, 우리나라에서도 조세회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그

25) 정유석, “상속 및 증여세 폐지와 자본이득세로의 전환 타당성에 대한 연구”, 국제회계연구 제27집, 2009, 163-184쪽.

26) 최명근, 앞의 보고서, 97쪽.

27) 강성훈, 오종현, 앞의 논문, 105쪽; 김신언, 앞의 논문, 105쪽도 같은 취지임.

28) 신호영, 앞의 논문, 147쪽.

대책으로는 일정한 경우 상속재산을 위장분할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둘 것, 상속재산을 미분할하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처분대금이나 인출금액으로서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일본 의예에 준하는 법정지분과세방식을 도입할 것 등을 제안한다.²⁹⁾

라. 현행 유산세 방식 유지 견해

한편, 과세방식을 전환하는 것보다는 현재 과세방식을 유지하되 공제방안 등 세부 내용을 조정 하자는 견해도 있다. 이 견해는 일괄공제를 폐지하고 기초공제액을 3억 원 이상으로 대폭 증액 하여 공제를 단순화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연로자 공제와 미성년자 공제는 크게 실익이 없고 소득세의 인적공제 항목으로만 타당하므로 폐지를 제안한다.³⁰⁾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과세방식을 전환하든, 현재의 과세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든 상속세 공제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공제제도 개편은 결국 상속세의 세부담을 경감하게 될 것이다. 상속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지만 세부담 경감에 따라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와 가족 수 및 가족 구성원의 인적 특성에 따른 세부담의 공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과세방식을 유산취득세로 전환할 때 상속재산의 금액 및 상속인 수에 따라 조세 형평성이 제고될 수 있는지를 세부담 분석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29) 안호영, 박훈, “상속세 과세방식 전환 시 법제도적 개선방안 연구-위장분할 방지를 중심으로-”, 세무학연구 제32권 제1호, 한국세무학회, 2015.

30) 김두형(2020), 앞의 논문, 260쪽; 김신언, 앞의 논문, 86쪽.

IV. OECD 회원국의 상속세제 공제제도 현황

1. OECD 회원국의 상속세 과세 현황

가. OECD 국가들의 상속세 현황

OECD 회원국 38개국 중 상속 관련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는 미국, 독일, 일본, 우리나라 등 24개국이다. OECD 회원국 중 상속세가 없는 나라는 캐나다, 스웨덴, 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이다. 스웨덴,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호주 등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시점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보유한 전체 기간에 누적된 자본이득을 과세한다.

현재 상속세를 부과하는 24개 국가 중에 우리나라, 덴마크, 미국, 영국은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고, 그 외 20개국은 유산취득세 방식을 취하고 있다.

〈표 17〉 OECD 국가들의 상속세 과세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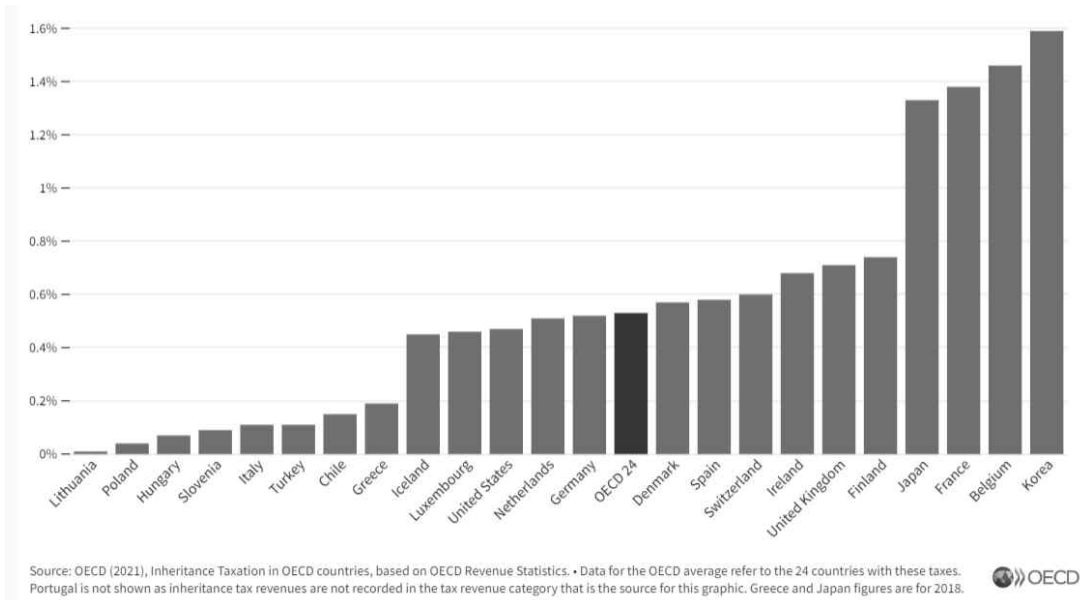
상속세 유형	국가
유산취득세형	벨기에, 칠레,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랜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¹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위스, 터키
유산세형	덴마크, 한국, 영국, 미국
개인소득세 하에 증여세	라트비아(상속세 없음), 리투아니아(상속세와 분리)
상속세 폐지	호주(1979), 오스트리아(2008), 캐나다(1972), 체코(2014), 이스라엘(1980), 멕시코(1961), 뉴질랜드(1992), 노르웨이(2014), 슬로바키아(2004), 스웨덴(2004)

¹포르투갈은 인지세(Stamp Duty) 형식으로 부과됨.

※자료 : OECD, Inheritance Taxation in OECD Countries, 2021.

각국의 세입에서 상속세(또는 증여세와 합산)가 차지하는 비율은 대체로 적은 편이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2019년 OECD 평균은 0.6%에도 미치지 못한다.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국가로는 한국, 벨기에, 프랑스, 일본이 있다. 이 나라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인정하는 인적공제 혜택이 적다. 반면 이탈리아, 그리스 등은 전체 세입에서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낮는데, 이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인적공제 혜택을 최대한으로 허용한다.

<그림 1> OECD 국가의 총 세수에서 상속증여세의 비중 (2019년) (단위: %)



※ 자료: OECD Wealth Distribution Database, oe.cd/wealth.

아래에서는 상속세 폐지 국가 중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캐나다, 스웨덴의 폐지 경위를 살펴본다. 미국은 상속세를 폐지하지는 못했지만 사실상 폐지 수준을 밝기도 했으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캐나다의 상속세 폐지 경과

캐나다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1972년 생전 증여와 사망 시 유산 상속 여부를 불문하고 상속세와 증여세를 완전히 폐지하였다. 주정부 차원에서는 앨버타 주가 처음으로 1972년에 상속·증여세를 폐지하여 상속세 천국(Death Tax Heaven)지역으로 탄생하였다. 가장 마지막으로 상속·증여세를 폐지한 주는 퀘벡 주로서 캐나다의 그 어떤 주에도 상속·증여세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속·증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압력에 직면하여 결국 1985년 4월 23일에 상속·증여세를 폐지하였다.³¹⁾

캐나다는 상속세를 폐지한 대신 소득세제상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유상처분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어 피상속인이나 증여자가 보유하는 기간에 발생한 자본이득에 과세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부모가 100달러에 주식을 취득하고 자녀에게 증여할 시점에 주식의 공정시장 가격이 500달러라면 주식을 자녀에게 500달러에 양도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모의 자본이득은 400달러가 되고 나중에 자녀가 600달러에 양도하면 자녀의 자본이득은 100달러가 된다.

그러나 배우자의 일방이 타방의 배우자에게 재산을 무상이전하면 그 재산의 공정시장가격 상

31) 송원근, 유진성, 허원제, 김영신, “주요국의 상속·증여세 최근 동향 및 시사점”, 정책연구 13-14, 한국경제연구원, 2013. 11, 30쪽.

당액은 무상 이전자의 수입으로 의제하지 않는다. 배우자간 상속 또는 증여로 무상 이전되는 재산의 자본이득은 마지막 생존한 배우자가 사망할 때에 비로소 과세하는 구조이다.³²⁾

다. 스웨덴의 상속세 폐지 경과

스웨덴은 정치 상황에 따라 상속세제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1940년에 사회민주당이 집권하여 1947년에 원래의 유산취득세에 유산세를 추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때문에 상속세 유효세율이 기존의 40%에서 60%로 급격하게 인상되었다. 이렇게 되자 상속세율의 인상으로, 가족기업이 파산하고 부유층이 조세회피를 위한 이민을 가는 사회 문제가 발생하였다. 특히 중산층까지 상속세가 부과되어 세부담이 가중되었다. 결국 1959년 유산세를 폐지하고, 2005년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제도 폐지하였다.

32) 최명근, 「상속과세존폐론」, 경제법률회사, 2007, 139쪽 이하.

<그림 2> 스웨덴 상속 및 증여세제의 역사적 변천 과정

	주요내용
1884	- 취득형 상속세제를 처음으로 도입됨. - 법정 상속인이 있을 경우의 세율: 0.5%, 법정 상속인이 없을 경우의 세율: 0.6%
1894	- 상속세제의 세율이 배우자와 자녀의 경우에 최대 1.5%
1914	- 새로운 상속 및 증여세 관련 법령 및 조례
1915	- 현대적 의미의 증여세제가 처음으로 도입
1933	- 정부는 유산형 상속세제(Estate Tax)를 도입하려고 했으나, 의회의 반대로 무산되었으며, 대신에 기존의 상속 및 증여세 부담을 높였음.
1934	- 상속 및 증여세율 인상 - 부의 분배와 상속에 대한 불평등과 공정성에 대한 대중적 논의 - 정부는 유산형 상속세제를 다시 도입하려고 시도했으나 의회에서 무산됨. - 대신 부유세(Wealth Tax)가 도입됨.
1941	- 상속 및 증여세제 개정 - 상속 및 증여세에 대한 세금부과 한도가 크게 상향조정됨.
1944	- 사회민주주의자와 무역노조연합(Trade Union Confederation)과 함께 정책프로그램을 론칭함. - 이 프로그램의 핵심목적은 높은 수준의 세금을 통한 소득과 부의 평등화임.
1948	- 유산형 상속세(Estate Tax)를 시행 - 상속세를 통해 조세의 형평성을 달성하려는 의지가 강했다고 평가됨.
1959	- 유산형 상속세제가 폐지되었으며, 대신 취득형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이 증가
1971	- 중소기업의 재산에 대한 자산가치 평가의 완화 도입
1978	- 중소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부와 상속세는 장부가의 30% 수준으로 하향 조정됨.
1981	- 1981년 세율구간에 대해 당시의 높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상향조정됨.
1983	- 소득계층 1과 2에 대해 최고세율 인상(70%와 75%)
1987	- 상속세 구간의 수가 감소하고 세율도 하향 조정됨. - 1948년 48.1% → 1973년 61.6% → 1987년 20.3%
1992	- 상속세율 큰 폭 감소
2004	- 배우자에게 적용되던 취득형 상속세(Inheritance Tax)폐지 - 상속세 대신 자본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적용 -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에 따라 차등과세하는 이원소득세제 - 근로소득 최고한계세율: 국세 25%와 지방세 30~33% 합쳐 총 세율 55~58% - 자본소득 최고한계세율: 국세로 단일세율 30% 적용
2005	- 상속세와 증여세 폐지 - 형평성보다는 경제성장에 정책목표를 둔 부 친화적인 정책으로 평가

※자료: 송원근, 유진성, 허원제, 김영신, “주요국의 상속·증여세 최근 동향 및 시사점”, 정책연구 13-14, 한국경제연구원, 2013. 11, 39쪽.

스웨덴은 상속세를 폐지한 후 가계순저축률이 상승하고, 2000년 후반 경제성장율이 EU나 OECD 평균보다 높아졌다. 유출되었던 자본이 자국 내 가족기업으로 돌아와 경제가 활성화되었다고 평가한다.³³⁾ 그러나 일부에서는 상속세 폐지로 인해 부의 불균형이 가속화되었다는 평

33) 송원근, 유진성, 허원제, 김영신, 앞의 논문, 40쪽 이하.

가를 하기도 한다. 2017년 Henrekssen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1963년 스웨덴의 가장 큰 부자는 GDP의 0.18%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2016년에는 불과 10명의 부자가 GDP 1% 이상을 소유하고 있어 부의 불균형이 심해졌다고 분석하고 있다.³⁴⁾

라. 미국의 상속세 존폐 논의

미국은 1797년 사망에 대한 인지세를 5년간 부과하다가 1862년 남북전쟁 중 유산취득세 형태로 부활한 후 폐지되었다. 그러다 1916년 누진 유산세 방식으로 다시 입법이 이루어졌고, 1932년 생전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시작하였다. 1976년 상속세와 증여세가 통합되었다. 1976년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과세하는 입법이 제안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폐지되었다. 이후 2001년 부시 정부에서 경제성장과 세금감면법(Economic Growth and Tax Relief Reconciliation, EGTRRA)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2009년까지 상속세를 점진적으로 인하하다가 2010년에 상속세와 세대생략이전세는 폐지하고 증여세는 개인소득세와 일치시키려고 하였다. 그러나 의회가 2010년까지 상속과세 폐지와 관련된 추가적인 입법을 하지 못하자, 2010. 12. 31. EGTRRA에 따른 일체의 조세경감 조항들이 소멸하고(sunset) 유산세제가 다시 부활하였다.³⁵⁾

34) 김혜성, 이영한, 최기호, “상속세의 자본이득세 전환 검토”, 세무학연구 제39권 제1호, 한국세무학회, 2022.

35) 박민, “미국의 상속세 폐지에 관한 연구-찬·반 양론을 중심으로”, 조세학술논집 제20집, 2004.

〈그림 3〉 OECD 회원국의 상속세 연혁 등

국가	법률명 (national language)	법률명 (English)	최초 도입년	현대적 과세	폐지년	부과주체
벨기에	Droit de succession	Inheritance Duty	1795	1936	-	Regional / State
칠레	Impuesto a las Herencias y Donaciones	Inheritance and Gift Taxes	1915	1915	-	National
덴마크	Boafgiftsloven	Inheritance Estate and Gift Taxes	1792	1995	-	National
핀란드	Perintövero	Inheritance Tax	1940	1940	-	National
프랑스	Droits de mutations titre gratuit	Tax on Free Transfers	1791	1791	-	National
독일	Erbschaftsteuer und Schenkungsteuer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1906	1974	-	National
그리스	Φόρος Κληρονομιάς	Inheritance Tax	1836	2001	-	National
헝가리	öröklési illeték	Inheritance Duty	1918	1918	-	National
아이슬란드	Erfðafjárskattur	Inheritance Tax	1792	2004	-	National
아일랜드	Capital Acquisitions Tax	Capital Acquisitions Tax	1894	1976	-	National
이탈리아	Imposta sulle successioni e donazioni	Inheritance and Gift Tax	1862	2006	-	National
일본	相続税	Inheritance Tax	1950	1950	-	National
대한민국	상속세및증여세법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1950	1950	-	National
리투아니아	Paveldimo turto mokesčio įstatymas	Law on Inheritance Tax	1990	2003	-	National / Local
룩셈부르크	Droits de succession	Inheritance Tax	1817	1817	-	National
네덜란드	Erfbelasting en schenkbelasting	Inheritance and Gift Tax	1859	1956	-	National
폴란드	Podatek od spadków i darowizn	Tax on Inheritance and Donation	1920	1983	-	National
포르투갈	Imposto do selo sobre transmissões gratuitas	Stamp Duty on Inheritance and Gifts	1959	2004	-	National
슬로베니아	Davek na dediščine in darila	Inheritance and Gift Tax	1988	2006	-	National
스페인	Impuesto sobre Sucesiones y Donaciones	Inheritance and Gift Tax	1798	1988	-	National / 4 Regional
스위스	Erbschafts- und Schenkungssteuer	Inheritance and Gift tax	1870	1986	-	Regional / 5 State
터키	Veraset ve İhtikal Vergisi	Inheritance and Gift Tax	1959	1959	-	National
영국	Inheritance Tax	Inheritance Tax	1894	1986	-	National
미국	Estate and Gift Tax	Estate and Gift Tax	1916	1916	-	National
호주	Estate Tax	Estate Tax	1851	1914	1979	National / State
오스트리아	Erbschaftssteuer	Inheritance Tax	1759	1955	2008	National
캐나다	Estate Tax	Estate Tax	1941	1958	1972	National
체코	Zákon o dani dědičné, darovací a dani z převodu nemovitostí	Act on Inheritance Tax, Gift Tax and Real Estate Transfer Tax	1993	1993	2014	National
에스토니아	-	-	-	-	-	-
이스라엘	חוק מס תבואה	Inheritance Tax Law	1949	1949	1980	National
라트비아	-	-	-	-	-	-
멕시코	Impuesto sobre Herencias y Legados	Inheritance and Bequest Tax	1926	1926	1961	National / State
뉴질랜드	Estate duty	Estate Duty	1866	1866	1992	National

※ 자료: 이세진, 김준현, “OECD 회원국들의 상속 관련 세제와 시사점”, 외국 입법·정책 분석 제08호, 국회입법조사처, 2021. 10, 4쪽.

2. 상속세를 과세하는 국가의 공제제도 현황

이 장에서는 OECD와 IBFD 자료, 필요한 경우 각국 국세청과 통계청의 자료를 참조하여 OECD 회원국 중 상속세를 과세하는 국가의 상속세 과세개요와 공제제도를 검토하였다.³⁶⁾ 상속공제는 크게 물적공제와 인적공제가 있는데, 현재 상속세제 개편과 관련하여 논의되는 내용은 주로 인적공제 부분이다. 따라서 물적공제의 내용 중 가업상속공제나 주택에 대한 공제 등은 관련되는 부분에서 간략하게만 언급하기로 한다. 검토하는 국가의 순서는 G7 국가 및 우리나라와 같은 유산세 방식을 취하는 국가들을 먼저 언급하였다. 가장 마지막으로 스위스를 검토하였는데, 스위스는 연방 차원에서 상속세가 없고, 각 주마다 별도의 상속세제를 갖고 있다.

가. 영국

1) 상속세 과세개요 및 세수 현황

영국은 상속재산 전체에 대하여 유산세 방식으로 상속세를 과세한다. 영국은 일반적인 증여세가 없는 대신 피상속인 사망 전 7년 이내에 증여를 한 경우 상속세로 과세한다. 개인이 이전에 소유한 자산의 사용으로부터 얻는 소득 중 5,000 파운드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되지만, 납세자는 상속세의 대상으로 선택함으로써 소득세 부과를 배제할 수 있다. 생전 재산 이전의 경우 증여자가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지만, 수증자가 세금 납부를 선택할 수도 있다. 사망에 따른 과세 가능한 재산의 이전이나 간주 이전(즉, 사망 전 7년 이내 양도)의 경우 유언집행자에게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다. 신탁재산을 이전함으로써 상속세 부담이 생기는 경우 수탁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만약 위와 같은 주된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면 이전받은 사람(즉, 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다(sections 199 to 210 of IHTA 1984).

상속세는 거주자 개인과 신탁의 전 세계 재산에 대해 부과된다. 비거주자는 영국에 소재하는 재산(특정한 영국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은 제외)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다. 상속세 목적상 특정 기간 영국에 거주한 적이 있다면 영국의 거주자로 간주하여 거주자 개념을 넓히고 있다. 상속세는 사망에 따라 이전하거나 생전에 신탁 또는 밀접한 지배회사(closely controlled company)로 이전하는 경우에 모든 재산에 대해 부과한다(section 2 of IHTA 1984).

2007년 10월에 상속세율 0% 구간을 신설하여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았으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상속세 감세 정책을 중단하였다.³⁷⁾ 2012년에는 상속재산 중 10% 이

36) 영어로 inheritance tax는 각 상속인에게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의미한다. 반면 estate tax는 유산에 부과하는 유산세 방식을 의미한다. 이때 상속세보다는 유산세라고 번역할 수 있다. 그러나 개별 국가는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inheritance tax와 estate tax를 구분하지 않고 통일하여 상속세라고 한다.

37) 원종학, 「주요국의 상속증여세제 현황 및 최근 동향」, 66쪽.

상 기부 시 적용세율을 40%에서 36%로 낮춰서 기부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다. 2020년부터 2021년 과세연도에 COVID-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영국 내 전체 사망자 수는 61만 2천 명에서 72만 2천 명으로 증가했다(18%).³⁸⁾ 2020년부터 2021년 과세연도에 영국 사망자 중 3.73%가 상속세를 납부했다. 이는 2019년부터 2020년 세무연도 대비 0.03% 감소한 수치이다. 2017년부터 주택에 대한 상속세 면제제도(RNRB)가 도입되면서 총세수에서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부터 2018년 과세연도 이후로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나타낸다. 2011~2012 회계연도에는 0.6% 정도였으나 소폭으로 꾸준히 상승하였다. 2018년 이후로는 0.8% 정도를 유지하고 있으나, 2020년에는 0.9%로 상승하기도 하였다.

<표 18> 영국의 총 세수 중에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율(단위: 백만 파운드)

과세연도	총 세수	소득세	자본이득세	상속세	총 세수에서 상속세의 비율(%)
2015에서 2016	532,504	168,451	7,060	4,650	0.873
2016에서 2017	567,992	177,065	8,561	4,824	0.849
2017에서 2018	593,324	180,049	7,793	5,205	0.877
2018에서 2019	621,054	191,030	9,191	5,359	0.862
2019에서 2020	633,316	193,243	9,826	5,122	0.808
2020에서 2021	583,967	193,742	11,131	5,326	0.912
2021에서 2022	715,516	220,612	15,263	6,054	0.846
2022에서 2023	788,810	248,358	16,929	7,087	0.898

※ 자료: 영국 국세청 (<https://www.gov.uk/government/statistics/hmrc-tax-and-nics-receipts-for-the-uk>)

2) 상속공제 내용

영국의 상속세 과세체계는 총유산에서 일반 공제 항목(부채, 장례 비용 등)을 차감하고 배우자 공제와 기부금 공제 등을 하여 총 순유산을 구한다. 총 순유산에서 국외 재산 등을 추가하고 사망 7년 이내에 증여한 자산을 더해서 총 과세대상 자산액을 산출한다. 상속재산 325,000 파운드 이하까지는 0%의 세율이 적용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40%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38) 영국 국세청

(<https://www.gov.uk/government/statistics/inheritance-tax-statistics-commentary/inheritance-tax-statistics-commentary>)

<표 19> 영국의 상속세 과세체계

총 유산(gross total the estate)
(-) 부채, 장례 비용, 유산관리비용 등
= 조정된 총 유산(adjusted gross esatate)
(-) 배우자 공제, 기부금 공제 등
= 공제 감면 후 총 순유산(total net estate)
(+) 국외 재산, 신탁 등 고려해야 할 추가 재산
= 총 과세대상 유산(total chargeable estate)
(+) 사망 7년 이내에 증여한 자산
= 총 과세대상 자산액(tentive estate tax)
(-) 상속세 기본공제(inheritance tax nil rate band at the date of death)
= 과세표준
(×) 세율
= 상속산출세액

※자료: 원중학, 앞의 보고서, 69쪽.

상속세에 있어서 다양한 공제제도를 두고 있다(sections 18 to 29A of IHTA 1984). 배우자와 파트너(civil partners)간 재산의 이전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면제한다. 만약 상속인이 영국 거주자가 아니라면 325,000파운드에 한하여 면제한다. 비거주자인 배우자 또는 파트너는 상속세 목적으로 영국 거주자가 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영국 거주자가 이전에 그가 영국 거주자가 아니었던 기간에 대해서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이전에 결혼했거나 파트너 관계였던 개인은 이혼이나 파트너 관계 해소 후에도 소급해서 선택을 할 수 있다.

통상적인 지출로 인정되는 매년 정기적인 증여는 1년에 3,000파운드까지 공제한다. 공제 한도 중에 사용하지 않은 부분은 다음 1년간 이월공제 받을 수 있다. 자선 목적의 기부나 정당에 대한 기부도 면제된다.

비법인 사업체에 대한 지분권(interest)의 양도, 거래 회사(trading company)의 지배 지분권(controlled interest)의 양도, 비상장(unquoted) 거래 회사(trading company) 주식의 양도에 대해서는 상속세율이 100% 감면된다. 사업 자산의 특정한 거래에 대해서는 50%까지 세율이 경감된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사망 직전까지 피상속인이 통제권을 가졌던 회사에서 사업을 위해 전체적으로 주로 사용되었던 토지, 건물, 기계, 설비 등은 50% 감면된다. 특정 농업 자산에 대해서도 세율 경감 혜택이 있다. 즉, 농업용 토지 및 목초지, 삼림지 및 가축 및 어류의 사육에 사용되는 건물이 영국, 채널제도(Channel Islands), 맨섬(Isle of Man),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에 있다면 토지는 100%, 기타 농업자산은 50%를 공제한다. 다만 소유자나 소유자가 지배하는 회사, 소유자의 배우자나 파트너는 2년 이상, 기타의 자는 7년 이상 소유 및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³⁹⁾ 영국의 사업자산 공제는 그 적용을 받는 요건이 느슨하고 공제의 폭도

매우 큰 편이다. 상속인들이 일반적으로 상속 이후에 사업을 얼마나 오래 유지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으므로 사업자산공제가 다소 임의적인 제도라는 점을 부인하기 힘들지만, 기업승계를 촉진하고 연속성을 제공한다는 근거로 정당화된다.⁴⁰⁾

2015년 Finance(No. 2) Act에 따라 2017. 4. 5. 이후 사망 시 직계비속에게 이전되는 주택에 대해서 주택상속공제가 인정된다. 집을 줄이거나 소유권을 포기하고 동등한 가치의 자산이 직계비속에게 이전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요건을 갖춘 주택이 사망 시에 직계비속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를 주택에 대한 상속세 면제 범위(Residence Nil Rate Band)라고 한다. 2022/23년에서 2024/25년까지는 17만 5천 파운드가 면제된다. 순가치가 2백만 파운드를 초과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주택 상속 공제금액이 줄어든다. 즉, 매 2파운드 당 1파운드씩 공제금액이 줄어든다. 2021년 재무법(Finance Act)은 위 공제범위와 한도를 2026년 4월까지 동결시켰다. 이후 2023년 재무법은 이 동결을 2028년 4월까지 연장하였다.

생전이나 사망 시에 과세 가능한 자산의 금액은 이전 7년 동안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한다. 증여자가 증여를 한 후 3년 이상 생존한 경우에 해당 증여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이를 테이퍼링 감면(tapering relief)라고 한다. 증여를 통해 재산을 양도한 이후에 세금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3) 상속공제 현황

상속세 공제 항목 중 제일 많이 공제받는 항목은 생존 배우자 또는 파트너에 대한 공제이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세무연도에는 157억 파운드가 공제되었다. 이는 2019년부터 2020년에 비해 27억 파운드(21%)나 증가한 금액이다. 이 공제는 2020년부터 2021년 세무연도에 주택에 대한 상속공제(NRB)를 초과하는 24,000파운드의 부동산에 사용되었다.

농업 및 사업의 상속재산 공제는 2020년부터 2021년 세무 연도에 42억 파운드였다. 이는 2019년부터 2020년 세무 연도 대비 14억 파운드(51%) 증가한 금액이다. 이 증가액의 대부분은 사업재산의 상속공제에 집중되어 있다.

<표 20> 영국의 연도별 상속공제액의 비교(단위: 백만 파운드)

사망 연도의 공제금액	2016~2017	2017~2018	2018~2019	2019~2020	2020~2021
상속세 부담 0% (Nil Rate Band)	58,500	70,700	71,200	75,600	90,000
상속세 부담 0%	19,600	23,000	25,800	27,700	33,400

39) 영국 정부, "Agricultural Relief for Inheritance Tax"(<https://www.gov.uk/guidance/agricultural-relief-on-inheritance-tax>)

40) 김대홍, "영국의 기업승계를 위한 사업자산공제에 관한 연구", 중견기업연구 제10권 제1호, 2023. 4, 35쪽.

(Transferable Nil Rate Band)					
순 상속재산(Net estate)	41,900	60,200	50,800	49,300	60,900
배우자 또는 파트너에 대한 공제	9,740	20,200	13,800	13,000	15,700
적격 자선단체 등에 대한 공제	1,770	2,760	1,700	1,600	1,790
농업 자산에 대한 감면	887	1,310	956	929	1,020
사업 자산에 대한 감면	1,250	2,220	2,530	1,860	3,200
비상장주식(unquoted shares)에 대한 감면	828	1,360	1,720	1,220	2,550
기타 사업용 자산에 대한 감면	417	869	813	637	642
자산의 매각에 대한 감면	251	494	450	283	109
문화재의 조건부 면제/기타 감면이나 공제	227	555	268	187	392
순 상속 과세 가치 (Net chargeable value) ¹	28,000	33,200	31,300	31,600	39,000
세부담 0% (Nil Rate Band)	11,600	13,700	12,200	11,500	14,100
세부담 0% (Transferable Nil Rate Band)	3,530	4,070	3,570	3,310	3,980
세부담 0% (Residence Nil Rate Band)	[z]	3,130	3,640	4,140	6,150
다른 세율 적용	12,800	12,300	11,900	12,700	14,800
40% 세율	4,770	4,510	4,370	4,550	5,390
36% 세율	323	357	345	482	468
36% 세율 적용으로 인한 감소한 상속세액	36	40	38	54	52
기타 감면 ²	44	82	84	67	99
Tax payable [note 9]	5,050	4,780	4,630	4,960	5,760

¹순 상속재산 가치에서 자산에 대한 공제와 감면을 뺀 금액이다.

²기타 감면은 테이퍼링 감면(tapering relief), 재차 상속 감면(quick succession relief), 이중과세 감면 등이다.

※자료: 영국 국세청, National Statistics

(<https://www.gov.uk/government/statistics/inheritance-tax-statistics-table-122-exemptions-and-reliefs>)

영국은 결혼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의 납세액을 남성, 여성, 남성과 여성의 종합으로 구분하여 통계자료를 발표하고 있다. 아래 표는 2020에서 2021년 결혼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의 납세액의 비교이다. 납세액은 각종 공제와 면제 등을 모두 거친 후에 계산된 금액이다. 여성과 남성을 모두 합친 숫자이다. 결혼한 그룹(파트너 포함)이 다른 그룹보다 납세액이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배우자 상속 시 상속세를 면제하기 때문이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결혼한 그룹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급격히 줄어든다. 46~64세의 결혼한 그룹의 세부담은 전체의 11%이지만, 85세 이상 결혼한 그룹의 세부담은 5.9%이다.

<표 21> 영국의 결혼 여부에 따른 납세액의 비교(남성과 여성 모두 포함)

연령	45~64	45~64	45~64	65~74	65~74	65~74	75~84	75~84	75~84	85~	85~	85~
----	-------	-------	-------	-------	-------	-------	-------	-------	-------	-----	-----	-----

형 태	결혼	사별	기타	결혼	사별	기타	결혼	사별	기타	결혼	사별	기타
납 세 액	35	24	257	71	176	429	125	719	593	195	2,280	789

※자료: 영국 국세청, National Statistics(<https://www.gov.uk/government/statistics/table-124-assets-in-estates-by-gender-age-and-marital-status-of-deceased>)

아래 표는 2020년에서 2021년 사망한 사람의 유산액에 따른 상속인의 수, 상속세액, 평균 유효세율을 보여준다. 일부 셀([z])은 주택상속공제로 인해 세금 부담이 없는 부분이다. 일부 셀([c])은 비밀보장(disclosure control)으로 인해 이용할 수 없는 데이터이다. 300,000파운드 이상부터 상속세를 부담하게 된다. 유효세율은 계속 늘어다가 순 유산액이 7,500,000파운드가 넘어가면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표 22> 영국의 유산액에 따른 상속인의 수, 상속세액 등(2020~2021)

순 상속재산 (lower limits)	비과세자 (명)	과세자(명)	상속세액 (백만 파운드)	평균세액 (파운드)	평균 유효세율(%)
0	9,750	[z]	[z]	[z]	[z]
10,000	7,740	[z]	[z]	[z]	[z]
25,000	5,890	[z]	[z]	[z]	[z]
40,000	3,690	[z]	[z]	[z]	[z]
50,000	3,790	[z]	[z]	[z]	[z]
60,000	8,170	[z]	[z]	[z]	[z]
80,000	10,000	[z]	[z]	[z]	[z]
100,000	86,000	[z]	[z]	[z]	[z]
200,000	63,900	[z]	[z]	[z]	[z]
300,000	35,400	2,380	33	13,800	4%
400,000	20,600	2,460	105	42,800	9%
500,000	14,200	2,770	152	54,900	10%
600,000	7,080	2,300	178	77,600	12%
700,000	4,870	2,140	192	89,900	12%
800,000	3,320	1,800	201	111,000	13%
900,000	2,310	1,560	201	129,000	14%
1,000,000	1,110	6,330	1,020	161,000	13%
1,500,000	486	2,300	775	337,000	20%
2,000,000	145	1,560	888	570,000	24%

3,000,000	76	579	501	865,000	25%
4,000,000	[c]	248	271	1,100,000	25%
5,000,000	[c]	278	413	1,480,000	25%
7,500,000	[c]	114	197	1,720,000	20%
10,000,000	[c]	158	633	4,010,000	17%
Total estates notified	289,000	27,000	5,760	214,000	13%

※자료: 영국 국세청, National Statistics(<https://www.gov.uk/government/statistics>)

4) 세율

상속재산 325,000파운드까지는 세율이 0%이다(section 7 and Schedule 1 of IHTA 1984). 2000년 이후 면세점이 꾸준히 상승하여 영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약간 웃도는 정도의 상승률이었 다.⁴¹⁾ 2009년 이후에 영국 경제의 침체와 맞물려 면세점을 동결시켰고, 현재 금액은 2009년도 에 동결시킨 금액이다. 이 금액 이상은 사망 시의 상속세라면 40%의 세율이 적용되고, 생전 증 여라면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생전 증여는 피상속인 사망 전 7년 이내에서 기간에 따라 세율 이 다르다.⁴²⁾

<표 23> 영국의 생전 증여 기간에 따른 세율

증여가 이루어진 기간(사망 시 기준)	세율(%)
0 ~ 3년	100
3 ~ 4년	80
4 ~ 5년	60
5 ~ 6년	40
6 ~ 7년	20
7년 이상	0

※자료: 영국 국세청, National Statistics(<https://www.gov.uk/government/statistics>)

유언장에 개인의 순 재산가치의 최소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국 또는 EU의 자선단체에 기부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재산에 적용되는 상속세율을 10% 경감하므로, 유효세율 은 36%가 된다. 특정한 유형의 신탁에 대해서는 순자산에 대하여 유효세율 6%로 10년마다 과 세한다. 생전 증여의 경우에는 순자산 가치의 30%에 대하여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특정 신탁 에서 재산이 이전될 때 탈출세(exit tax)가 부과된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24> 영국의 상속세 세율(단위: %)

구분	세율
상속재산 325,000 파운드 이하	0
특정 유형의 신탁재산	6

41) 원종학, 앞의 보고서, 70쪽.

42) EY, 「Worldwide estate and inheritance tax guide」, 2023, 460쪽.

순재산의 10% 이상을 영국 또는 EU 자선단체 기부한 경우	36
기타 일반 상속재산	40

※자료: 영국 국세청, National Statistics(<https://www.gov.uk/government/statistics>)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나. 미국

1) 상속세 과세개요 및 세수 현황

미국은 1916년에 상속세(estate tax)와 1932년에 증여세(gift tax)를 도입한 후, 1976년 이후부터 세율 및 면세범위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⁴³⁾ 1976년부터 2001년까지는 세율 인하, 통합세액 공제의 인상, 배우자 공제 한도 폐지(1981년), 가업상속공제제도 도입(1997년) 등의 변화가 있었다. 2001년 개정된 ‘경제성장과 세금감면법(The Economic Growth and Tax Relief Reconciliation Act of 2001)’은 2007년까지 최고세율은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2010년에 상속세와 세대생략세를 잠정적으로 폐지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2010년 말까지 후속 법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과거의 법률(2001년 법률)이 적용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었는데, 오바마 정부가 2010년 12월 17일 ‘세금감면 및 일자리창출법(Tax Relief, Unemployment Insurance Reauthorization, and Job Creation Act of 2010)’을 입법하였다. 경제성장과 세금감면법은 2009년 12월 31일 만료되고 2010년 잠정 폐지되었던 상속세는 2010년 1월 1일부터 부활하여 현재까지 상속세가 유지되고 있다.

미국은 1976년부터 개인이 생전과 사후에 이전한 모든 자산의 가치에 대하여 통합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다. 상속세나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피상속인이나 증여자가 한 세대를 넘는 다음 세대에게 자산을 이전할 때에는 세대 생략 이전세(Generation Skipping Transfer Tax, 이하 ‘GSTT’)를 부과한다(IRC § 2601-2663). 이는 각 세대 단계에서 자산의 이전에 대한 과세를 하기 위함이다. GSTT는 피상속인의 사망 시 상속재산에 적용되는 최고세율과 동일한 고정세율로 부과한다. 2023년의 GSTT 세율은 40%이다. 공제금액은 상속세의 통합공제세액과 동일하다. 따라서 2023년 공제금액은 12,900,000 달러이다.

미국은 피상속인의 유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다. 연방 상속세 외에 미국 몇 개의 주(States)에서는 별도로 상속세, 증여세, 세대 생략 이전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주 차원의 상속세 규정은 일반적으로 배우자와 직계비속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하의 설명은 연방 상속세에 관한 내용이다.

연방 상속세는 모든 미국 시민과 미국 시민이 아니어도 사망 시에 미국의 거주자(U.S. residents)인 자에게 부과된다. 상속재산관리인(executor) 또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미국 시민과 미국 거주자는 사망 시에 보유하고 있던 전 세계

43) 원종학, 「주요국의 상속증여세제 현황 및 최근 동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1쪽.

재산의 가치에 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사망 전에 이전된 재산이라도 피상속인이 사망 3년 전에 증여한 재산이거나(IRC § 2035), 피상속인이 재산에 대하여 생애 소유권(life estate)⁴⁴⁾을 가지고 있거나(IRC § 2036),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증여의 효력이 발생하는 사인증여이거나(IRC § 2037), 피상속인이 양도를 철회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면(IRC § 2038) 상속에 포함될 수 있다. 비거주자는 미국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 있는 부동산, 개인 유형자산, 미국 법인이 발생한 주식, 미국의 인(내국법인, 내국 파트너십, 미국 시민과 거주자, 국내 신탁)에 대한 채권, 미국 정부나 주에 대한 채권 등이다. 다만, 미국 은행에 한 예금, 이자가 발생하는 보험회사의 계좌, 80% 이상 적극적인 해외 업무 활동을 충족하는 미국 법인에 대한 채권, 비거주자의 생명보험금 등은 비과세된다(IRC § 2105; Treas. Reg. § 20.2105-1).

상속재산은 피상속인 사망 시의 공정시장가치로 평가한다. 유언집행자는 피상속인 사망 이후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하는 대안 가치 평가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IRC § 2032). 농장이나 상업적 활동에 사용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부동산에 대해서는 특별한 평가 방법이 적용된다(IRC § 2032A).

미국 연방의 전체 세수 중에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0.6% 정도로 극히 일부분이다. 2022 과세연도에 순 징수액은 전체 4,259,782,500천 달러이다. 이 중 상속세는 28,130,354천 달러이다. 비율로는 0.7%이다.

<그림 4> 미국의 세목별 징수액 및 환급 현황(2021년과 2022년)(단위: 천달러)

Type of tax	Gross collections [1]			Refunds [2]	Net collections	
	2021	2022	Percentage of 2022 total	2022	2022	Percentage of 2022 total
	(1)	(2)	(3)	(4)	(5)	(6)
United States, total	4,111,569,512	4,901,514,194	100.0	641,731,694	4,259,782,500	100.0
Business income taxes	419,008,841	475,871,099	9.7	55,611,267	420,259,832	9.9
Corporation income tax	417,824,136	474,468,574	9.7	n.a.	n.a.	n.a.
Tax-exempt organization unrelated business income tax	1,184,705	1,402,525	[3]	n.a.	n.a.	n.a.
Individual and estate and trust income taxes [4]	2,348,054,224	2,903,798,899	59.2	[5] 515,622,457	2,388,176,442	56.1
Individual income tax withheld	1,531,700,915	1,763,004,514	36.0	n.a.	n.a.	n.a.
Individual income tax payments [6]	762,349,659	1,055,634,292	21.5	n.a.	n.a.	n.a.
Estate and trust income tax [7]	54,003,650	85,160,093	1.7	3,668,941	81,491,152	1.9
Employment taxes	1,258,170,886	1,417,809,803	28.9	67,871,549	1,349,938,254	31.7
Old-Age, Survivors, Disability, and Hospital Insurance (OASDHI), total [4]	1,246,588,732	1,404,615,026	28.7	67,708,772	1,336,906,254	31.4
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s Act (FICA)	1,174,597,439	1,326,252,997	27.1	n.a.	n.a.	n.a.
Self-Employment Insurance Contributions Act (SECA)	71,991,293	78,362,029	1.6	n.a.	n.a.	n.a.
Unemployment insurance	6,275,547	7,046,465	0.1	133,289	6,913,176	0.2
Railroad retirement	5,306,607	6,148,312	0.1	29,488	6,118,824	0.1
Estate and gift taxes	28,045,739	33,355,276	0.7	848,150	32,507,126	0.8
Estate	23,425,026	28,909,393	0.6	779,039	28,130,354	0.7
Gift	4,620,713	4,445,883	0.1	69,111	4,376,772	0.1
Excise taxes [8]	58,289,822	70,679,117	1.4	1,778,271	68,900,846	1.6

44) Life estate(생애 동안의 소유권)는 어떤 사람이 특정 재산을 그의 혹은 그녀의 생애 동안 소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그 사람이 생존하는 동안에만 해당하는 권리이며, 그 이후에는 해당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로 이전된다.

※자료 : IRS Data Boook, 2022.

연방과 주의 세수 등을 모두 합친 총 조세에서 상속·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0.4% 정도이다. 과거에 비해 비중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표 25> 미국의 상속·증여세 비율(단위: 백만 달러)

연도	총 세수	상속 및 증여세액	상속 및 증여세의 비율(%)
2015	4,773,680	25,582	0.535
2016	4,837,633	25,389	0.524
2017	5,223,462	28,486	0.545
2018	5,115,959	28,289	0.552
2019	5,385,030	21,744	0.403
2020	5,380,217	24,840	0.461
2021	6,112,256	28,986	0.474

※자료: OECD,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REVFRA>

2) 상속공제 내용

상속세 과세체계는 우선 총 유산에서 부채나 장례비용, 배우자 공제, 기부금 공제 등을 하고 세율까지 곱하여 잠정적인 상속세를 산출한다. 여기서 통합세액공제 등을 하여 납부세액이 나온다. 즉, 배우자 공제는 유산에서 차감하지만 통합세액공제는 산출한 세액에서 바로 공제하는 방식이다.

<표 26> 미국의 상속세 과세체계

총 유산(gross estate)
(-) 부채, 장례 비용, 유산관리비용 등
= 조정된 총 유산(adjusted gross estate)
(-) 배우자 공제, 기부금 공제, 주 정부 상속세 공제 등
= 과세대상 유산(taxable estate)
(+) 1976년 이후 조정된 과세대상 증여
= 상속세 과세표준(estate tax base)
× 누진세율
= 잠정 유산세(tentive estate tax)
(-) 기납부 증여세액 공제
(-) 통합세액공제
(-) 외국납부 상속세 공제
(-) 단기 재상속세액공제
= 상속세 납부세액

※자료: 원종학, 앞의 보고서, 37쪽을 참조하여 수정함

총 상속재산에서 법상 허용되는 공제를 하여 과세 가능한 상속재산을 결정한다. 공제되는 금액으로는 행정 및 장례비용, 상속재산의 채무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claims against the estate), 주택담보대출(mortgages)과 채무(IRC § 2053), 손실금(IRC § 2054), 공익이나 자선, 종교 목적의 증여(IRC § 2055), 생존 배우자에 대한 상속(IRC § 2056), 비거주자인 생존 배우자를 위한 국내의 적격 신탁(QDOT)에 대한 이전(IRC § 2056(d) and 2056A), 미국의 각 주와 워싱턴DC에 납부하는 상속세(IRC § 2058)가 있다. 다만, 비거주자에게는 위의 모든 금액이 공제되지는 않는다.

인적공제는 미국 시민이나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다. 미국 시민이나 거주자의 상속·증여 통합세액공제 금액은 매년 미국 내국세입청(IRS)이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여 조정한다. 2023년에 사망한 피상속인의 상속세에 대해서 통합세액공제 금액은 12,920,000 달러이다(IRC § 2010(c)(3)(C); Rev. Proc. 2022-38, 2022-45 I.R.B. 445). 2010. 12. 31. 이후 사망한 피상속인의 생존 배우자는 자신의 고유한 세액공제 금액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미사용한 공제 금액까지 선택할 수 있다. 반면, 비거주자는 통합세액공제 전액을 주장할 수 없고, 13,000 달러(이는 60,000 달러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것과 동일하다)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다. 만약 미국이 조세조약에 따라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면, 미국 내에 위치한 총 재산 가치가 전체 재산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통합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IRC § 2102(b)).

생존 배우자에 대한 상속공제는 금액 제한없이 모두 허용된다(IRC § 2056(a)). 그러나 생애 소유권(life estates)과 조건 성취나 기간의 도과로 종료되는 이익에 대한 상속은 제외된다(IRC § 2056(b)). 만약 생존 배우자가 미국 시민이 아니라면, 국내 적격 신탁(QDOT)을 통한 상속의

경우에만 배우자 공제가 허용된다. 국내 적격 신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탁자 중 적어도 한 명은 미국 국내법인이거나 미국 시민이어야 하고 그 미국 수탁자가 생존 배우자의 사망 시 또는 신탁으로부터 원금을 분배받을 때 상속세를 원천징수할 권리(the right to withhold US estate taxes)를 갖고 있어야 한다(IRC § 2056(d) and 2056A).

3) 상속공제 현황

2021년 미국 내국세입청(IRS)의 통계에 따르면 전체 상속재산은 189,647,122천 달러이지만, 이 중에서 채무와 모기지를 제외한 순자산가치는 182,236,334천 달러이다. 총 공제금액은 94,269,645천 달러이고, 배우자에 대한 상속은 모두 공제되므로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60,320,637천 달러이다. 통합세액공제액은 28,767,526천 달러이다.

상속재산 구간별로 살펴보면 과세가능 신고로는 10백만 달러에서 20백만 달러 구간이 인원이 제일 많다. 이 구간에서는 배우자 상속공제보다는 통합세액공제액이 5,117,175달러로 가장 많다. 상속재산 구간별로 살펴보면 상속재산이 50백만 달러 이상인 그룹이 과세가능 금액이 가장 많고, 이 구간에서 배우자 공제액이 10,273,405달러로 가장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

<표 27> 미국의 2021년 상속재산과 순자산가치(단위: 천달러)

총 상속재산 규모	총 상속재산		순자산가치	
	인원	금액	인원	금액
모든 신고	6,158	189,647,122	6,158	182,236,334
\$10백만 이하	532	4,008,485	531	3,859,246
\$10백만 < \$20백만	3,284	47,162,709	3,284	45,613,062
\$20백만 < \$50백만	1,737	50,927,770	1,737	49,200,411
\$50백만 이상	605	87,548,158	605	83,563,615
모든 과세가능 신고	2,584	98,318,430	2,585	94,926,781
\$10백만 이하	233	1,738,376	233	1,681,274
\$10백만 < \$20백만	1,118	16,434,671	1,118	16,049,174
\$20백만 < \$50백만	865	25,504,334	865	24,732,129
\$50백만 이상	369	54,641,049	369	52,464,203
모든 비과세 신고	3,574	91,328,692	3,573	87,309,553
\$10백만 이하	300	2,270,109	298	2,177,971
\$10백만 < \$20백만	2,166	30,728,038	2,166	29,563,888
\$20백만 < \$50백만	871	25,423,436	871	24,468,282

\$50백만 이상	237	32,907,109	237	31,099,412
-----------	-----	------------	-----	------------

※ 자료: IRS, Statistics of Income Division, Estate Tax Returns Study, October 2022.

<표 28> 미국의 상속공제액(단위: 천달러)

총 상속재산 규모	총 공제 금액		배우자에 대한 증여		통합세액공제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모든 신고	6,112	94,269,645	3,035	60,320,637	6,158	28,767,526
\$10백만 이하	525	1,058,499	196	700,714	532	2,282,617
\$10백만 < \$20백만	3,248	15,610,089	1,630	11,337,127	3,284	15,619,791
\$20백만 < \$50백만	1,733	23,324,805	893	16,640,536	1,737	8,102,865
\$50백만 이상	605	54,276,252	316	31,642,260	605	2,762,254
모든 과세가능 신고	2,574	28,016,261	363	12,140,776	2,584	11,879,006
\$10백만 이하	229	150,138	13	20,671	233	1,000,337
\$10백만 < \$20백만	1,115	1,182,869	83	260,649	1,118	5,117,175
\$20백만 < \$50백만	862	4,049,509	155	1,586,050	865	4,067,157
\$50백만 이상	369	22,633,746	112	10,273,405	369	1,694,337
모든 비과세 신고	3,538	66,253,384	2,672	48,179,862	3,574	16,888,520
\$10백만 이하	296	908,361	182	680,043	300	1,282,280
\$10백만 < \$20백만	2,133	14,427,220	1,547	11,076,478	2,166	10,502,616
\$20백만 < \$50백만	871	19,275,296	739	15,054,485	871	4,035,707
\$50백만 이상						

※ 자료: IRS, Statistics of Income Division, Estate Tax Returns Study, October 2022.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연도별 공제금액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까지는 배우자 공제액이 통합세액 공제액보다 많았지만, 이후로는 통합세액 공제액이 조금 더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2021년도에 다시 배우자 공제액이 더 많아졌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배우자 공제액은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통합세액공제 공제액은 2018년까지 늘어났지만 이후 조금 감소하였다. 2017년 세금 감면 및 일자리법(Tax Cut and Jobs Act)의 시행으로 2017년 연방 상속세의 신고 임계값(threshold)이 549만 달러에서 2018년 1,118만 달러로 상향되었다.⁴⁵⁾ 이로 인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 그룹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사망자 수도 계속 감소하고 있으므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가 점점 줄어들었다. 그러나 2021년 공제금액이 모두 증가하였다. 이는

45) IRS, Publication 5332(Rev.2-2021) <https://www.irs.gov/pub/irs-pdf/p5332.pdf>

COVID-19 팬데믹의 영향으로 피상속인이 증가하고, 자산가치가 상승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표 29> 미국의 연도별 상속 공제액(2016년부터 2021년)(단위:천달러)

연도		총 공제액	배우자공제액	통합세액공제액
2016	모든 신고	101,869,175	73,796,687	26,940,147
	과세 신고	40,334,421	23,203,090	11,187,527
2017	모든 신고	95,670,020	63,249,642	28,273,578
	과세 신고	34,657,409	14,591,492	11,247,567
2018	모든 신고	104,157,267	70,536,918	31,461,116
	과세 신고	30,611,636	11,650,198	12,437,787
2019	모든 신고	88,240,577	57,534,278	22,763,892
	과세 신고	25,382,203	8,531,297	9,115,351
2020	모든 신고	72,108,447	39,743,625	15,567,134
	과세 신고	28,052,911	4,631,092	5,682,234
2021	모든 신고	94,269,645	60,320,637	28,767,526
	과세 신고	28,016,261	12,140,776	11,879,006

※ 자료: IRS, Statistics of Income Division, Estate Tax Returns Study, October 2022.

<표 30> 미국의 사망자 수 비율과 상속세 신고(단위: 천달러)

사망연도	총 사망자 수 (20세 이상)	총 상속세 신고			
		인원	사망자 비율	총 상속재산	공제 후 상속세액
2016	2,700,727	5,467	0.20	105,412,472	20,485,090
2017	2,781,717	5,778	0.21	112,055,432	21,777,877
2018	2,808,458	2,460	0.09	99,344,032	16,173,241
2019	2,824,744	2,129	0.08	77,889,939	14,624,677

※자료: IRS, SOI Bulletin Historical Table 17

(<https://www.irs.gov/statistics/soi-tax-stats-historical-table-17>)

4) 세율

2023년 상속·증여세의 세율은 아래와 같다(IRC § 2001). 비과세와 각종 공제를 제외한 피상속인의 상속과 증여 재산의 총 누적가치에 세율을 적용한다.

<표 31> 미국의 상속세 세율

과세 가능 이전 금액(달러)	전 단계 공제금액(달러)	초과 세율(%)
10,000 이하	-	18
10,001 ~ 20,000	1,800	20
20,001 ~ 40,000	3,800	22
40,001 ~ 60,000	8,200	24
60,001 ~ 80,000	13,000	26
80,001 ~ 100,000	18,200	28
100,001 ~ 150,000	23,800	30
150,001 ~ 250,000	38,800	32
250,001 ~ 500,000	70,800	34
500,001 ~ 750,000	155,800	37
750,001 ~ 1,000,000	248,300	39
1,000,000 초과	345,800	40

※자료: IBFD, Tax Research Platform(<https://research.ibfd.org>)

다. 덴마크

1) 상속세 과세개요 및 세수 현황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유산의 순가치에 부과되는 유산세와 다른 사람(특정한 가까운 친척은 제외)에게 이전되는 추가 세금을 포함한다. 즉,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다. 덴마크에서는 부동산 이전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지만, 등기 이전에 따른 등록세(stamp duty)가 있다. 등록세는 변동세율과 고정세율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23. 1. 1. 현재 1,850크로네(DKK) + 0.6%로 계산한다.⁴⁶⁾ 그러나 생존 배우자가 유산을 분할하지 않고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면 고정된 등록세 1,850크로네만 부담한다.

유언집행자가 유산을 관리한다면 그가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만약 수익자가 행정적인 절차를 관리한다면 세금 납부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지며, 각자 개별적으로도 책임을 진다. 피상속인이 사망 시에 덴마크 거주자라면 그의 전 세계 재산의 시장가치에 대해 덴마크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section 9). 덴마크 거주자가 아니라면 덴마크에 소재한 고정자산, 해당 자산과 관련된 시설물 및 덴마크에 있는 고정사업장의 자산에 한정된다. 상속재산에 대해 모두 덴마크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면 상속공제의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지만, 상속재산 중 일부만 덴마크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라면 공제 혜택도 일부에 한정된다.

덴마크의 전체 세수 중에 상속세와 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0.5% 내외이다.

46) EY, 앞의 책, 2023, 108쪽.

<표 32> 덴마크의 상속세 비율(단위: 백만 크로네)

연도	총 세수	상속세액	상속세의 비율
2015	957,281	5,177	0.540
2016	968,716	4,240	0.437
2017	968,716	4,368	0.434
2018	968,716	4,810	0.478
2019	968,716	8,571	0.783
2020	1,105,573	6,676	0.604
2021	1,105,573	6,616	0.559

※자료: OECD 통계(<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REVFRA>)

2) 상속공제 내용

덴마크는 상속공제 항목이 다양하지 않다. 상속세는 순 상속재산의 가치에서 321,700크로네(2022년에는 312,500크로네)를 공제한 후 세율을 적용한다. 즉, 일괄공제로 321,700크로네를 인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의 사망 시 생존 배우자가 유산을 분할하지 않으면 신청에 의해 상속세를 이월받을 수 있다(sections 1 and 4 of the BAL). 이후에 생존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생존 중에 유산을 분할한다면(예를 들어 재혼하는 경우), 재산이 이전될 때 비로소 상속세가 부과된다.

3) 세율

가까운 친척에게는 15%의 세율이 적용된다(section 6(1)). 가까운 친척의 범위는 자녀/의붓자녀(stepchildren)와 그들의 자녀, 부모, 자녀/의붓자녀의 배우자, 피상속인과 최소 2년 이상 동거한 사람, 이혼한 배우자,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양육 자녀(foster children)이다. 비거주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가까운 친척 이외의 사람들에게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때 25%의 세율로 과세하기 전에 15%의 세율로 과세한 금액이 공제되므로 유효세율은 36.25%를 초과할 수 없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33> 덴마크의 상속세율

상속인	세율(%)
배우자	0
가까운 친척	15
위 가까운 친척 이외의 사람	36.25
공공복리단체 및 국가	0
기타 기관	36.25

※자료: IBFD, Tax Research Platform(<https://research.ibfd.org>)

2020. 1. 1. 이후 가족 소유 기업이 다음 세대로 상속되는 경우에 상속세율이 15%로 조정되었다.⁴⁷⁾

라. 프랑스

1) 상속세 과세개요 및 세수 현황

프랑스는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하지는 않고, 상속인이 각자 받은 상속분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취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프랑스의 거주자라면 전 세계 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된다. 상속인이 프랑스의 거주자이고 이전 10년 간 최소 6년 동안 프랑스의 거주자였다면 전 세계 재산에 대해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다.

상속재산은 공정시장가치로 평가한다. 상속법에 따라 이전된 보석, 예술 작품, 수집품은 예상가치(estimated value)로 평가하지만, 보험 가치 미만으로 신고할 수 없다. 가구는 유산의 대략 5%로 평가한다. 어떤 재산은 전부 또는 일부 상속세가 면제된다. 이를테면 이전된 재산의 성격(예를 들어 역사적 기념물로 분류된 부동산과 산림지), 피상속인의 자격(예를 들어 전쟁과 테러 희생자의 유산), 상속인의 자격(예를 들어 비영리 기구)과 관련된다.

전체 세수에서 상속세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 내외이다.

〈표 34〉 프랑스의 상속세 비율(단위: 백만 유로)

연도	총 세수	상속세액	상속세의 비율
2015	1,002,131	10,540	1.051
2016	1,020,206	10,689	1.048
2017	1,065,075	11,785	1.106
2018	1,090,876	11,895	1.904
2019	1,098,902	12,208	1.111
2020	1,058,387	12,527	1.183
2021	1,136,502	14,646	1.288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REVFRA>)

2) 상속공제 내용

소유권의 존속기간에 따라 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대한 특정한 세액 공제가 허용된다. 모든 경우에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상속세는 해당 주택 가치의 80%에 대해서만 부과된다. 특정 보유 조건 하에서 상속인 중 적어도 한 명이 회사나 사업을 운영한다면, 회사 주식 가치와 사업 자산의 75%가 상속세에서 공제된다. 70세 이후로 피상속인이 납입한 생명보험 보험료는 30,500 유로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누진세율로 상속세가 과세된다. 1998. 10. 13. 이후 체결된 생명보험계약의 보험금은 152,500유로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20%의 고정세율, 902,838유로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5%의 고정세율이 적용된다. 152,500유로까지는 면제된다. 위 날짜 이

47) EY, 앞의 책, 108쪽.

전에 체결된 생명보험의 보험금은 일반적으로 면제된다.

인적관계에 따라 다양한 공제금액과 상속세율이 적용된다(article 779-797 of the CGI). 배우자나 시민결합 파트너(civil partners)는 상속세가 전부 면제된다(article 777 of the CGI). 형제자매 간의 상속에 대해서도 상속세가 전부 면제되는 경우가 있다. 면제 요건은 상속인이 ① 피상속인의 사망 전 최소 5년 동안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였고 ② 미혼, 과부(또는 홀아비), 이혼이나 별거 중이어야 하고 ③ 50세를 초과하거나 장애가 있어야 한다.

직계존비속에 대한 상속은 상속인마다 100,000유로가 공제된다. 전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형제자매는 상속인마다 15,932유로가 공제된다. 조카들에 대한 상속은 상속인마다 7,967유로가 공제된다. 정신이나 신체장애로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재산의 이전은 수익자마다 159,325유로가 공제된다. 이는 다른 공제와 함께 추가로 공제된다. 기타 상속인은 수익자마다 1,594유로가 공제된다. 손자녀에 대한 상속공제는 없지만, 증여 시 수익자마다 31,865유로가 공제되고, 증손녀자에 대해서도 증여 시 수익자마다 5,310유로가 공제된다.

3) 세율

세율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인적관계에 따라 다르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직계존비속이라면 세율표는 아래와 같다(article 777-Table I of the CGI).

<표 35> 프랑스의 상속세율(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과세금액 (EUR)	세율(%)
8,072 이하	5
8,073 ~ 12,109	10
12,110 ~ 15,932	15
15,933 ~ 552,324	20
552,325 ~ 902,838	30
902,839 ~ 1,805,677	40
1,805,677 초과	45

※자료: IBFD, Tax Research Platform(<https://research.ibfd.org>)

그 이외의 인적관계 중에서 형제자매 간 상속은 24,430유로까지는 35%, 초과하는 금액은 45%가 적용된다. 혈족관계(blood relatives)에 있는 상속인이라면 네 번째 세대(the fourth degree)⁴⁸⁾까지 55%의 고정세율로 과세한다. 그 이외에는 60%의 고정세율로 과세한다.

48) 프랑스 세법에서 "the degree"는 혈족관계의 세대를 의미한다.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상속인이 몇 번째 세대에 해당하는지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자녀는 첫 번째 세대, 손자녀는 두 번째 세대, 증손자녀는 세 번째 세대, 고손자녀는 네 번째 세대이다.

마. 독일

1) 상속세 개요 및 세수 현황

상속인들은 각자가 받은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한다(section 2 of the ErbStG). 피상속인이 사망 시에 독일 거주자라면 전 세계 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된다. 피상속인의 사망 시에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독일 거주자가 아니라면 독일에 소재한 농림업 재산, 부동산, 고정사업장의 사업 자산, 비거주자인 주주가 혼자 또는 특수관계인과 함께 직·간접으로 최소 10%의 지분을 보유한 내국법인의 주식, 독일에 등록된 발명품과 실용신안, 독일에 소재한 부동산(독일에 등록 선박 포함)에 설정된 주택담보대출 및 기타 청구권 등 열거된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부과된다.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의 공정시장가치가 과세표준이 된다(section 12 of the ErbStG). 독일은 총 세수에서 상속세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0.4% 선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그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여 2021년에는 0.6%가 되었다.

<표 36> 독일의 상속세 비율(단위: 백만 유로)

연도	총 세수	상속세액	상속세의 비율(%)
2015	1,128,773	5,535	0.490
2016	1,183,360	6,166	0.521
2017	1,232,795	5,380	0.436
2018	1,294,272	5,996	0.463
2019	1,341,320	6,148	0.458
2020	1,291,049	7,618	0.590
2021	1,423,134	8,602	0.604

※자료: OECD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REVFRA>

2) 상속공제 내용

상속대상 자산에서 부채와 상속재산 관리비용, 장례비용 등을 공제한다. 장례비용과 상속재산 관리비용의 경우 관련 증빙이 없더라도 10,300유로까지 공제된다. 인적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인적관계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진다. 물적공제에는 주택 및 가재도구, 동산 등이 있다.

<표 37> 독일의 상속세 과세체계

상속대상 자산
(-) 공제 가능한 부채들
= 순 상속대상 재산
(+) 과거 증여로 인한 취득액
(-) 물적공제
(-) 인적공제
= 상속세 과세표준
× 세율
= 상속세 산출세액
(-) 기납부 증여세액 공제
= 상속세 납부세액

※자료: 원종학, 앞의 보고서, 83쪽.

독일은 사업용 자산이 상속될 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공제를 허용하는 규정을 상세하게 두고 있다. 2008. 12. 5. 상속세 개혁법을 통해 그 공제율을 대폭 인상(35% → 85% 또는 100%)하여 상속세 부담을 대폭 완화하였다. 이는 기업의 지속적인 운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였다.⁴⁹⁾ 2010년 경제성장촉진법에서는 85%의 공제요건과 관련하여 사업 유지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총급여액의 규모도 650%에서 400%로 대폭 축소하였다. 100% 공제요건에서 사업 유지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고, 급여총액을 1,000%에서 700%로 축소하였다. 그러나 2014년 12월 14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기업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기본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지는 않지만, 구체적인 공제 규모와 공제 방법들은 부분적으로 기본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입법자는 2016년 6월 30일까지 새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⁵⁰⁾ 이에 따라 2017년 6월 22일 개정법이 공포·발효되었다. 2016. 7. 1. 이후 사망 시 상속으로 취득한 독일 소재 사업용 자산의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할 때 사업 자산의 85%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① 그 자산이 향후 5년간 계속 사업에 사용될 것 ②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5년 간 대부분 직장이 유지될 것(즉 사후 5년 동안 임금 합계가 상속 연도의 임금 합계의 400% 이하가 아닐 것) ③ 사업용 자산이 수동자산으로 분류되지 않을 것 (예를 들어 임대용 부동산이나 부동산 권리 및 이와 동등한 권리) 단, 수동자산은 전체 사업용 자산의 10%까지는 사업용 자산으로 취급된다. 5년의 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업이 중단되거나 때

49) 원종학, 앞의 보고서, 87쪽.

50) BVerfG, 17.12.2014-1 BvL 21/12.: 유주선, “독일의 기업승계지원제도 현황”, 최신외국법제정보, 27쪽.(위헌결정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상속세 공제가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어떠한 공제의 필요성 심사도 없이 대규모 기업에까지 제공된다면, 기업재산에 대한 무상 취득 혜택 부여는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없이 세금을 감면하면 조세의 평등에 어긋나게 되므로, 기업 규모를 규정하는 정밀하고 알기 쉬운 기준을 마련하여 필요성 심사를 거치지 않은 공제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입법자의 과제이다. 급여총액규정은 기본적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지만, 종업원 20명 이하를 고용한 소규모기업에게 급여총액규정의 적용을 면제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 등이다.)

각되거나 임금 합계가 요구되는 기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그에 비례해서 면제 혜택이 줄어든다. 그러나 사업이 전부 또는 일부 매각되는 경우에도 자본이득이 특정 조건 하에서 6개월 이내에 재투자된다면 종전대로 면제받을 수 있다. 상속인들은 선택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상속세 전부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① 그 자산이 향후 7년간 계속 사업용으로 사용될 것 ② 피상속의 사망 이후 7년 동안의 임금 합계가 상속연도 임금 합계의 700% 이상일 것 ③ 사업용 수동 자산의 가치가 전체 사업용 자산 가치의 20%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다. 2016. 7. 1.부터 6 ~ 10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 회사는 향후 5년간 총임금이 상속연도 총임금의 250%보다 높으면 85%의 면제를 받을 수 있다. 향후 5년간 총임금이 상속연도 총임금의 500% 이상이면 100%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에 11~15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 회사는 해당 비율은 각각 300%와 565%이다. 임금 요건은 5명 이하의 직원을 두고 있는 회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각종 공제와 세율은 피상속인과의 인적 관계에 따라 세 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여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1그룹은 배우자, 동성 파트너(life partner), 자녀와 의붓자녀(stepchildren), 손자녀, 증손자녀, 부모와 조부모이다. 2그룹은 형제자매, 조카, 의붓부모(step-parents), 자녀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이혼한 배우자이다. 기타 사람과 법적 단체는 3그룹이다. 1그룹에 속하는 상속인이 취득하는 가정용품과 개인소지품은 41,000 유로까지, 기타 동산은 12,000 유로까지 공제된다. 2그룹과 3그룹에 속하는 상속인이 위의 물품을 취득하였다면 12,000 유로까지 공제된다.

부동산(부동산 일부 포함), 미술품, 미술 및 과학 수집품, 기록물 또는 도서관은 해당 자산이 미술, 역사 또는 과학적 중요성으로 인해 보존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이 부합하고, 해당 자산과 관련된 연간 비용이 수익을 초과하고, 대중에 공개되어 있다면 상속세를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면제 비율은 미술 및 과학 수집품은 60%, 부동산 일부의 경우는 공정시장가치의 85%이다. 일정한 추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전액 면제도 가능하다.

피상속인의 사망 시 가계 주택(family home)을 배우자가 상속받으면 상속세가 전액 면제된다. 다만 상속인은 취득 후 10년 동안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만약 상속인의 건강 상태 등의 긴급한 이유로 해당 부동산을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해도 비과세 혜택에 영향은 없다. 자녀나 의붓자녀, 사망한 자녀나 의붓자녀의 자녀들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주택을 즉시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은 과세가 면제된다.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10년간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해야 한다.⁵¹⁾

〈표 38〉 독일의 물적공제 내용

구분		내용
사업용자산에 대한 공제		승계받은 자산가액의 85% 또는 100% 공제
주택공제	배우자 또는 파트너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100% 공제
	자녀	10년 이상 거주한 200제곱미터 이하 부동산 100% 공제

51) EY, 앞의 책 161쪽.

기타	1그룹	가재도구의 경우 41,000유로, 동산의 경우 12,000 유로 공제
	2그룹	가재도구 및 동산 합계 금액에 대해 12,000 유로까지 공제

※자료: 원종학, 앞의 보고서, 84쪽을 참조하여 수정함

인적공제 금액은 인적관계에 따라 상이하다. 자녀는 부 또는 모로부터 각각 인정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부모 모두에게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경우 40만 유로씩 두 번 공제받아 80만 유로까지 인정된다. 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총 상속재산에서 독일 국내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기본 공제액이 제한된다.

<표 39> 독일의 인적공제 금액

인적관계	공제금액(유로)
배우자, 동성 파트너(life partners)	500,000
자녀, 의붓자녀	400,000
손자녀	200,000
이외에 1그룹에 속하는 상속인	100,000
2그룹의 상속인	20,000
3그룹의 상속인	20,000

※자료: IBFD, Tax Research Platform(<https://research.ibfd.org>)

기본공제 이외에도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추가공제가 있다. 이는 생존 배우자와 자녀에 대해 생계비 명목으로 공제를 해 주는 것이다. 생존 배우자나 파트너가 피상속인의 사망 시 연금 수령 자격이 없다면 256,000 유로까지 추가로 공제된다. 자녀는 27세까지 연령에 따라 52,000 유로까지 추가로 공제된다. 자녀에 대한 추가 공제는 아래 표와 같다(section 17 of the ErbStG). 이와 같은 추가 공제를 받는 자들이 상속세 부담이 없는 연금을 수령할 자격이 있다면 공제액은 가치평가법 제14조에 따라(Valuation Act) 연금수령액의 자본가치만큼 줄어든다.

<표 40> 독일의 추가 공제액(특별인적공제금액)

연령		추가 공제액(유로)
배우자, 파트너		256,000
자녀	~ 5세 이하	52,000
	5세 초과 ~ 10세 이하	41,000
	10세 초과 ~ 15세 이하	30,700
	15세 초과 ~ 20세 이하	20,500
	20세 초과 ~ 27세 이하	10,300

※자료: IBFD, Tax Research Platform(<https://research.ibfd.org>)

3) 세율

상속세율은 인적관계와 과세금액에 따라 다르다(section 19 of the ErbStG). 2010년에 법률을 개정하여 1그룹을 제외한 그룹의 세율을 10% 내외로 높여 상속세를 강화했다. 즉, 2010년 전까지 2

그룹은 12~40%, 3그룹은 17~50%였다.⁵²⁾ 그러나 현재는 2그룹은 15~43%, 3그룹은 30~50%이다. 각 그룹에서 가장 낮은 세율은 75,000유로까지이고, 최고세율은 2천 6백만 유로를 초과할 때 적용된다. 세율 계산 시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상속과 증여금액을 모두 합산한다.

<표 41> 독일의 상속세율

초과 취득 과세금액(유로)	1그룹(%)	2그룹(%)	3그룹(%)
0	7	15	30
75,000	11	20	30
300,000	15	25	30
600,000	19	30	30
6백만	23	35	50
13백만	27	40	50
26백만	30	43	50

※자료: IBFD, Tax Research Platform(<https://research.ibfd.org>)

바. 일본

1) 상속세 개요 및 세수 현황

일본은 1905년 러일전쟁의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특별세로 상속세를 도입하였다가 유산세 과세방식의 조세로 정착되었다. 그 후 1950년 사후프권고에 기초하여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유산분할을 촉진하여 부의 집중을 배제한다는 취지였다. 그런데 유산취득세 방식 하에서 법정상속인의 수가 많을수록 세액이 감소되는 점을 이용하여 1958년 전후로 상속세 회피를 위해 양자를 두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1958년 세법 개정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을 유지하면서 상속세 총액을 유산금액 및 법정상속인 수와 법정상속분이라는 객관적인 계수로 정하는 법정상속분 과세방식을 마련하여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⁵³⁾ 이는 법정상속인이 민법에 다른 법정상속분에 따라 유산을 분할했다고 가정하여 상속세 총액을 계산하고, 상속인이 이를 취득한 유산금액에 따라 안분하여 각자의 상속세액으로 하는 방법이다.

사망 시에 일본에 거주하는 상속인은 자산의 소재에 관계없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모든 자산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할 책임이 있다. 일본 거주자가 아니라면 일본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납부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일본 국적자이고, 상속인이거나 피상속인 중 어느 한 명이 상속이 개시되기 전 10년 동안 어느 때든지 일본에 거소를 두었다면 재산의 소재에 관계없이 모든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할 책임이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 시에 일본 거주자라면 상속인의 거주지나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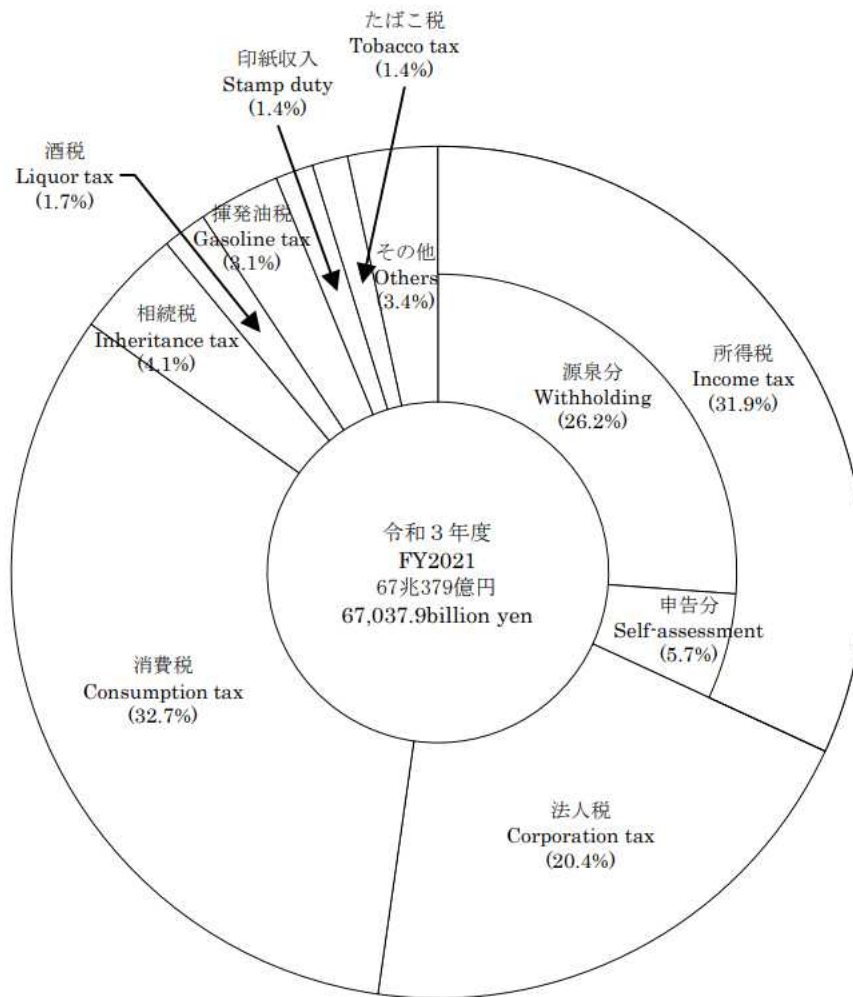
52) 김유찬, 이유향, 「주요국의 조세제도-독일편」, 한국재정연구원, 2009.

53) 황현순, “일본 상속세제의 시사점”, 2023년 한국세법학회 제29회 하계학술대회 발표자료, 21쪽.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한 채무 잔액과 장례비용은 총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된다. 만약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 3년 이내(2023년 세법 개정으로 7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수령한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은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상속재산은 공정시장가치로 평가하며 재산의 공정시장가치를 결정하는 방법에는 다양한 세부 규정이 적용된다. 최근에 상속과 관련한 일본 민법의 개정으로 생존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집에 거주할 권리가 도입되었다. 이 권리의 가치평가는 주택의 공정시장가치, 주택의 잔존연수, 민법의 할인율 등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일본의 국세 및 인지수입 결산액(일반회계분)은 2021년에 67조 379억엔이고, 전년도에 비해 10.2% 증가하였다. 2011년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일본의 국세 세수에서 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 2021년을 살펴보면, 소비세가 218,886억엔으로 32.7%를 차지하고, 원천소득세가 175,332억엔으로 26.2%, 법인세가 136,428억엔으로 20.4%를 차지한다. 상속세⁵⁴⁾는 27,702억엔으로 4.1%를 차지한다. 상속세는 전년도에 비해 19.7% 증가하였다. 2020년 소비세가 209,714억엔으로 34.5%, 원천소득세가 159,976억엔으로 26.3%, 법인세가 112,346억엔으로 18.5%를 차지하였다. 상속세는 23,145억엔으로 3.8%를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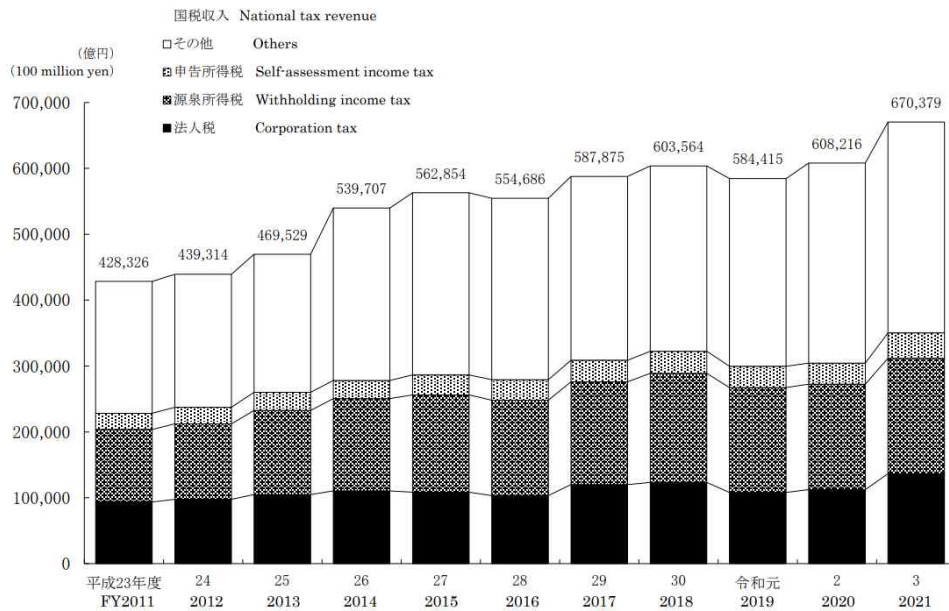
54) 여기서 상속세 세수는 증여세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5> 일본의 국세 세목별 세수 구성비



※자료: 일본 국세청, Tax Statistics(<https://www.nta.go.jp/english/publication/statistics/index.htm>)

<그림 6> 일본의 국세 및 인지수입 결산액(일반회계)의 추이



※자료: 일본 국세청, Tax Statistics(<https://www.nta.go.jp/english/publication/statistics/index.htm>)

1980년대 지가 급등으로 상속세 부담이 크게 증가하자 여러 차례 세법 개정을 통해 상속세를 인하하였다. 예를 들어 ‘2,000만엔+400만엔×법정상속인 수’였던 기초공제 금액을 ‘5,000만엔+1,000만엔×법정상속인 수’로 확대하고, 최고세율 인하와 과세구간의 수를 축소하였다(10~75%까지 14단계 세율구조에서 10~50%까지 6단계 세율 구조로 변경). 그러나 2007년 세제조사의 답신에서 상속세의 부담 수준을 적절히 높여 상속세의 자산 재분배 기능을 회복할 것을 권고하였다. 현재는 ‘3,000만엔 + 600만엔×법정상속인 수’로 기초공제를 축소하였고, 세율도 10~55%까지 8단계의 구조로 개정하였다.

연도별로 전체 세수와 국세 중 각 상속세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아래와 같다. 전체적으로 다른 OECD 주요국에 비해 상속세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2015년에는 국세 대비 비중이 3.5%였지만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2021년에는 4.13%를 차지한다. 총 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 내외이지만 2021년에는 2.5%로 상승하였다.

<표 42> 일본의 상속세 세수 및 비중(단위: 억 엔)

연도	총 조세 ¹	국세 세수	상속세		
			상속세액 ²	총 조세비중(%)	국세비중(%)
2015	1,635,330	562,854	19,684	1.203	3.5
2016	1,649,700	554,686	21,314	1.291	3.8
2017	1,718,050	587,875	22,920	1.334	3.9
2018	1,755,640	603,564	23,333	1.329	3.9

2019	1,753,800	584,415	23,005	1.311	3.9
2020	1,773,080	608,216	23,145	1.305	3.8
2021	1,098,830	670,379	27,702	2.521	4.13

¹총 조세는 국세, 지방세, 사회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음(자료는 OECD 통계)

²증여세액을 포함한 수치임(이 금액의 약 10%가 증여세액인 것으로 보임, 수치는 OECD 자료와 약간의 차이가 있음.)

※자료: 일본 국세청(Tax Statistics <https://www.nta.go.jp/english/publication/statistics/index.htm>)

2) 상속공제 내용

상속세 과세체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피상속인의 총 상속재산에서 채무, 장례비용, 기초공제를 차감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해당 과세표준을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 비율로 배분하여 상속인별로 상속세를 계산한다. 이렇게 가정한 세금(hypothetical tax)을 합산한 후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이후 가정된 세금을 각 상속인들이 실제 받은 상속분대로 배분한다.

<표 43> 일본의 상속세 과세체계

총 상속재산가액
(-) 비과세, 채무, 장례비용 등
(+) 상속개시일 3년 이내 증여재산가액
= 상속 재산가액
(-) 기초공제
= 과세표준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비율로 배분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함
× 세율(10 ~ 55%)
= 각 상속인의 임시 산출세액의 총합계
× 각 상속인이 취득한 상속재산가액 ÷ 총 과세대상 상속재산
= 각 상속인의 상속세액
(+) 20%의 할증세(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배우자, 부모, 자녀가 아닌 경우)
= 정산된 각 상속인의 상속세액
(-) 세액공제(인적세액공제, 기타)
(-) 기납부세액(증여세액공제 등)
= 각 상속인의 총 납부세액

※자료: 심충진, “상속세 과세체계와 인적공제에 대한 연구”, 세무와 회계연구 통권 17호(제8권 제 1호), 390쪽.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특정한 비영리 단체나 일본의 정부 기금에 대해 증여를 한 경우 그 재산은 상속세가 비과세된다. 법정상속인당 500만 엔의 생명보험금(상속재산으로 간주됨), 법정상속인당 500만엔의 퇴직금(상속재산으로 간주됨)은 비과세된다.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최대 330 제곱미터, 중소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400 제곱미터까지는 일정 부분(예를 들어 20%)만 상속세가 과세된다.⁵⁵⁾ 상속인이 피상속인 사망 3년 이내(2023년 세제 개혁으로 7년)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된다. 이때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을 공제한다.

기업승계의 경우 납부유예와 추징에 관하여 조세특별조치법에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인정승계회사⁵⁶⁾의 비상장주식등(의결권에 제한이 없는 것에 한정)을 보유하고 있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해 당해 인정승계법인의 비상장주식등을 취득하여 그 회사를 경영하는 경우 해당 경영승계 상속인 등의 사망일까지 그 납세를 유예한다(조세특별조치법 제70조의7의 2). 납세유예되는 주식의 한도는 당해 상속 개시 시에 인정승계회사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 또는 총액의 3분의 2에 달하는 부분까지이다. 경영승계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의 다음날부터 5월을 경과하는 날에 인정승계회사의 대표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상속개시 시에 의결권 수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인정승계회사의 경영을 확실히 승계한다고 인정되는 요건으로서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농업을 영위하고 있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에 의해 그 농업의 용도로 제공되고 있던 농지 및 방목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농업 상속인의 사망에 의한 상속 개시가 있던 것을 안 날의 다음날부터 6월을 경과하는 날까지 그 납세를 유예한다(조세특별조치법 제70조의7).

기초공제액은 3,000만엔에 상속이 한 명당 600만엔을 곱하여 합산한 금액이다. 1998년 이전에는 2,000만엔 + 400만엔×법정상속인 수였다가, 2012년에 5,000만엔 + 1,000만엔×법정상속인 수로 확대하였다.⁵⁷⁾ 그러나 2015년 1월 1일부터 현재와 같이 축소되었다.

$\text{기초공제액} = 3,000\text{만엔} + 600\text{만엔} \times \text{법정상속인 수}$
--

인적공제는 각자의 산출세액에서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각종 세액공제를 차감하는 세액공제 방식이다. 세액공제에는 배우자 공제, 미성년자 공제, 장애인 공제 등이 있다. 배우자가 상속 분할에 의하여 실제로 취득한 유산액과 과세가액의 합계액 중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상당액(그 금액이 1억 6,000만엔 이하인 경우에는 1억 6,000만엔) 중 적은 금액에 대응하는 세액 상당액이 배우자의 상속세액에서 공제된다. 즉, 배우자의 취득재산이 전 상속재산에서 점하는 비율이 그 법정상속분 이하이거나 취득재산 가액이 1억 6,000만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⁵⁸⁾ 법정상속인이 20세 미만이라면 20세가 될 때까지 남은 연수에 100,000엔을 곱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2015년 1월 1일 이전에는 60,000엔). 법정상속인이 장애인이라면 85세가 될 때까지 남은 연수에 100,000엔을 곱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2015년 1월 1일 이전에는 60,000엔). 중증 장애인이라면 곱하는 금액이 200,000엔으로 늘어난다(2015년 1월 1일 이전에는 120,000엔).

55) EY, 앞의 책, 231쪽.

56) 인정승계회사는 중소기업에 있어서 경영 승계의 원활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하는 중소기업자 중에 원활화법 인정을 받은 회사로, 상속 개시 시에 일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그 요건으로는 당해 회사의 상시 사용 종업원(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이란 재무부령에서 정한다)의 수가 한 명 이상일 것, 당해회사가 자산보유형 회사 또는 자산 운용형 회사 중 정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을 것, 풍속영업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해당회사의 특정관계회사가 외국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회사의 상시 사용 종업원 수가 5명 이상일 것 등이다.

57) 원종학, 앞의 보고서, 48쪽.

58) 원종학, 앞의 보고서, 58쪽.

최근 10년 이내에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의 상속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액을 조정하여 세액공제를 한다.

3) 상속공제 현황

2021년 과세현황에 따르면, 기초공제는 총 30백만엔에 법적상속인의 수에 의해 가산된 6백만엔을 더한 금액이다. 세액공제 중 배우자는 총 46,390명이고, 금액은 559,011백만엔이다. 미성년자는 총 1,896명이고, 금액은 845백만엔이다. 장애인에 대한 공제는 총 9,456명이고, 금액은 15,342백만엔이다. 전체 상속공제액은 상속재산액이 많을수록 늘어나고 있다.

<표 44> 일본의 상속재산 금액별 상속공제액(2021년)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재산액 (백만엔)	10 미만	30 미만	50 미만	100 미만	200 미만	300 미만	600 미만	600 이상
세율(%)	10	15	20	30	40	45	50	55
공제액(백만엔)	-	0.5	2.0	7.0	17.0	27.0	42.0	72.0

※자료: 일본 국세청, 제147회 국세청통계연보서,令和3년도판
(<https://www.nta.go.jp/english/publication/statistics/index.htm>)

2021년 과세표준 단계에 따른 법정상속인원별 피상속인의 수는 아래와 같다. 거의 모든 구간에서 법정상속인이 3명인 경우가 가장 많다. 3억엔을 초과하는 구간부터는 4명인 경우가 다른 구간보다 많아서 3명과 4명이 주를 이룬다. 1억엔에서 2억엔 구간에서는 상속인이 10명을 초과하는 피상속인의 수가 198명에 달한다. 이 구간에서 유산의 분할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45> 일본의 법정상속인원별 피상속인의 수(2021년)

	0명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10명 초과
5천만 엔이하	165	4,782	6,696	1,799	35	9	7	2	-	-	-	1
5천만 엔 초과	255	9,081	23,338	23,987	8,628	1,778	558	244	120	55	24	10
1억엔 초과	152	3,853	9,898	11,446	5,797	1,631	606	345	239	129	88	198
2억엔 초과	43	789	2,273	3,052	1,884	537	212	98	41	35	22	63
3억엔 초과	23	359	1,125	1,971	1,266	409	130	49	29	17	16	42
5억엔 초과	4	131	332	587	423	141	31	21	7	5	6	8

7억엔 초과	3	65	232	362	233	105	29	10	8	5	1	7
10억엔 초과	2	45	146	276	215	69	33	10	3	3	4	4
20억엔 초과	1	9	25	54	45	11	2	3	-	-	1	1
30억엔 초과	1	4	12	27	24	6	2	1	-	-	-	-
50억엔 초과	-	1	6	3	6	-	1	-	-	-	-	-
70억엔 초과	-	-	1	3	3	-	-	-	-	1	-	-
100억 엔초과	-	3	3	3	4	1	-	-	-	-	-	-
합계	649	19,122	44,087	43,570	18,563	4,697	1,611	783	447	250	162	334

※자료: 일본 국세청, 제147회 국세청통계연보서,令和3년도판

4) 세율

1987년 이전에는 최저 10%에서 최고 75%까지 14단계 세율 구조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2003년 이후에는 최저 10%에서 최고 50%까지 6단계의 세율 구조로 개정하였다. 현재는 최저 10%에서 최고 55%까지 8단계의 구조이다. 최고세율이 적용되던 구간도 인상되었다. 70%의 상속세 최고 세율 적용 구간이 1992년 5억엔 이상에서 10억엔 이상으로 인상되었으며, 1994년 20억엔 이상으로 인상되었다. 현재는 6억엔 초과 시 55%이다. 법정상속분 당 과세기준에 대한 가정된 세금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세율은 아래 표와 같다.

<표 46> 일본의 상속세 세율

각 법정상속인의 과세표준(엔)	세율(%)	공제금액(엔)
10,000,000 이하	10	-
10,000,000 초과 ~ 30,000,000 이하	15	500,000
30,000,000 초과 ~ 50,000,000 이하	20	2,000,000
50,000,000 초과 ~ 100,000,000 이하	30	7,000,000
100,000,000 초과 ~ 200,000,000 이하	40	17,000,000
200,000,000 초과 ~ 300,000,000 이하	45	27,000,000
300,000,000 초과 ~ 600,000,000 이하	50	42,000,000
600,000,000 초과	55	72,000,000

※자료: IBFD, Tax Research Platform(<https://research.ibfd.org>)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가 아닌 경우 추가로 20%의 세율이 부과된다. 피상속인의 손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로 입양된 경우에도 20%의 추가 과세를 받게 된다.⁵⁹⁾

일본 사회의 고령화로 인한 생전 증여를 유도하여 고령 세대의 부를 다음 세대로 이전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2003년에 상속 시 정산과세제도를 도입하였다. 2002년 6월 일본의 세제조사회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자본화의 지속적인 발전에 의하여 상속으로 인한 재산의 이전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노후세대에 대한 공적부담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높아져서 상속 시에 남겨지는 개인의 재산에 대해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필요하고, 고령화의 급격한 진행에 의하여 부모로부터 자녀에게로 재산의 이전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지연되고 있어서 자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방해할 우려 등을 표명하였다.⁶⁰⁾ 이에 따라 자산 이전이 보다 빠른 시기에 이루어지면 경제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정산과세제도를 도입하였다. 그 내용은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그 증여를 한 자의 추정상속인(그 증여를 한 자의 직계비속인 자 중 그해 1월 1일에 18세 이상인 자에 한함)이고 그 증여를 한 사람이 같은 날에 60세 이상인 경우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그 증여에 관계되는 재산에 대하여 상속 시 정산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즉, 생전에 증여받은 수증자가 증여 시 증여재산에 대하여 단일세율 20%로 증여세를 납부하고, 그 후 상속 시에 상속재산과 그 증여재산을 합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 상속세액에서 기납부한 증여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상속세법 제21조의9 이하).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증여세 및 상속세 과세현황을 분석해보면, 정산과세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⁶¹⁾

사. 벨기에

1) 상속세 과세 개요 및 세수 현황

상속인과 사인증여에 의한 수증인은 거주자이든 비거주자이든 상관없이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다(articles 1 and 2 of the Succession Duty Code and article 2.7.1.0.1 of the Flemish Tax Code). 상속세 납세의무는 피상속인의 사망 시에 발생한다. 피상속인 사망 시에 벨기에의 거주자라면 전 세계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만약 피상속인이 사망 시에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 EEA)⁶²⁾의 거주자라면 벨기에에 소재하는 고정자산(immovable property)에 대하여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다. 상속재산의 평가는 각 상속인의 상속분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공정시장가치(fair market value)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상장주식(quoted shares)

59) EY, 앞의 책, 228쪽.

60) 정지선, “상속시 정산과세제도의 합리적인 정착방안에 관한 연구”, 조세와 법 제2권 제1호, 2009. 6. 98쪽.

61) 4년간(2003년부터 2006년까지)의 과세 현황 추이를 살펴보면, 총 증여세 신고인원 평균 397,534명 가운데 상속시 정산과세제도를 이용하는 신고인원은 평균 81,759명으로 그 비율은 21% 정도이며, 재산취득가액은 총 재산취득가액 평균 2,256,525백만엔 가운데 상속 시 정산과세로 인하여 취득한 분이 평균 1,168,830백만엔으로 그 비율은 52%로 나타나고 있다(정지선, 위의 논문, 108쪽).

62) 유럽경제지역은 유럽연합과 유럽자유무역협정(EFTA) 회원국 간의 경제적 통합을 말한다. EEA에 속하는 국가들은 EU 회원국과 4개의 EFTA 회원국이 있다.

등과 같이 특별한 가치평가 방법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인적공제는 피상속인이 거주하던 지역에 따라 다르다.

각 지역은 가족 기업이나 회사의 상속에 대하여 특별한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왈론 지역에서는 가족 기업의 이전은 특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증여세와 상속세를 모두 0%로 한다.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3년간 기업이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EEA 안에 소재하고 있으며 기업의 지분이 유지되고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 지주회사가 영업활동을 하는 최소한 한 개 자회사의 지분을 30% 이상 직접 보유하고 있고, 자회사가 EEA 지역에 소재하고 있다면 가족 소유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⁶³⁾ 플레미시 지역과 브뤼셀 지역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3% 또는 7%의 세율 혜택을 준다.

총 세수에서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1.2% 내외이다.

<표 47> 벨기에의 상속세 비중(단위: 백만 유로)

연도	총 세수	상속세액	상속세의 비율(%)
2015	184,374	2,504	1.358
2016	186,794	2,361	1.263
2017	195,560	2,515	1.286
2018	202,227	2,677	1.322
2019	203,451	2,400	1.179
2020	195,051	2,411	1.236
2021	213,765	2,948	1.379

※자료: OECD 통계(<https://stats.oecd.org>)

아래에서는 각 지역별로 인적공제와 세율을 살펴본다.

1) 브뤼셀(Brussels) 지역

가) 인적공제

피상속인이 브뤼셀의 거주자라면 배우자와 법적 동거자(legal cohabitant), 피상속인의 직계존비속은 각각 15,000유로를 공제받을 수 있다. 21세 미만의 자녀는 21세까지 잔여 연수 동안 매년 2,500유로를 추가로 공제한다. 다른 상속인들은 상속액이 1,25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한 전액 면제된다.

나) 세율

배우자, 법적 동거자, 직계존비속의 세율은 아래와 같다 (article 48 of the Succession Duty Code).

63) EY, 앞의 책, 33쪽.

<표 48> 벨기에(브뤼셀 지역)의 세율

과세금액(유로)	세율(%)	전 단계 세율에 따른 상속세액(유로)
0.01-50,000	3	0
50,001-100,000	8	1,500
100,001-175,000	9	5,500
175,001-250,000	18	12,250
250,001-500,000	24	25,750
500,000 초과	30	85,750

※자료: IBFD, Tax Research Platform(<https://research.ibfd.org>)

형제자매는 세율이 20~65%까지, 삼촌과 사촌지간은 35~70%, 다른 경우는 40~80%로 다양하다. 형제자매에 대한 최저세율은 상속액 12,500유로까지 적용되고, 최고세율은 250,000유로를 초과하는 상속금액에 적용된다. 삼촌과 사촌지간, 기타 사람에 대한 최저세율은 50,000유로까지의 상속금액에 적용되고, 최고세율은 상속금액이 175,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적용된다. 배우자나 법적 동거자에 의해 가족 주택이 상속된다면 상속세를 전부 면제한다. 배우자나 법적 파트너가 아닌 직계존비속이나 다른 동거자가 상속한 경우에는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2) 왈룬(Walloon) 지역

가) 인적공제

피상속인이 왈룬 지역의 거주자라면 배우자와 법적 동거자, 직계존비속은 각각 12,500유로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125,000유로를 넘지 않으면 25,00유로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21세 미만의 자녀는 21세까지의 잔여연수 동안 매년 2,500유로를 추가로 공제한다. 다른 상속인들은 상속액이 62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한 전부 면제된다.

나) 세율

형제자매간에는 20~50%, 삼촌과 사촌지간은 25~70%, 기타의 경우에는 30~80%로 세율이 다양하다. 모든 그룹의 최저세율은 상속액이 12,500유로까지, 최고세율은 175,000유로를 초과할 때 적용된다. 배우자, 법적 동거자, 직계존비속에 대한 상속세 세율은 3~30%로 아래와 같다.

<표 49> 벨기에(왈룬 지역)의 세율

과세금액(유로)	세율(%)	전 단계 세율에 따른 상속세액(유로)
0.01-12,500	3	0
12,501-25,000	4	375
25,001-50,000	5	875
50,001-100,000	7	2,125
100,001-150,000	10	5,625

150,001-200,000	14	10,625
200,001-250,000	18	17,625
250,001-500,000	24	26,625
500,000 초과	30	86,625

※자료: IBFD, Tax Research Platform(<https://research.ibfd.org>)

3) 플레미시(Flemish) 지역

가) 인적공제

각 상속인의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 50,00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한 상속세가 면제된다. 상속인이 배우자나 법적 동거자인 경우 전액 면제되고, 이외의 경우는 최고 500유로까지 공제된다. 형제자매의 경우는 상속재산이 18,75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2,000유로가 공제되고, 상속재산이 18,750유로부터 75,000유로 사이라면 2,500유로가 공제된다. 배우자나 법적 동거자가 가족 주택을 상속받으면 상속세를 전액 면제한다.

나) 세율

배우자나 법적 동거자, 직계존비속은 고정자산과 유동자산 등 모든 재산의 상속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article 2.7.4.1.1 of the Flemish Tax Code) 세율은 아래 표와 같다.

<표 50> 벨기에(플레미시 지역)의 세율(배우자등)

과세금액(유로)	세율(%)
0.01 ~ 50,000	3
50,001 ~ 250,000	9
250,000 초과	27

※자료: IBFD, Tax Research Platform(<https://research.ibfd.org>)

형제자매와 기타의 사람은 25~55%의 세율이 적용된다. 최저세율은 상속재산이 35,000유로까지, 최고세율은 상속재산이 75,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적용된다.

아. 칠레

1) 상속세 과세개요 및 세수 현황

사망 시 상속에 의한 재산의 이전이나 생전 증여(vivos gifts) 재산에 대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누진세율로 과세한다. 2023년 1월부터 개인이 상속으로 취득하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집은 상속세가 면제된다(Law 21, 420). 만약 2010년 전에 취득하였다면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고정자산(immovable property)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Decree Law 2). 상속인은 각자가 취득하는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담한다. 칠레에 소재한 재산은 피상속인의 국적이나 거주지와 상관없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피상속인이 칠레인이라면 해외 소재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외국인인 피상속인이 칠레에 원천을 둔 재산을 취득한다면 해외

소재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전체 세수에서 상속세와 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0.1~0.5% 정도이다. 최근 들어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표 51> 칠레의 상속세 비중(단위: 백만 칠레페소)

연도	총 세수	상속세 및 증여세액	상속세 및 증여세의 비율(%)
2015	32,533,542	92,236	0.283
2016	34,129,982	100,490	0.294
2017	36,262,036	202,376	0.558
2018	40,314,703	125,649	0.311
2019	41,025,508	62,824	0.153
2020	38,817,226	155,433	0.400
2021	53,391,067	291,830	0.546

※자료: OECD 통계(<https://stats.oecd.org>)

2) 상속공제 내용

상속인의 인적공제는 세 그룹으로 분류하여 각각 금액이 다르다. 피상속인과 가까운 인적관계일수록 공제액이 크다.

<표 52> 칠레의 상속세 인적공제

상속인 분류	인적관계	공제금액(UTMs) ⁶⁴⁾
1그룹	배우자, 직계비속, 입양 자녀, 직계존속	50
2그룹	형제자매, 이복 형제자매, 조카, 삼촌, 고모, 이모, 사촌	5
3그룹	기타	없음

※자료: IBFD, Tax Research Platform(<https://research.ibfd.org>)

3) 세율

순자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부과되며 세율은 누진세 구조로 되어 있다. 피상속인과 인적관계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

<표 53> 칠레의 상속세율

과세금액(UTAs)	1그룹(%)	2그룹(%)	3그룹(%)
80 이하	1	1.2	1.4

64) UTM은 칠레에서 벌금 또는 행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적용하는 가상 화폐로 2021년 4월 기준 1UTM=51,798페소이다(Invest Chile, 산티아고무역관)

(https://www.kiep.go.kr/aif/businessDetail.es?brdctNo=315977&mid=a30400000000&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6&search_region=06010900&search_area=¤tPage=5&pageCnt=10)

80 초과 ~ 160 이하	2.5	3	3.5
160 초과 ~ 320 이하	5	6	7
320 초과 ~ 480 이하	7.5	9	10.5
480 초과 ~ 640 이하	10	12	14
640 초과 ~ 800 이하	15	18	21
800 초과 ~ 1,200 이하	20	24	28
1,200 초과	25	30	35

※자료: IBFD, Tax Research Platform(<https://research.ibfd.org>)

도시 또는 농촌에 소재한 부동산에 대해 매년 부동산세가 부과된다.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며 수입은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된다. 2020년 2월부터 고가의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누진세 구조의 부가세(surtax)가 신설되었다. 세율은 0.075~0.275% 까지이다. 이 세금은 특정 납세자가 소유한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된다. 2023. 1. 1.부터 36만 유로 이상인 부동산에 대한 세율은 이전에 비해 0.425%로 인상되었다. 상속세에도 부가세(surtax)가 과세되지만, 인적관계에 따라 혜택을 주고 있다.⁶⁵⁾

자. 핀란드

1) 상속세 개요 및 세수 현황

각 상속인은 자신이 받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담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취하고 있다(section 6 of the PerVL). 사망 시에 피상속인이 핀란드의 거주자라면 핀란드에 소재한 모든 자산, 자산의 50% 이상이 핀란드에 소재한 고정자산으로 구성되는 회사의 주식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과세표준은 사망 시에 상속재산의 시장가치에서 채무(주택 대출, 은행 채무, 조세)와 관련 비용(장례비, 유산 집행 비용)을 공제하여 산출한다. 상속재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 주택의 가구와 각종 가전제품의 가치를 4,000유로까지 공제한다. 피상속인이 사망 전 3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하고, 이미 납부한 증여세를 공제한다.

상속세는 전체 세수 중 0.5% 내외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0.6%대로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표 54> 핀란드의 상속세 비율(단위: 백만 유로)

연도	총 세수	상속세액	상속세의 비율(%)
2015	92,003	528	0.573
2016	95,115	437	0.459
2017	96,985	761	0.784

65) EY, 앞의 책, 78쪽.

2018	98,958	579	0.585
2019	101,439	612	0.603
2020	99,610	650	0.652
2021	108,070	670	0.619

※자료: OECD 통계(<https://stats.oecd.org>)

2) 상속공제 내용

생존 배우자에 대한 상속은 90,000유로가 공제된다(section 12 of the PerVL). 동거 파트너(cohabiting partner)라도 공통의 자녀가 있거나 이전에 결혼한 적이 있다면 생존한 동거 파트너도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18세 미만의 직계비속 중 피상속인과 가장 가까운 수익자는 60,000유로가 공제된다.

3) 세율

상속세율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인적 관계, 과세금액에 따라 다르다. 공제금액을 반영한 후 20,000유로 미만이라면 상속세가 면제된다. 인적관계가 배우자(동거 파트너 포함)와 가까운 친척일 때는 1그룹에 속하는 세율이 적용된다. 가까운 친척의 범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비속(입양자 포함),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다.

<표 55> 핀란드의 상속세율(1그룹)

과세금액(유로)	전 단계 세율에 다른 세액(유로)	초과금액에 대한 세율(%)
20,000 이상 ~ 40,000 미만	100	7
40,000 이상 ~ 60,000 미만	1,500	10
60,000 이상 ~ 200,000 미만	3,500	13
200,000 이상 ~ 1,000,000 미만	21,700	16
1,000,000 이상	149,700	19

※자료: IBFD, Tax Research Platform(<https://research.ibfd.org>)

1그룹에 속하지 않는 경우는 2그룹의 세율에 따라 과세한다.

<표 56> 핀란드의 상속세율(2그룹)

과세금액(유로)	전 단계 세율에 다른 세액(유로)	초과금액에 대한 세율(%)
20,000 이상 ~ 40,000	100	19
40,000 이상 ~ 60,000	3,900	25
60,000 이상 ~ 200,000	8,900	29
200,000 이상 ~ 1,000,000	49,500	31
1,000,000 이상 ~	297,500	33

※자료: IBFD, Tax Research Platform(<https://research.ibfd.org>)

차. 그리스

1) 상속세 개요 및 세수 현황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에 부과되지 않고 각 상속인이 받은 재산에 대해 부과된다 (article 1 of Law 2961/2001).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그리스 국적자이든 거주자이든 관계없이 그리스에 소재한 모든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의 상속에 대해 부과된다. 그리스 밖에 있는 유동자산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이 사망 시에 그리스 국적자 또는 거주인 때에만 상속세를 부담한다. 각 상속인이 받은 상속재산은 공정시장가치(fair market value)로 평가한다.

총 세수에서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0.2% 내외이다.

<표 57> 그리스의 상속세 비중(단위: 백만 유로)

연도	총 세수	상속세 및 증여세액	상속세 및 증여세의 비율(%)
2015	64,510	134	0.20
2016	67,797	115	0.169
2017	69,639	154	0.221
2018	71,863	135	0.187
2019	72,387	244	0.337
2020	64,248	169	0.263

※자료: OECD 통계(<https://stats.oecd.org>)

2) 상속공제 내용

피상속인의 채무, 장례비나 피상속인의 부양료 등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한다. 만약 수익자나 배우자 또는 독립하지 못한 자녀가 가족들이 주거에 필요한 주택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 사용권 또는 거주권을 갖고 있지 않다면, 생존 배우자나 자녀들이 상속받은 주택이나 토지 일부는 세금이 면제된다.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토지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이 없거나 주택이나 토지 일부가 3,000명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치한 경우에도 세금이 면제된다. 주택에 대한 공제는 미성년자나 미혼의 수익자마다 200,000유로까지 공제한다. 자녀 양육권을 가진 기혼자나 이혼자, 과부나 홀아비 그리고 미혼부모의 경우 최대 250,000유로까지 공제한다. 만약 상속인이 오직 한 채의 주택(전부 소유권)을 상속받은 경우 처음 두 자녀마다 25,000유로를 추가로 공제하고, 세 번째 이후의 각 자녀마다 30,000유로씩 추가로 공제한다. 토지 일부에 대한 공제는 미성년자나 미혼의 수익자마다 최대 50,000유로를 공제한다. 자녀 양육권을 가진 기혼자, 이혼자, 과부나 홀아비, 미혼부모마다 최대 100,000유로까지 공제한다. 상속인이 오직 토지 일부(전부 소유권)을 상속받은 경우 처음 두 자녀마다 10,000유로, 세 번째 이후의 각 자녀마다 15,000유로까지 추가로 공제한다.

이 외에도 피상속인의 개인적 권리에 대해 상속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조건 하에서 그리스 은행이나 외국은행의 공동 은행 계좌에 보유된 현금 예금, 그리스 또는 외국

국기를 달고 있는 톤수가 1,500 그로스 톤(gross ton)을 초과하는 선박을 보유한 해운 회사의 주식(선박 소유 회사에 지분을 갖고 있는 지주회사의 주식을 포함), 그리스나 외국 국기를 달고 있는 1,500 그로스 톤(gross ton)을 초과하는 선박, 그리스 국가가 상속받은 권리 등이다. 피상속인과 최소 5년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한 생존 배우자는 400,000유로까지 공제된다. 피상속인의 18세 미만의 자녀도 이와 같다.

3) 세율

세율은 피상속인과의 인적관계와 과세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상속인 그룹은 셋으로 구분한다(article 29(1) of Law 2961/2001). 1그룹은 배우자, 피상속인과 동거계약을 체결하고 최소 2년 이상 동거한 자, 자녀, 손자녀, 부모이다. 2그룹은 증손자녀, 조부모, 증조부모, 형제자매, 이복 남매(stepbrothers, stepsisters), 삼촌, 이모, 고모, 양육 부모(foster parents), 배우자의 가족들, 배우자가 이전 결혼으로 낳은 자녀이다. 3그룹은 이 외의 사람이다.

1그룹의 세율은 아래 표와 같다(article 29(2) of Law 2961/2001).

<표 58> 그리스의 상속세율(1그룹)

과세금액(유로)	세율(%)
150,000 이하	0
150,000	1
300,000	5
600,000 초과	10

※자료: IBFD, Tax Research Platform(<https://research.ibfd.org>)

2그룹의 세율은 아래 표와 같다.

<표 59> 그리스의 상속세율(2그룹)

과세금액(유로)	세율(%)
30,000 이하	0
70,000	5
200,000	10
300,000 초과	20

※자료: IBFD, Tax Research Platform(<https://research.ibfd.org>)

3그룹의 세율은 아래 표와 같다.

<표 60> 그리스의 상속세율(3그룹)

과세금액(유로)	세율(%)
6,000 이하	0
66,000	20
195,000	30
267,000 초과	40

※자료: IBFD, Tax Research Platform(<https://research.ibfd.org>)

상속인이 67% 이상의 장애가 있으면 위의 세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10%를 추가로 감액한다. 위의 상속세 세율은 지방세 3%와 고속도로 건설세 7%를 포함한다.

카. 헝가리

1) 상속세 과세개요 및 세수 현황

상속세는 유언, 유증 또는 법정 상속분, 사인증여에 의한 유산(사용권의 환매⁶⁶⁾ 포함)에 기초하여 이전된 재산에 대해 부과한다(section 8 of the LSD). 헝가리에 소재한 모든 종류의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한다. 헝가리 국적자나 헝가리에 살고 있는 헝가리 국적이 아닌 자(본국에서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도 헝가리 밖에 소재한 유동자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부담한다. 해외에 소재한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상속세는 상속재산을 취득한 개별 상속인들이 부담한다.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유산의 순가치(net value)이다. 총 세수에서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0.04% 내외로 아주 적다. 최근에는 이보다 더 낮아지고 있다.

<표 61> 헝가리의 상속세 비중(단위: 백만 포린트)

연도	총 세수	상속세액	상속세의 비율(%)
2015	13,519,622	6,230	0.046
2016	14,134,313	6,980	0.049
2017	14,852,785	8,164	0.549
2018	15,961,757	7,313	0.045
2019	17,308,702	9,758	0.056
2020	17,425,586	8,026	0.46
2021	18,789,742	7,255	0.038

※자료: OECD 통계(<https://stats.oecd.org>)

2) 상속공제 내용

유동자산(차량 제외)은 각 상속인별로 300,000 포린트(HUF)까지 공제된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면제된다. 농지나 그에 딸린 가치가 있는 권리가 상속된 경우에는 상속세의 50%만 과세한다(section 16 (6) of the LSD).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기부금 등은 상속세가 면제된다(section 17 of the LSD).

3) 세율

66) the redemption of usufructuary rights 재산소유자가 이전에 다른 사람에게 부여된 사용권을 다시 사들이는 것이 예가 될 수 있다.

상속세의 일반적인 세율은 18%이다. 주거용 부동산과 그에 딸린 가치가 있는 권리는 9%의 세율이 적용된다(section 12 of the LSD).

타. 아이슬란드

1) 상속세 개요 및 세수 현황

피상속인이 사망 시에 아이슬란드의 거주자였다면 상속인이 상속에 의해 취득한 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된다(article 1 of the EFSKL). 원칙적으로 상속은 소득세 목적상 소득세로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상속세가 법상 상속의 정의에 부합한다면 소득세가 아니라 상속세가 부과된다. 피상속인 사망 시에 아이슬란드 거주자였다면, 과세할 수 있는 상속재산은 아이슬란드 국내에 소재하든 국외에 소재하든, 고정자산이든 유동자산이든 불문한다. 상속세는 유산에 대해 피상속인에게 부과되지 않고 상속재산을 분배받은 각 상속인에게 부과된다.

재산의 가치는 원칙적으로 사망 시에 공정시장가치로 평가한다. 그러나 고정자산, 집행으로 매각된 유동자산, 가축은 특별한 평가 규정이 적용된다. 상속인이 받는 연금 저축액은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고 대신 소득세를 부과한다.

총 세수에서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0.3~0.4% 정도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0.8%까지 비중이 늘었다.

<표 62> 아이슬란드의 상속세 비중(단위: 백만 크로나)

연도	총 세수	상속세액	상속세의 비율(%)
2015	812,002	2,919	0.359
2016	1,263,204	3,719	0.294
2017	980,965	4,268	0.435
2018	1,036,846	4,703	0.453
2019	1,061,978	4,668	0.439
2020	1,061,089	9,059	0.853
2021	1,139,776	8,393	0.736

※자료: OECD 통계(<https://stats.oecd.org>)

2) 상속공제 내용

생존 배우자의 상속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면제한다. 동성 배우자나 유언장에 의해 동거가 명확하게 인정되는 이성 동거자도 상속세를 면제한다. 피상속인의 채무, 납세의무, 장례비용, 유산의 필요비용은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3) 세율

상속세 세율은 10%이다(article 2 of the EFSKL). 그러나 과세금액 5백만 크로나(ISK)까지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파. 아일랜드

1) 상속세 개요 및 세수 현황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유산을 취득하는 각 상속인은 각자가 취득한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capital acquisitions tax,CAT, sections 4 and 9, respectively, of theCATCA 2003). 상속인이 아일랜드 비거주자라도 피상속인이 아일랜드인이려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고, 피상속인이 아일랜드 거주자가 아니라면 아일랜드에 소재한 자산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상속인이 아일랜드 거주자라면 피상속인이 외국인이어도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상속재산은 공정시장가치로 평가한다. 상속세가 총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6% 내외이다.

<표 63> 아일랜드의 상속세 비중(단위: 백만 유로)

연도	총 세수	상속세액	상속세의 비율(%)
2015	60,898	365	0.599
2016	63,617	376	0.591
2017	67,075	417	0.621
2018	72,860	469	0.643
2019	77,962	467	0.599
2020	74,034	499	0.674
2021	89,773	576	0.641

※자료: OECD 통계(<https://stats.oecd.org>)

2) 상속공제 내용

상속에 따르는 채무와 책임은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 및 농업자산의 가치는 90%까지 공제한다. 단, 해당 자산을 6년간 보유하지 않으면 사후에 감면이 철회된다. 이 혜택은 상속인이 농업을 직접 경영하거나 직접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 장기간 임대하는 경우에 한한다. 기부금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모두 면제한다. 1년에 3,000유로까지의 소액 상속도 상속세가 면제된다. 신체나 정신적인 장애로 영구적으로 완전히 능력을 상실한 부양하는 친척(dependent relative)이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가 면제된다.

자녀에 대해서도 특별한 공제 혜택이 있다. 미성년 자녀를 보호, 양육, 교육하는데 지출한 금액은 피상속인의 금전적 상황을 고려할 때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때 상속세가 면제된다. 미성년자가 아니라도 18세 이상 25세 미만의 자녀가 대학이나 교육기관에서 전일제 교육을 받는 자녀,

나이와 상관없이 물리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영구적으로 능력을 상실한 자녀에 대해 지출한 금액도 동일하다.⁶⁷⁾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인적관계에 따라 공제금액이 다르다(Schedule 2 of the CATCA 2003). 배우자나 파트너(civil partner)의 상속세는 전액 면제한다(sections 69-88 of the CATCA 2003).

<표 64> 아일랜드의 인적공제

그룹	인적관계	공제금액(유로)
1	자녀(입양자녀, 파트너의 자녀 포함), 양육 아동(foster child) ⁶⁸⁾ , 부모, 사망한 자녀의 미성년 자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	335,000
2	직계존비속(1그룹 제외), 형제자매, 조카	32,500
3	기타	16,250

※자료: IBFD, Tax Research Platform(<https://research.ibfd.org>)

3) 세율

세율은 각 그룹에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33%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Schedule 2 of the CATCA 2003) (see section 5.3.).

하. 이탈리아

1) 상속세 과세개요 및 세수 현황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한다(article 1 of DLgs 346/1990). 피상속인이 사망 시에 이탈리아 거주자면 전 세계 재산에 대해 과세하고, 비거주자라면 이탈리아 소재 재산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과세표준은 일반적으로 각 상속인이 취득하는 상속재산의 시장가치이지만, 재산의 종류에 따라 평가가 다양하다.

총 세수에서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0.1% 내외이다.

<표 65> 이탈리아의 상속세 비중(단위: 백만 유로)

연도	총 세수	상속세액	상속세의 비율(%)
2015	711,114	674	0.094
2016	716,326	736	0.102
2017	727,840	815	0.111
2018	739,218	820	0.112
2019	759,445	798	0.105

67) EY, 앞의 책, 207쪽.

68) 일반적으로 유기, 학대, 친부모가 아이를 돌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양육하다가 다른 가족에 의해 입양될 수 있다. '입양 전 아동'을 의미한다.

2020	706,743	396	0.056
2021	768,561	862	0.112

※자료: OECD 통계(<https://stats.oecd.org>)

2) 상속공제 및 세율

피상속인의 채무, 장례비, 의료비는 공식적으로 날짜가 표기된 문서로 입증되면 공제받을 수 있다(article 20 of DLgs 346/1990). 특정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가족 내에서 영업 중인 자산을 신탁 기부함으로써 이전하는 것은 상속세가 면제된다.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인적관계에 따라 공제금액과 세율이 다르다(article 4 of DLgs 346/1990).

<표 66> 이탈리아의 상속세 인적공제와 세율

인적관계	공제금액과 세율
배우자, 직계존비속	각 상속분 중 1백만 유로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4%
형제자매	각 상속분 중 100,000만 유로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6%
4세대까지의 친족 ⁶⁹⁾ , 3세대까지 인척	6% (공제금액 없음)
기타의 사람 또는 단체	8% (공제금액 없음)
해당 이탈리아 법률에서 정의한 중대한 장애를 가진 사람	각 상속분 중 1.5백만 유로를 공제함

※자료: IBFD, Tax Research Platform(<https://research.ibfd.org>)

부동산에 대해서는 상속세와 증여세 외에 주택저당세(mortgage tax)와 일종의 등록세(cadastral tax)가 200유로부터 부동산 가치의 3%까지 추가로 과세된다.

거. 리투아니아

1) 상속세 개요 및 세수 현황

상속인이 취득한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된다(articles 3 and 4 of the PTMI). 거주자는 모든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담하고, 비거주자는 리투아니아에 소재한 고정자산과 법적으로 등록된 유동자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부담한다. 상속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한다.

총 세수에서 상속세의 비중은 0.01% 정도에 불과하다. 최근 자료는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 확인되지 않는다.

69) 1세대(first degree): 자기 자신 (본인)

2세대(second degree): 부모와 형제자매

3세대(third degree): 조부모와 조카 (형제자매의 자녀)

4세대(fourth degree): 외조부모와 증조부모, 외숙모와 증숙모, 증조형제자매, 증조조카 (부모의 부모, 형제자매의 자녀들의 자녀들)

<표 67> 리투아니아의 상속세 비중(단위: 백만 유로)

연도	총 세수	상속세액	상속세의 비율(%)
2015	10,826,067	1,429	0.013
2016	11,547,375	1,469	0.012
2017	12,538,391	1,670	0.013

※자료: OECD 통계(<https://stats.oecd.org>)

2) 상속공제 내용

배우자에 대한 상속은 상속세가 면제된다. 자녀, 입양자녀, 부모, 양육 부모(foster parents), 피후견인, 후견인, 조부모, 손자녀, 형제, 자매에 대한 상속도 상속세가 면제된다. 3,00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소액 상속도 상속세가 면제된다.

3) 세율

상속재산은 공정시장가치의 70%만 과세한다. 150,000유로까지의 상속재산에 대한 세율은 5%이다. 그러나 150,000유로를 초과하면 전체에 대해 10%의 세율이 적용된다(article 6 of the PTMP).

너. 룩셈부르크

1) 상속세 개요 및 세수 현황

룩셈부르크의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에 상속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룩셈부르크에 거주하거나 중요한 이해관계의 중심을 두고 있다면 룩셈부르크의 거주자로 인정된다. 각 상속인이 받은 몫에서 해당 몫에 속하는 부채를 공제한 순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한다.

총 세수에서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0.3~0.4%이다.

<표 68> 룩셈부르크의 상속세 비중(단위: 백만 유로)

연도	총 세수	상속세액	상속세의 비율(%)
2015	18,830	74	0.392
2016	19,934	86	0.431
2017	21,321	111	0.520
2018	23,683	91	0.384
2019	24,696	114	0.461
2020	24,697	84	0.340
2021	27,893	118	0.423

※자료: OECD 통계(<https://stats.oecd.org>)

2) 상속공제 내용

순 상속재산액이 1,250유로 미만이면 상속세를 면제한다.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은 법정상속분을 넘지 않는다면 상속세를 면제한다. 배우자나 파트너 사이의 상속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면제한다. 피상속인의 자녀들에 의해 생존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연금도 상속세가 면제된다. 상속세 목적상 자녀가 없거나 공통된 후손이 없는 경우에 생존 배우자에게 이전되는 자산은 38,000유로까지 면제된다.

3) 세율

세율은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인적관계에 따라 다르다.

<표 69> 룩셈부르크의 상속세율

인적관계	법정상속분에 대한 세율 (%)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세율(%)
직계존비속	0	2.5 or 5 ¹
배우자 또는 3년 이상 등록된 파트너	0	0
형제자매	6	15
삼촌, 이모, 고모, 조카, 입양 부모와 입양 자녀 사이	9	15
종조부(great-uncles), 대고모(great-aunts), 조카의 자녀들, 입양부모와 입양자녀의 직계비속 사이	10	15
기타	15	15

¹직계존비속이 상속분(예를 들어 유언서에 따른 상속분)을 초과하여 받는 경우 2.5%의 세율이 부과된다. 초과분에 대해서는 5%의 세율로 과세한다.

※자료: IBFD, Tax Research Platform(<https://research.ibfd.org>)

각 상속인의 상속재산이 10,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세율이 10분의 1씩 증가한다. 이 계수를 반영하면 최고세율은 48%까지 올라간다. $\{15\% + (22/10 \times 15\%)\}$ (상속재산이 1,750,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표 70> 룩셈부르크의 상속세 계수

상속분의 순 가치(유로)		증가 세율
초과	이하	
10,000	20,000	1/10
20,000	30,000	2/10
30,000	40,000	3/10
40,000	50,000	4/10
50,000	75,000	5/10
75,000	100,000	6/10
100,000	150,000	7/10
150,000	200,000	8/10
200,000	250,000	9/10
250,000	380,000	12/10
380,000	500,000	13/10
500,000	620,000	14/10

620,000	750,000	15/10
750,000	870,000	16/10
870,000	1,000,000	17/10
1,000,000	1,250,000	18/10
1,250,000	1,500,000	19/10
1,500,000	1,750,000	20/10
1,750,000	-	22/10

※자료: IBFD, Tax Research Platform(<https://research.ibfd.org>)

더. 네덜란드

1) 상속세 과세개요 및 세수 현황

네덜란드 거주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취득한 각 상속인은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네덜란드 국적자가 다른 나라에 거주하더라도 네덜란드를 출국한 후 10년 동안은 상속세 목적상 거주자로 간주한다.⁷⁰⁾ 과세표준은 전 세계 모든 재산의 공정시장가치에서 채무를 공제한 금액이다(article 21(1) of theSW).

총 세수에서 상속세의 비중은 0.6% 정도이다.

<표 71> 네덜란드의 상속세 비중(단위: 백만 유로)

연도	총 세수	상속세액	상속세의 비율(%)
2015	255,348	1,614	0.632
2016	272,038	1,845	0.678
2017	285,671	1,841	0.644
2018	300,298	1,731	0.576
2019	319,236	1,777	0.556
2020	318,601	2,081	0.653
2021	339,959	2,496	0.734

※자료: OECD 통계(<https://stats.oecd.org>)

2) 상속공제 내용

상속인에 대한 인적공제는 피상속인과의 인적관계에 따라 다르다(article 32 of theSW).

<표 72> 네덜란드의 인적공제

인적관계	공제금액(유로)
배우자 또는 파트너 ¹	723,526
자녀	22,918
질병 또는 장애가 있는 자녀 ²	68,740
부모	54,270

70)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JEU)는 이 규정이 유럽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EY, 앞의 책, 288).

이외의 경우	2,418
--------	-------

¹혼인하지 않고 최소 5년간 동거한 파트너와 공증된 동거계약(cohabitation contact)을 체결한 파트너를 포함한다. 연금을 받을 권리는 배우자와 파트너의 공제액을 감소시킬 수 있다.

²피상속인이 계속 부양하고 있어야 한다.

※자료: IBFD, Tax Research Platform(<https://research.ibfd.org>)

3) 세율

상속세율은 피상속인과의 인적관계, 과세금액에 따라 다르다. 2023년 세율은 아래와 같다(article 24 of theSW). 1그룹은 배우자, 파트너, 직계존비속이다. 2그룹은 2세대(second degree) 이상의 친족이다. 3그룹은 1그룹과 2그룹 이외의 자들이다.

〈표 73〉 네덜란드의 상속세율

과세금액(유로)	세율(%)		
	1그룹	2그룹	3그룹
138,642 이하	10	18	30
138,642 초과	20	36	40

※자료: IBFD, Tax Research Platform(<https://research.ibfd.org>)

러. 폴란드

1) 상속세 과세개요 및 세수 현황

폴란드에 소재한 고정자산이나 유동자산(고정자산이나 유동자산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권리 포함)을 상속받은 개인은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article 1 of theUPSiD). 폴란드 국적자나 폴란드 거주자는 해외에 있는 유사한 재산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부담한다.

각 상속인이 취득한 모든 재산에 대하여 순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과세한다(article 7 of theUPSiD). 그러나 아파트와 주택에 대해서 상속인들에게 더 유리한 방향으로 가치평가를 한다. 피상속인의 단체 연금, 공개 연금(open pension) 및 사적 연금 기금에서 누적된 상속재산, 창작자의 권리, 노하우(know-how) 권리, 상표권과 그로 인한 청구권은 상속세를 비과세한다. 고미술품과 나열된 예술 작품은 특정 조건하에서 비과세된다. 피상속인이 창작한 미술품과 예술적 또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수기 문서(manuscripts) 등도 비과세한다.

총 세수에서 상속세와 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0.04% 정도로 미미하다.

〈표 74〉 폴란드의 상속세 및 증여세 비중(단위: 백만 즈워티PLN)

연도	총 세수	상속 및 증여세액	상속 및 증여세의 비율(%)
2015	586,263	246	0.041
2016	624,225	279	0.044
2017	681,456	295	0.043

2018	748,375	299	0.039
2019	808,079	325	0.040
2020	834,476	313	0.037
2021	967,609	422	0.043

※자료: OECD 통계(<https://stats.oecd.org>)

2) 상속공제 내용

상속인은 피상속인과의 인적관계에 따라 세 그룹으로 분류하고 각 그룹에 따라 공제 혜택이 다르다. 1그룹은 배우자, 자녀(입양 자녀와 의붓자녀 포함), 자녀의 배우자, 부모, 의붓부모,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이다. 2그룹은 조카, 형제자매의 배우자이다. 3그룹은 그 이외의 자들이다. 1그룹에 속하는 상속인 중 자녀의 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모를 제외한 상속인이 6개월 이내에 과세당국에 상속받은 금액을 신고하면 상속세가 면제된다. 1그룹과 2그룹에 있는 상속인이 취득한 가구, 의류 등은 상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1그룹과 2그룹의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고정자산은 만약 그들이 법에서 정한 방법대로 유지 관리한다면 상속세가 면제된다. 1그룹의 상속인들이 공동소유가 종료되어 취득한 고정자산과 유동자산도 상속세가 면제된다. 일정한 조건 하에서 농장과 농부들이 받은 농업용 차량과 기계도 면제된다. 상속인이 폴란드나 EEA 국가, 스위스의 국적자나 거주자일 때 면제 규정이 적용된다. 1그룹에 속하는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6개월 이내에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와 2그룹 및 3그룹에 속하는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특정 조건에 따라 주택의 110㎡에 해당하는 부분의 가치만큼 상속세가 면제된다.

각 그룹에 따라 상속인의 인적공제 금액이 다르다(article 9 of theUPSiD).

<표 75> 폴란드의 인적공제

인적관계	공제금액(단위: 즈워티)
1그룹	10,434 (2022년 10월 13일 전까지 9,637)
2그룹	7,878 (2022년 10월 13일 전까지 7,276)
3그룹	5,308 (2022년 10월 13일 전까지 4,902)

※자료: IBFD, Tax Research Platform(<https://research.ibfd.org>)

3) 세율

상속세 세율은 상속인이 어느 인적그룹에 속하는지와 상속받은 재산의 가치에 따라 각각 다른 누진세율이 적용된다(article 15 of theUPSiD).

<표 76> 폴란드의 상속세율(1그룹)

과세소득(PLN)	전 단계 공제 금액(즈워티)	초과 세율(%)
10,434 이하	0	0
10,435 초과 ~ 11,128 이하	0	3
11,129 초과 ~ 22,256 이하	333.90	5

22,256 초과	890.30	7
-----------	--------	---

※자료: IBFD, Tax Research Platform(<https://research.ibfd.org>)

<표 77> 폴란드의 상속세율(2그룹)

과세소득(PLN)	전 단계 공제 금액(즈워티)	초과 세율(%)
7,878 이하	0	0
7,879 초과 ~ 11,128 이하	0	7
11,129 초과 ~ 22,256 이하	779	9
22,256 초과	1,780.60	12

※자료: IBFD, Tax Research Platform(<https://research.ibfd.org>)

<표 78> 폴란드의 상속세율(3그룹)

과세소득(PLN)	전 단계 공제 금액(즈워티)	초과 세율(%)
5,308 이하	0	0
5,309 초과 ~ 11,128 이하	0	12
11,129 초과 ~ 22,256 이하	1,335.40	16
22,256 초과	3,115.90	20

※자료: IBFD, Tax Research Platform(<https://research.ibfd.org>)

머. 슬로베니아

1) 상속세 개요 및 세수 현황

슬로베니아의 피상속인으로부터 5,000유로 이상의 상속을 받는 개인과 법적단체는 거주자이든 비거주자이든 상관없이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article 2 of the ZDDD).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금액에 상관없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총 세수에서 상속 및 증여세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0.05% 정도로 미미하다.

<표 79> 슬로베니아의 상속세 및 증여세 비중(단위: 백만 유로)

연도	총 세수	상속 및 증여세액	상속 및 증여세의 비율(%)
2015	14,498	8	0.055
2016	15,122	8	0.052
2017	15,945	11	0.068
2018	17,086	10	0.058
2019	17,981	16	0.088
2020	17,508	10	0.057
2021	19,545	11	0.056

※자료: OECD 통계(<https://stats.oecd.org>)

2) 상속공제 내용

배우자(파트너 포함)와 자녀(입양 자녀, 자녀의 배우자, 피상속인의 의붓자녀, 피상속인과 등록된 동성 파트너와 함께 산 자녀 포함)는 상속세가 면제된다.⁷¹⁾

3) 세율

세율은 인적관계와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 구조로 되어 있다(article 8 of the ZDDD). 1그룹은 부모, 형제자매, 그들의 자손들, 2그룹은 조부모, 3그룹은 그 이외의 자들이다.

<표 80> 슬로베니아의 상속세 세율

과세표준(유로)	세율(%)		
	1그룹	2그룹	3그룹
10,000 이하	5	8	12
10,000.01 ~ 50,000	6	9	16
50,000.01 ~ 100,000	7	10	20
100,000.01 ~ 200,000	8	11	25
200,000.01 ~ 300,000	10	13	30
300,000.01 ~ 400,000	12	15	35
400,000 초과	14	17	39

※자료: IBFD, Tax Research Platform(<https://research.ibfd.org>)

버. 스페인

1) 상속세 개요 및 세수 현황

중앙정부가 자치 지역을 대신하여 피상속인의 사망 시에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다. 법인에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과세하고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article 3 of the LISD). 상속인이 스페인의 거주자이면 전 세계의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고, 비거주자라면 스페인에 소재한 재산과 스페인 보험회사와 생명 보험계약에 따라 수령한 보험금 등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납부할 책임이 있다. 상속재산은 공정시장가치로 평가한다. 피상속인의 주택 가구와 개인 소지품의 가치는 상속인들에게 배분될 재산의 순가치의 3%로 간주한다. 상속인들에게 배분될 상속재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 일정한 비용(예를 들어, 정확하게 문서로 확인되는 채무, 직접 재산에 부과되어 그 가치나 자본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부담금 및 제한물권(encumbrances)⁷²⁾만 공제할 수 있다.

총 세수에서 상속 및 증여세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0.6% 정도이다.

71) EY, 앞의 책, 372쪽.

72) Encumbrances는 부동산에 대한 제약이나 권리의 제한을 의미한다. 이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제한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권리나 부담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주택 담보 대출이나 임대차 계약, 저당권 등을 들 수 있다.

<표 81> 스페인의 상속세 및 증여세 비중(단위: 백만 유로)

연도	총 세수	상속 및 증여세액	상속 및 증여세의 비율(%)
2015	364,683	2,790	0.765
2016	374,222	2,690	0.718
2017	393,529	2,710	0.688
2018	417,076	2,686	0.644
2019	431,736	2,513	0.582
2020	411,973	2,494	0.605
2021	462,143	3,530	0.763

※자료: OECD 통계(<https://stats.oecd.org>)

2) 상속공제 내용

인적공제는 네 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여 공제액을 적용한다. 이는 해당 지역이 자체적으로 인적 공제 제도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article 20.2.a of theLISD). 1그룹은 피상속인의 21세 미만인 직계비속과 법적으로 입양된 자손들이다. 상속인이 13세 미만이면 각 상속인마다 최고 47,858.59유로가 공제된다. 21세 미만이라면 15,956.87유로가 공제되고, 추가로 21세가 될 때까지의 잔여연수에 3,990.72유로를 곱한 금액을 공제한다. 2그룹은 피상속인의 21세 이상인 직계존비속이나 법적으로 입양된 자손, 배우자, 직계존속이나 법적으로 입양된 부모나 조상들이다. 15,956.87유로를 공제한다. 3그룹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삼촌, 이모, 고모, 조카, 4세대까지 결혼에 의해 형성된 후손과 부모, 조상들이다. 공제액은 7,993.46유로이다. 4그룹은 이외의 사람들로 인적공제 금액이 없다.

상속인 중 장애인은 장애 정도에 따라서 47,858.59유로에서 150,253.03유로까지 추가로 공제한다. 스페인의 사회보장 규정에 따라 장애 판정을 받아야 한다. 가까운 친척이 주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취득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치의 95%를 공제한다. 하지만 최대 122,606유로가 한도 금액이다. 생명보험으로 받는 보험금은 수익자가 보험료를 지급한 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인 경우 최대 9,195유로를 한도로 하여 10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⁷³⁾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배우자나 자녀로 가족기업 공제요건과 피상속인의 항구적 거주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가족 소유 기업의 적격 주식은 해당 주식 가치의 95%까지 공제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거주지에 따라 각 상속인별로 122,606.47유로의 공제한도가 적용될 수 있다. 공제혜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익자가 10년간 해당 주식을 양도하지 않아야 한다.

3) 세율

73) EY, 앞의 책, 398쪽.

세율은 원칙적으로 스페인의 자치 지역이 특정 한도 안에서 스스로 결정할 권한이 있다. 자치 지역이 독자적으로 세율을 정하고 있지 않다면, 아래 표와 같은 누진세율이 적용된다(article 21.2 of theLISD).

<표 82> 스페인의 상속세율

과세금액(유로)	전 단계 공제금액(유로)	초과 세율(%)
7,993.46 이하	0	7.65
7,993.47 ~ 15,980.91	611.50	8.50
15,980.92 ~ 23,968.36	1,290.43	9.35
23,968.37 ~ 31,955.81	2,037.26	10.20
31,955.82 ~ 39,943.26	2,851.98	11.05
39,943.27 ~ 47,930.72	3,734.59	11.90
47,930.73 ~ 55,918.17	4,685.10	12.75
55,918.18 ~ 63,905.62	5,703.50	13.60
63,905.63 ~ 71,893.07	6,789.79	14.45
71,893.08 ~ 79,880.52	7,943.98	15.30
79,880.53 ~ 119,757.67	9,166.06	16.15
119,757.68 ~ 159,634.83	15,606.22	18.70
159,634.84 ~ 239,389.13	23,063.25	21.25
239,389.14 ~ 398,777.54	40,011.04	25.50
398,777.55 ~ 797,555.08	80,655.08	29.75
797,555.08 초과	199,291.40	34.00

※자료: IBFD, Tax Research Platform(<https://research.ibfd.org>)

상속인의 최종 세부담은 기본세액에 추가세액(fixed surcharges)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추가세액은 고정비율로 해당 상속을 받기 전에 상속인의 순자산과 피상속인과의 인적관계를 기준으로 적용한 금액이다(article 22.2 of theLISD). 계수는 아래 표와 같다. 다만, 자치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최고세율은 81.60%에 이른다(최고세율 34% × 최고 계수 2.4 = 81.60%).

<표 83> 스페인의 상속세 계수

상속인의 상속 전 순자산(유로)	인적관계에 따른 계수		
	1그룹과 2그룹	3그룹	4그룹
402,678.11 이하	1.0000	1.5882	2.0000
402,678.12 ~ 2,007,380.43	1.0500	1.6676	2.1000
2,007,380.44 ~ 4,020,770.98	1.1000	1.7471	2.2000
4,020,770.98 초과	1.2000	1.9059	2.4000

※자료: IBFD, Tax Research Platform(<https://research.ibfd.org>)

서. 터키

1) 상속세 개요 및 세수 현황

일반적으로 상속이나 증여에 의한 재산의 이전에 대하여 상속세와 증여세가 부과된다. 터키에

소재한 재산이나 터키에 속하는 재산을 받은 개인이나 법적 실체는 납세의무가 있다(article 5 of theVIVK). 터키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 터키 밖에 소재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나 증여자가 터키 국적자여도 납세의무가 없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의 재산 가치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한다.

총 세수에서 상속 및 증여세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0.1% 정도이며,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표 84> 터키의 상속세 및 증여세 비중(단위: 백만 리라)

연도	총 세수	상속 및 증여세액	상속 및 증여세의 비율(%)
2015	586,722	435	0.074
2016	660,007	619	0.093
2017	773,406	718	0.092
2018	901,485	921	0.102
2019	997,551	1,104	0.110
2020	1,204,629	1,298	0.107
2021	1,654,564	2,255	0.136

※자료: OECD 통계(<https://stats.oecd.org>)

2) 상속공제 내용

상속의 경우 각 상속인이 받는 1,015,747 리라(TRY)까지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자손이 없다면 생존 배우자는 2,032,742 리라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증여의 경우에는 23,387 리라까지 공제된다. 2023. 2. 6.부터 2023. 7. 31.까지 사망한 직원의 배우자와 자녀, 부모에 대한 고용주의 지원금과 피상속인이 지진으로 희생되어 상속인들이 받은 물품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전부 면제된다.

3) 세율

상속세의 세율은 누진 구조이다. 과세표준과 인적관계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article 16 of theVIVK). 입양된 자녀를 제외한 수증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세율이 50% 감면된다.

<표 85> 터키의 상속세율

과세표준(리라)		상속 세율(%)	증여 세율(%)
1단계	1,100,000 이하	1	10
2단계	2,600,000	3	15
3단계	5,500,000	5	20
4단계	10,900,000	7	25
5단계	20,100,000 초과	10	30

※자료: IBFD, Tax Research Platform(<https://research.ibfd.org>)

어. 포르투갈

과거에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있었지만 세제 개혁으로 2004. 1. 1.부터 상속세와 증여세가 폐지되었다. 대신 상속과 증여를 포함하여 다양한 거래에 대해 인지세(stamp duty)가 부과된다(article 1 of the CIS).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대한 재산의 이전에는 인지세가 면제된다. 인지세는 속지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따라서 포르투갈에 소재하거나 그렇게 추정되는 재산이 상속 등에 의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과세한다.

상속에 부과되는 인지세는 10%의 고정세율이다. 상속인에 대한 인적공제는 없다.

저. 스위스

스위스는 26개 주(cantons)로 구성된 연방이다. 모든 경우에 주는 연방헌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자치권과 주권을 갖는다. 과세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주는 자체적으로 헌법을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특정 자율권을 부여할 수 있다. 스위스는 연방 차원에서 상속세와 증여세가 없다. 보(Vaud)와 그라우뷘덴(Graubünden) 주는 지방자치단체와 과세권을 공유하고 있다. 슈비츠(Schwyz)와 오브발덴(Obwalden) 주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없다. 루체른(Lucerne) 주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증여자가 사망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경우에는 해당 증여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한다. 대부분 주에서는 상속인이 받은 상속분에 대해 상속세를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졸로투른(Solothurn) 주는 피상속인의 순 상속재산에 대한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다.⁷⁴⁾ 대부분 주에서 취하고 있는 유산취득세의 세율은 상속인이 취득한 순액과 피상속인과의 인적관계에 따라 다르다. 인적관계가 더 가까울수록 적용되는 세율이 낮아진다.

1) 아루가우(Aargau)

배우자와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은 상속세를 면제한다. 채무는 공제 가능하다. 세율은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인적관계 및 과세금액에 따라 다르다.

부모와 의붓부모(stepparents), 양육 부모(foster parents), 최소 5년간 동거한 사람은 4~9%의 세율이 적용된다. 형제자매와 조부모는 6~23%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외에는 12~32%의 세율이 적용된다. 적용되는 세율을 결정할 때 받은 금액을 5년간 합산한다.

2) 아펜젤-아우서로덴(Appenzell-Ausserrhoden)

배우자나 직계비속(의붓자녀와 양육 자녀 포함), 부모에 대한 상속, 2,000 스위스 프랑(CHF)까

74) EY, 앞의 책, 413쪽.

지 상속세가 면제된다. 최소 5년 이상 동거한 파트너에게는 10,000 스위스 프랑을 공제한다. 기타의 경우는 5,000 스위스 프랑을 공제한다. 세율은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인적관계에 따라 다르다.

<표 86> 스위스(아펜젤-아우서로덴 주)의 상속세율

인적관계	세율(%)
동거 파트너	12
형제자매, 의붓부모,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의 배우자, 조부모	22
이외의 사람들	32

※자료: IBFD, Tax Research Platform(<https://research.ibfd.org>)

3) 아펜젤-이너로덴(Appenzell-Innerrhoden)

배우자는 상속세가 면제된다. 직계비속, 입양 자녀, 양육 기간이 2년 이상인 양육 자녀(foster-child)는 300,000 스위스 프랑이 공제된다. 부모, 입양 부모는 20,000 스위스 프랑이 공제된다. 기타의 경우는 5,000 스위스 프랑이 공제된다. 세율은 인적관계에 따라 다르다.

<표 87> 스위스(아펜젤-이너로덴 주)의 상속세율

인적관계	세율(%)
직계비속, 입양자녀, 의붓자녀	1
부모, 조부모	4
조카	9
삼촌, 고모, 이모, 양육 자녀, 의붓부모	12
기타	20

※자료: IBFD, Tax Research Platform(<https://research.ibfd.org>)

4) 바젤란트(Basel-Land)

배우자 간 상속이나 직계비속, 의붓자녀, 25세가 되기 전까지 한 집에 10년 이상 함께 산 양육 자녀는 상속세가 면제된다. 상속세의 인적공제 금액과 세율은 인적 관계에 따라 다르다.

<표 88> 스위스(바젤란트 주)의 공제금액 및 상속세율

인적관계	공제금액 (스위스 프랑)	세율(%)
의붓자녀, 양육 자녀	50,000	7.5
형제자매, 조부모, 증조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의 배우자, 의붓부모, 계조부모, 피상속인과 5년간 같은 집에서 거주한 개인	30,000	15
삼촌, 이모, 고모, 조카, 조부모의 형제들, 증조 조카(grand-nieces and grand-nephews)	20,000	22.5
기타	10,000	30

※자료: IBFD, Tax Research Platform(<https://research.ibfd.org>)

5) 바젤슈타트(Basel-Stadt)

배우자 간 상속이나 직계비속, 의붓자녀, 양육 자녀(적어도 2년 이상 양육)는 상속세가 면제된

다. 일반적으로 10,000 스위스 프랑까지 상속금액에 대해 상속세가 면제된다. 기부금 중 40,000 스위스 프랑까지 상속세가 면제된다. 납세의무자는 2,000 스위스 프랑을 상속 공제받을 수 있다. 세율은 인적 관계에 따라 다르다.

<표 89> 스위스(바젤슈타트 주)의 상속세율

인적관계	세율(%)
부모, 입양 부모	4
조부모, 형제자매, 이복 형제자매, 자녀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의붓부모, 동거하는 사실혼 부부(unmarried couples), 최소 5년간 같은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사람	6
조카	8
삼촌, 이모, 고모, 형제자매의 배우자들	10
법에 의해 상속인으로 결정된 다른 친척들	14
기타	18

※자료: IBFD, Tax Research Platform(<https://research.ibfd.org>)

이렇게 계산된 금액은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표 90> 스위스(바젤슈타트 주)의 상속세 초과 세율

과세금액(스위스 프랑)	초과 세율(%)
100,000 이하	25
200,000 이하	50
500,000 이하	75
1,000,000 이하	100
2,000,000 이하	125
3,000,000 이하	150
3,000,000 초과	175

※자료: IBFD, Tax Research Platform(<https://research.ibfd.org>)

6) 베른(Bern)

배우자, 등록된 동성 커플, 직계비속, 의붓자녀, 양육 자녀(양육 기간인 최소 2년간 지속될 것)에 대한 상속은 상속세가 면제된다. 가업승계의 경우 순자산의 100%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한다(Art. 16 Abs. 1 lit. k ESchG). 기타의 경우 12,000 스위스 프랑을 공제한다.

110,600 스위스 프랑까지는 1%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후 110,600 스위스 프랑씩 증가할 때마다 0.25%씩 세율이 증가한다. 663,600 스위스 프랑을 초과하는 부분은 최고세율 2.5%가 적용된다. 이렇게 계산된 세금에 인적 관계에 따라 계수를 적용하여 최종 금액을 산정한다.

<표 91> 스위스(베른 주)의 상속세 계수

인적관계	계수
부모, 의붓부모, 양육 부모, 형제자매, 이복 형제자매, 조부모, 계조부모, 양육 조부모, 최소 10년간 동거한 사람	6
조카, 형제자매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삼촌, 고모, 이모	11

기타	16
----	----

※자료: IBFD, Tax Research Platform(<https://research.ibfd.org>)

만약 상속인이 기업에서 경영관리직을 맡고 있고 빠른 주에 주거를 두고 있다면 기업을 운영하는 회사 지분 이전 시 상속세를 전부 면제한다. 또한 지주회사가 일반회사의 최소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상속인이 해당 회사의 경영관리를 하고 있다면 지주회사의 지분 이전 시 상속세를 전부 면제한다. 세율을 결정할 때 10년 간 받은 소득을 합산한다.

7) 프리부르(Fribourg)

배우자, 등록된 파트너, 직계존비속에 대한 상속은 상속세를 면제한다. 세율은 인적관계에 따라 다르다.

〈표 92〉 스위스(프리부르 주)의 상속세율

인적관계	세율(%)
형제자매	5.25
의붓자녀, 등록된 파트너의 자녀, 양육 자녀, 이들의 직계비속	7.75
조카, 삼촌, 고모, 이모	8.25
증조 조카	10.5
조카의 아들과 딸의 직계비속, 사촌	12.75
사촌의 직계비속	17.25
피상속인과 이전 10년 이상 동거했던 사람	8.25
기타	22

※자료: IBFD, Tax Research Platform(<https://research.ibfd.org>)

시, 군은 프리부르주 지방세의 70%를 초과하지 않는 한 추가 세금을 부과할 권리가 있다. 교구(parishes)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8) 제네바(Geneva)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한 재산의 이전은 상속의 경우 5,000 스위스 프랑이 공제되고, 증여의 경우 10,000 스위스 프랑이 공제된다. 세율은 인적관계와 상속금액에 따라 다르다.

〈표 93〉 스위스(제네바 주)의 상속세율

인적관계	세율(%)
형제자매	0 ~ 12
삼촌, 이모, 고모, 조카, 조부모의 형제들(Grand-uncles, grand-aunts), 증조 조카	0 ~ 14
기타	0 ~ 26

※자료: IBFD, Tax Research Platform(<https://research.ibfd.org>)

이렇게 계산된 세금은 소득 및 순재산세에 적용되는 계수와는 다른 배수를 적용한다. 이 배수(centimes additionnels)는 매년 고정된다(2023년 기준은 2.10임).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는 이 배수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세율을 적용할 때 5년 간 이전된 금액을 합산한다.

9) 글라루스(Glarus)

배우자, 직계비속, 입양 자녀에 대한 상속이나 증여에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면제한다. 집 안의 가재도구, 5,000 스위스 프랑까지 상속세와 증여세가 면제된다. 이 외에는 인적공제가 적용된다.

<표 94> 스위스(글라루스 주)의 인적공제액

인적관계	공제금액(스위스 프랑)
의붓자녀, 양육 자녀	100,000
부모	50,000
기타	10,000

※자료: IBFD, Tax Research Platform(<https://research.ibfd.org>)

세율은 인적관계와 취득한 과세소득에 따라 다르다.

<표 95> 스위스(글라루스 주)의 상속세율

인적관계	세율(%)
부모, 입양 부모, 조부모	2.5 ~ 6.25
형제자매, 5년 이상 같은 집에서 동거한 파트너	4 ~ 10
이복 형제	5 ~ 12.5
의붓자녀, 의붓부모, 자녀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의 배우자	6 ~ 15
삼촌, 이모, 고모, 조카	7 ~ 17.5
의붓삼촌, 의붓이모, 의붓조카	8 ~ 20
증조 조카	9 ~ 22.5
기타	10 ~ 25

※자료: IBFD, Tax Research Platform(<https://research.ibfd.org>)

상속인이 자영업에 전적으로 또는 주로 사용하는 기업 자산이 이전되는 경우 세금이 50%까지 공제된다. 상속인이 고용된 회사의 지분의 상당 부분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같은 공제율이 적용된다. 여기서 지분의 상당 부분이란 납입 자본이나 의결권의 최소 40% 이상이어야 한다.

10) 그라우뷘덴(Graubünden)

배우자, 파트너, 직계비속, 의붓자녀, 양육 자녀에 대한 상속은 상속세를 면제한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persons in need)에 대한 상속은 14,000 스위스 프랑이 공제되고, 부모에 대해서는 100,000 스위스 프랑이 공제된다. 기타의 사람들에게 대한 상속은 7,000 스위스 프랑이 공제된다.

11) 쥐라(Jura)

배우자, 등록된 파트너에 대한 상속은 상속세를 면제한다.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도 상속세가 면제된다. 상속금액이 10,000 스위스 프랑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5년 간 누적)도 상속세가 면제된다.

상속세율은 인적관계와 상속금액에 따라 다르다.

<표 96> 스위스(쥐라 주)의 상속세율

인적관계	세율(%)
직계존속, 배우자의 자녀, 전 배우자와 이들의 자녀	7
형제, 자매, 직계존속의 배우자, 최소 10년 간 동거한 파트너	14
삼촌, 고모, 이모, 조카, 사촌, 형제자매의 배우자	21
기타	35

※자료: IBFD, Tax Research Platform(<https://research.ibfd.org>)

12) 루체른(Lucerne)

루체른 주에는 증여세가 없다. 배우자, 등록된 파트너,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은 상속세를 면제한다.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세는 주세로는 면제되지만, 시군에서는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 상속인의 소득이 4,000 스위스 프랑을 초과하지 않거나 그의 순자산이 10,000 스위스 프랑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000 스위스 프랑까지는 상속세를 면제한다. 가사종사자(domestics), 양육 자녀, 파트너는 2,000 스위스 프랑을 공제하고, 손자녀는 1,000 스위스 프랑을 공제한다. 세율은 인적관계와 상속금액에 따라 다르다. 적용 세율을 결정하기 위해 5년간 합산한다.

<표 97> 스위스(루체른 주)의 상속세율

인적관계	세율(%)
부모, 형제자매, 조카	6~12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사촌	15~30
기타	20~40

※자료: IBFD, Tax Research Platform(<https://research.ibfd.org>)

13) 뇌샤텔(Neuchâtel)

배우자, 등록된 파트너, 최소 5년 이상 동거한 파트너에 대한 상속에 대해 상속세를 면제한다. 직계비속과 파트너에 대한 상속세는 50,000 스위스 프랑이 공제되고, 기타의 사람은 10,000 스위스 프랑이 공제된다. 세율은 인적관계에 따라 다르다.

<표 98> 스위스(뇌샤텔 주)의 상속세율

인적관계	세율
직계비속, 부모, 조부모	3%
형제자매	15%
조카	18%
증조 조카의 자녀(descendants of grand-nephews and grand-nieces)	21%
조카의 자녀의 직계비속	24%
삼촌, 고모, 이모	20%
사촌	23%
사촌의 직계비속	26%
직계비속의 친족(relatives)	15%

형제자매와 조카, 조카의 자녀, 조카의 자녀의 자녀의 친족	31%
혼인하지 않고 최소 5년 이상 동거한 커플	20%
기타	45%

※자료: IBFD, Tax Research Platform(<https://research.ibfd.org>)

14) 니트발덴(Nidwalden)

배우자, 직계비속, 의붓자녀, 양육 자녀에 대한 상속에 대해 상속세를 면제한다. 한 과세기간 동안 같은 사람에 대한 20,000 스위스 프랑을 초과하지 않는 상속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면제한다. 최소 5년간 피상속인과 동거한 사람에 대한 상속도 상속세를 면제한다. 세율은 인적관계에 따라 다르다.

<표 99> 스위스(니트발덴 주)의 상속세율

인적관계	세율
형제자매와 이들의 직계비속, 조부모, 증조부모	5%
삼촌, 이모, 고모와 이들의 직계비속	10%
기타	15%

※자료: IBFD, Tax Research Platform(<https://research.ibfd.org>)

상속인이 독립된 직업(independent profession)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자산을 받은 경우에는 상속세를 면제한다. 상속인이 자신이 피고용인으로 근무하는 회사의 자본이나 의결권 있는 지분을 받은 경우에도 상속세를 면제하지 않는다.

15) 샤프하우젠(Schaffhausen)

배우자, 직계비속과 입양 자녀, 의붓자녀, 양육 자녀에 대한 상속은 상속세를 면제한다. 부모, 입양 부모, 의붓부모는 30,000 스위스 프랑을 공제하고, 기타의 사람은 10,000 스위스 프랑을 공제한다. 세율은 아래와 같다.

<표 100> 스위스(샤프하우젠 주)의 공제액 및 상속세율

과세금액(스위스 프랑)	전 단계 공제금액(스위스 프랑)	초과 세율(%)
10,000 이하	-	2
10,000 초과 ~ 20,000 이하	200	3
20,000 초과 ~ 40,000 이하	500	4
40,000초과 ~ 80,000 이하	1,300	5
80,000 초과 ~ 140,000 이하	3,300	6
140,000 초과 ~ 230,000 이하	6,900	7
230,000 초과 ~ 360,000 이하	13,200	8
360,000 초과 ~ 520,000 이하	38,000	9
520,000 초과 ~ 700,000 이하	56,000	10

※자료: IBFD, Tax Research Platform(<https://research.ibfd.org>)

만약 과세금액이 700,000 스위스 프랑을 초과하면 전체 금액에 대해 8%의 고정세율이 적용된

다. 이와 같이 계산된 세금은 인적관계에 따라 계수를 적용하여 증가된 금액으로 과세한다.

〈표 101〉 스위스(샤프하우젠 주)의 상속 계수

인적관계	계수
부모, 입양 자녀, 의붓자녀	1
조부모, 형제자매	2
부모의 기타 직계비속	3
조부모의 친족	4
기타의 자	5

※자료: IBFD, Tax Research Platform(<https://research.ibfd.org>)

16) 졸로투른(Solothur)

피상속인의 순자산에 대해 유산세 방식으로 상속세를 부과한다. 세율은 아래와 같다.

〈표 102〉 스위스(졸로투른 주)의 공제액 및 상속 세율

과세금액(스위스 프랑)	전 단계 공제금액(스위스 프랑)	초과 세율(%)
500,000 이하	-	0.8
500,000 초과 ~ 1,000,000 이하	4,000	1.0
1,000,000 초과 ~ 1,500,000 이하	9,000	1.3
1,500,000 초과 ~ 2,000,000 이하	15,500	1.7

※자료: IBFD, Tax Research Platform(<https://research.ibfd.org>)

과세금액이 2백만 스위스 프랑을 초과하면 전체 금액에 대해 1.2%의 고정세율이 적용된다.

상속인들이 받은 상속재산에 대해 유산취득세 방식으로도 상속세를 과세한다. 배우자, 등록된 파트너, 직계비속, 입양 자녀, 이들의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은 상속세를 면제한다. 세율은 인적관계에 따라 다르다.

〈표 103〉 스위스(졸로투른 주)의 인적관계에 따른 세율

인적관계	세율(%)
입양·의붓·양육 부모, 의붓·양육 자녀와 이들의 직계비속	2 ~ 5
형제자매	4 ~ 10
조부모, 배우자의 부모	6 ~ 15
삼촌, 고모, 이모, 조카	9 ~ 22.5
기타	12 ~ 30

※자료: IBFD, Tax Research Platform(<https://research.ibfd.org>)

17) 장크트갈렌(St. Gallen)

배우자, 직계비속과 의붓자녀, 양육 자녀에 대한 상속은 상속세를 면제한다. 가재도구와 개인물품, 5,000 스위스 프랑까지 면제된다. 부모와 의붓부모, 양육 부모, 의붓자녀와 양육자녀의 직계비속에 대해서는 25,000 스위스 프랑이 공제된다. 기타 상속인은 10,000 스위스 프랑이 공제된다.

세율은 인적관계에 따라 다르다. 계수는 적용되지 않는다.

〈표 104〉 스위스(장크트갈렌 주)의 상속 세율

인적관계	세율(%)
부모, 의붓부모, 입양 부모, 의붓자녀와 입양 자녀의 직계비속	10
형제자매, 배우자의 부모, 자녀의 배우자, 조부모	20
기타의 자	30

※자료: IBFD, Tax Research Platform(<https://research.ibfd.org>)

이전된 자산이 상속인의 사업에 사용되는 것이라면 위와 같이 계산한 세액에서 75%까지 공제한다. 상속인이 그가 피고용인으로 있는 회사의 상당한 지분권을 받는다면 같은 공제가 허용된다. 여기서 상당한 지분권이란 납입 자본이나 의결권의 최소 40% 이상을 보유하는 것을 말한다.

18) 투르가우(Thurgau)

배우자, 등록된 동성 파트너,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은 상속세를 면제한다. 5,000 스위스 프랑까지 상속세를 면제한다. 상속인이 부모라면 각 부모마다 20,000 스위스 프랑을 공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나 장애인에 대한 상속도 100,000 스위스 프랑을 공제한다.

세율은 피상속인과의 인적관계에 따라 다르다.

〈표 105〉 스위스(투르가우 주)의 상속 세율

인적관계	세율(%)
부모	2
조부모, 형제자매, 의붓자녀, 자녀의 배우자, 양육 자녀	4
삼촌, 고모, 이모, 형제자매의 직계존속	6
기타	8

※자료: IBFD, Tax Research Platform(<https://research.ibfd.org>)

위와 같이 계산된 기본 세금에 추가 금액이 부과된다. 즉, 수령한 금액이 1,000 스위스 프랑씩 늘어날 때마다 기본세금이 0.5%씩 증가한다. 500,000 스위스 프랑까지 최대 250%까지 증가한다. 수령한 금액이 500,000 스위스 프랑을 초과하면 250%의 고정율이 적용된다.

최소 40% 이상 기업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 상속인이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다면 세금이 50% 감면된다.

19) 티치노(Ticino)

배우자, 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입양 자녀 포함)에 대한 상속은 상속세를 면제한다. 저축 계좌에 예금되어 있다면 50,000 스위스 프랑이 공제된다.

세율은 인적관계와 상속금액에 따라 다르다.

〈표 106〉 스위스(티치노 주)의 상속 세율

인적관계	세율(%)
형제자매	5.95 ~ 15.5
조카, 이복 형제자매의 자녀, 의붓부모	7.735 ~ 18.5
조카의 자녀, 사촌, 형제자매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10.71 ~ 27
기타	17.85 ~ 41

※자료: IBFD, Tax Research Platform(<https://research.ibfd.org>)

20) 우리(Uri)

배우자, 등록된 파트너, 직계비속, 직계존속에 대한 상속은 상속세를 면제한다. 상속금액 중 15,000 스위스 프랑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도 면제된다.

세율은 인적관계에 따라 다르다.

〈표 107〉 스위스(우리 주)의 상속 세율

인적관계	세율(%)
형제자매, 이복 형제자매	8
삼촌, 고모, 이모,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12
기타	24

※자료: IBFD, Tax Research Platform(<https://research.ibfd.org>)

21) 발레(Valais)

배우자, 직계비속(입양 자녀 포함), 직계존속에 대한 상속은 상속세를 면제한다. 상속금액 중 10,000 스위스 프랑까지 상속세를 면제한다.

세율은 인적관계에 따라 다르다.

〈표 108〉 스위스(발레 주)의 상속 세율

인적관계	세율(%)
부모의 직계비속	10
조부모의 직계비속	15
증조부모의 직계비속	20
기타	25

※자료: IBFD, Tax Research Platform(<https://research.ibfd.org>)

22) 보(Vaud)

배우자, 등록된 파트너에 대한 상속은 상속세를 면제한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1년에 1인당 10,000 스위스 프랑까지 면제한다. 세율표는 아래와 같다. 적용 세율을 결정할 때 5년간 수령한 금액을 합산한다. 시·군은 추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주세를 초과할 수 없다.

〈표 109〉 스위스(보 주)의 상속 세율

상속인	과세금액(스위스 프랑)별 세율(%)			
	20,000	50,000	100,000	500,000
직계비속	1.35	1.59	1.85	2.86
이전 배우자와의 직계비속,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2.97	3.50	4.06	6.29

형제자매, 자녀의 배우자	5.94	7.00	8.12	12.50
삼촌, 이모, 고모, 조카,	8.91	10.49	12.18	16.50
조부모의 형제들, 증조 조카, 손자녀의 자녀 (great-grandnephews), 사촌	13.86	16.32	18.94	20.00
Others	17.82	20.99	24.35	25.00

※자료: IBFD, Tax Research Platform(<https://research.ibfd.org>)

23) 주크(Zug)

배우자, 동거자(concubines), 직계비속, 의붓자녀, 부모, 의붓부모에 대한 상속은 상속세를 면제한다. 총 소득이 12,000 스위스 프랑을 초과하지 않는(상속 또는 증여로 인한 소득을 포함) 일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상속은 60,000 스위스 프랑을 공제한다. 양육 자녀, 대자녀(godchildren), 가족 구성원은 10,000 스위스 프랑을 공제한다. 기타의 경우는 5,000 스위스 프랑을 공제한다. 기본세율은 아래 표와 같다.

<표 110> 스위스(주크 주)의 상속세율

과세금액(스위스 프랑)		세율(%)
1단계	40,000	10
2단계	40,000	11
3단계	60,000	12
4단계	60,000	13
5단계	200,000	15
6단계	200,000	17.5
초과	600,000 초과	20

※자료: IBFD, Tax Research Platform(<https://research.ibfd.org>)

위와 같은 기본세율에 인적관계에 따라 계수를 곱하여 최종 세금을 계산한다. 계수는 인적관계에 따라 다르다.

<표 111> 스위스(주크 주)의 상속세 계수

인적관계	계수
자녀의 배우자	0.2
형제자매, 이복 형제자매	0.4
조부모, 삼촌, 고모, 이모, 형제자매의 자녀와 의붓자녀, 의붓손자녀(step-grandchildren)	0.6
형제자매의 손자녀, 삼촌(이모, 고모)의 자녀	0.8
기타	1

※자료: IBFD, Tax Research Platform(<https://research.ibfd.org>)

24) 취리히(Zurich)

배우자, 등록된 파트너,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은 상속세를 면제한다. 상속금액 5,000 스위스 프랑까지 공제한다.

부모에 대해서는 200,000 스위스 프랑을 공제한다. 약혼한 사람, 형제자매, 조부모, 의붓자녀,

대자녀(godchildren), 입양 자녀, 최소 10년 이상 고용한 가사 도우미에 대해서는 15,000 스위스 프랑을 공제한다. 같은 집에서 최소 5년 이상 동거하고 다른 공제 항목이 적용되지 않는 피상속인의 파트너에 대해서는 50,000 스위스 프랑을 공제한다. 영구장애나 부분적으로 직업상 장애를 갖고 있는 부양 대상자에 대해서는 30,000 스위스 프랑을 공제한다.

기본세율은 아래 표와 같다.

<표 112> 스위스(취리히 주)의 상속세율

과세금액(스위스 프랑)		세율(%)
1단계	30,000	2
2단계	60,000	3
3단계	90,000	4
4단계	180,000	5
5단계	480,000	6
6단계	660,000	7

※자료: IBFD, Tax Research Platform(<https://research.ibfd.org>)

과세금액이 1백만 5천 스위스 프랑을 초과하면 전체 금액에 대해 6%의 고정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계산한 금액은 인적관계에 따라 계수를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산출한다.

<표 113> 스위스(취리히 주)의 상속세 계수

인적관계	계수
부모	1
조부모, 의붓자녀	2
형제자매	3
의붓부모	4
삼촌, 이모, 고모,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5
기타	6

※자료: IBFD, Tax Research Platform(<https://research.ibfd.org>)

이전되는 재산이 상속인이 자신의 사업에 사용하는 재산이라면 80%까지 공제한다. 상속인이 그가 고용된 회사의 관리 기능을 수행하면서 상당한 지분권(substantial participation)을 상속받는다면 80%까지 공제한다. 여기서 상당한 지분권이란 납입 자본이나 의결권의 최소 51% 이상을 보유하는 것을 말한다.

3. 시사점

가. 상속세 과세방식별 공제제도의 차이 여부

상속세에서 각종 인적공제는 상속인들의 개인적 사정을 고려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래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 체계에 맞는 제도이다. 하지만 유산세 방식의 과세체계에서도 이를 적용하

고 있는데 이는 상속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상속재산 취득자의 세부담 능력을 고려하기 위한 예외적인 제도라고 본다.⁷⁵⁾ 유산세 방식은 유산취득세 방식에 비해 개인 사정을 반영하는 효과가 다소 약하다.

실제로 OECD 국가들은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취득세로 하는지 유산세로 하는지에 따라 인적 공제 제도에 큰 차이가 존재하지는 않는다. 유산세 방식을 취하든 유산취득세 방식을 취하든 대부분 국가는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공제 한도를 최고금액으로 인정한다.

유산세 방식을 취하는 국가 중 배우자 공제에 있어서 한국만이 유일하게 공제 한도를 설정하고 있으며, 나머지 국가는 한도없이 전액 면제하고 있다. 또한 유산세 방식에서는 인적공제가 배우자 정도밖에는 없고 일괄공제나 기초공제를 통해 인적공제 요소를 반영하고 있다. 배우자에게 공제 한도 없이 전액 면제 혜택을 준다고 해도 일괄공제 등에 한도가 있어서 이 부분에서는 자녀에 대해 공제 한도를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표 114> 유산세 방식 국가의 배우자 및 자녀 공제 비교(단위: 달러)

	배우자 공제	자녀 공제
미국	면제	12,920,000달러(통합세액공제)
영국	면제	641,026 유로
덴마크	면제	321,700크로네(일괄공제금액)
한국	2,541,778	423,630 ¹
스위스의 솔로투른 주	면제	면제

¹자녀가 유일한 상속인으로 5억 원의 기초공제를 모두 받는 경우를 가정함

※자료: OECD(Inheritance Taxation in OECD Countries, 2021)와 IBFD의 Tax Research Platform(<https://research.ibfd.org>)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유산취득세 방식을 취하는 국가들 중에도 배우자 공제의 한도를 인정하는 국가와 전액 면제하는 국가가 있다. 자녀 공제에 있어서도 전액 면제하는 국가와 한도액을 설정하는 국가가 각각 있다. 룩셈부르크는 자녀가 상속받은 금액이 법정상속분 이내라면 전액 면제하고 있다.

<표 115> 유산취득세 방식 국가의 배우자 및 자녀 공제 비교(단위: 달러)

국가	배우자 공제	자녀 공제
리투아니아	면제	면제
스위스 대부분의 주	면제	면제
포르투갈	면제	면제
폴란드	면제	면제
헝가리	면제	면제
아일랜드	면제	335,000유로
일본	면제	3,600만엔 ¹
프랑스	면제	100,000유로
룩셈부르크	면제	면제(법정상속분 이내)

75) 김신언, “유산세형 상속과세제도에서 우리나라 상속공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세와 법 제4권, 2011. 10, 72쪽.

이탈리아	1,000,000유로	1,000,000유로
네덜란드	723,526유로	22,918유로
독일	500,000유로	400,000유로
그리스	400,000유로	400,000유로
핀란드	90,000유로	60,000유로
칠레	50UTMs	50UTMs
스페인	15,956.87유로	47,858.59유로(13세 미만), 15,956.87유로(21세 미만)
벨기에	15,000유로	15,000유로

¹자녀가 유일한 상속인으로 기초공제액 3,000만엔을 모두 공제받는 경우를 가정함.

※자료: OECD(Inheritance Taxation in OECD Countries, 2021)와 IBFD의 Tax Research Platform(<https://research.ibfd.org>)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나.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인적관계의 분류

대부분 국가는 인적관계에 따라 공제금액과 상속세율에 차등을 두고 있다. 배우자, 부모, 자녀, 삼촌과 사촌지간에 세제 혜택을 주고 있으며, 몇몇 국가는 증손자녀, 5촌 등 먼 친족까지도 세제상 혜택을 주고 있다. 인적공제 대상자를 몇 개의 그룹으로 분류하는지는 각 나라의 상속세 법이나 문화적 차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어떤 국가는 인적공제 대상자가 두 서너 그룹에 불과하지만, 프랑스와 스위스의 일부 주는 일곱 그룹으로 세분화하고 있다.

<표 116> 국가별 인적공제 그룹 수의 비교

그룹 수	국가
2	헝가리(배우자, 직계존비속/기타)
	리투아니아(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기타)
	포르투갈(배우자, 직계존비속/기타)
	아이슬랜드(배우자, 동거자/기타)
	터키(배우자/기타)
3	한국(배우자/직계비속/기타) ¹
	일본(배우자/직계비속/기타) ¹
	칠레(배우자, 직계존비속/형제자매, 삼촌지간, 사촌지간/기타)
	덴마크(배우자/가까운 친적/기타)
	그리스(배우자, 동거인, 자녀, 손자녀, 부모/증손자녀, 조부모, 증조부모, 형제자매, 삼촌지간, 배우자의 가족들/기타)
	핀란드(배우자/자녀/기타)
	룩셈부르크(배우자/직계비속/기타)

	영국(배우자/자녀/기타)
	미국(배우자/자녀/기타)
4	벨기에(배우자, 법적 동거자, 직계존비속/형제자매/삼촌지간, 사촌지간/기타)
	아일랜드(배우자/자녀, 부모/형제자매, 조카/기타)
	이탈리아(배우자, 직계존비속/형제자매/4세대 친족/기타)
	폴란드(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자녀의 배우자, 배우자의 자녀/조카, 형제자매의 배우자/기타)
	슬로베니아(배우자, 자녀/부모, 형제자매/조부모/기타)
	스페인(미성년 자녀/성년자녀, 배우자, 직계존속/형제자매, 삼촌, 사촌/기타)
5	네덜란드(배우자/자녀/질병 또는 장애 자녀/부모/기타)
6	독일(배우자/자녀/손자녀/증손자녀, 부모, 조부모/형제자매, 조카, 자녀의 배우자, 배우자의 자녀, 이혼한 배우자/기타 사람과 법적단체)
7	프랑스(배우자/형제자매/직계존비속/조카/장애인/손자녀와 증손자녀/기타)
	스위스(주에 따라 세 그룹에서 일곱 그룹까지 차이가 있음)

'OECD 자료에서는 한국과 일본을 두 그룹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배우자와 직계비속에 대한 공제액이 다르므로 세 그룹을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 자료: OECD, Questionnaire on Inheritance, Estate, and Gift Taxes(2020)를 참조하여 수정.('기타' 그룹은 인적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그룹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인적관계에 따라 상속세율도 다르게 정하고 있는 국가가 많다. 칠레, 덴마크, 그리스, 핀란드, 벨기에,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등은 인적공제 그룹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가까운 친족일수록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인적공제 그룹과 달리 세율에서 그룹 수를 더 세분화하고 있는 국가도 있다. 예를 들어 룩셈부르크는 인적공제는 세 그룹을 구분하여 공제액의 한도를 인정하지만, 세율에 있어서는 5그룹은 분류하여 세율을 차등하여 적용하고 있다. 폴란드와 네덜란드도 인적공제 그룹 수와 다르게 세율에서는 3그룹으로 분류하고 있다(인적관계에 따른 세율의 차이는 마.항을 참조).

다. 배우자 공제의 비교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부부는 법률혼, 시민결합(civil union), 동거(cohabiting) 중에 선택할 수 있다. 어떤 방식을 택하느냐에 따라 상속세 적용 여부와 상속공제액이 달라진다. 두 나라(네덜란드, 슬로베니아)에서만 모든 형태의 결합에 대해 같은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13개 국가는 법률혼과 시민결합에 대해서만 같은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법률혼이 아닌 부부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동거 기간 등 추가적인 요건을 요구하는 국가도 있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는 혼인하지 않고 최소 5년간 동거한 파트너와 공증된 동거계약(cohabitation contract)을 체결한 파트너

를 포함한다. 프랑스는 타방 파트너가 자신의 동거 파트너를 수증자 중 한 명으로 지정한 유효한 유언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6개국은 법률혼의 부부에만 세제 혜택을 준다.

대부분 국가에서는 생존 배우자의 상속세를 전부 면제한다(덴마크, 프랑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위스, 영국, 미국). 배우자에게만 가장 높은 공제를 적용하는 국가(핀란드, 독일, 네덜란드)도 있고, 자녀와 동일하게 가장 높은 공제를 적용하는 국가(벨기에, 칠레, 그리스, 이탈리아)도 있다. 배우자에게는 전부 면제 혜택을 주지만, 일정 기간 이상 동거한 파트너에게는 적은 금액의 공제한도를 인정하는 곳도 있다(스위스의 아펜젤-아우서로텐).

<표 117> 배우자 공제의 비교

국가	배우자 형태 ¹	배우자 공제
벨기에	MA, CU	15,000유로
칠레	MA, CU	50UTMs
덴마크	MA, CU	면제
핀란드	MA, CU	90,000유로
프랑스	MA, CU ²	면제
독일	MA, CU	500,000유로
그리스	MA, CU	400,000유로
헝가리	MA, CU	면제
아이슬란드	MA, CU	면제
아일랜드	MA, CU	면제
이탈리아	MA, CU	1,000,000유로
일본	MA	한도 내 ⁴
리투아니아	MA	면제
룩셈부르크	MA, CU	면제
네덜란드	MA, CU, CH ³	723,526유로
폴란드	MA	면제
포르투갈	MA, CU	면제
슬로베니아	MA, CU, CH	면제
스페인	MA, CU	15,956.87유로
스위스	MA	면제
터키	MA	2,032,742리라(자녀가 없는 경우), 1,015,747리라(자녀가 있는 경우)
영국	MA, CU	면제
미국	MA	면제

¹법률혼(married, MA), 시민결합(civil union, CU), 동거(cohabiting couple, CH)

²동성혼 파트너는 타방이 자신을 수증자 중 한 명으로 지정한 유효한 유언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유언장이 없는 상속의 경우 파트너는 배우자로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³동거 배우자는 최소한 5년 동안(동거 합의에 관한 공증문서가 있다면 6개월) 같이 살았어야 하고, 배우자를 수증자 중 한 명으로 지정한 유효한 유언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유언장이 없는 상속의 경우 파트너는 배우자로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⁴ 배우자가 상속분할에 의하여 실제로 취득한 유산액과 과세가액의 합계액 중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상당액(그 금액이 1억 6,000만엔 이하인 경우에는 1억 6,000만엔) 중 적은 금액에 대응하는 세액 상당액

※자료: OECD, Inheritance Taxation in OECD Countries, 2021.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면제나 공제 한도의 혜택은 생존 배우자의 물적 기초를 위한 것이다. 특히 생존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사망한 배우자의 소득이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통해 자산의 소유권에 있어서 성 균형(gender imbalances)을 이룰 수 있다. 만약 배우자에 대한 이전에 상속세를 부과하고 그 부부의 자녀들에게 재산이 이전될 때 다시 상속세를 부과한다면 이중과세가 될 수 있다.⁷⁶⁾ 결국 부부의 재산은 자녀에게 상속될 것이므로 부부 사이에 부의 이전(transfer)이 일어날 때 조세 회피의 위험은 일반적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생존 배우자에 대한 상속에 대해 상속세를 면제하거나 최대한의 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정당성이 인정된다. 이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는 배우자의 상속세를 면제하거나 최대한의 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법률혼 배우자에게만 상속권을 인정하고 시민결합이나 동거를 법적으로 보호하지 않는다. 이혼 시 재산분할에 있어서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상속권을 인정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상속세에 있어서 법률혼 배우자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OECD의 많은 나라들은 동성간 결합이나 일정기간 이상 동거한 파트너에게도 상속 공제나 세율 혜택을 주고 있다. 이 부분은 특정 국가의 사회 문화적 배경과 맞물려 정책적으로 결정할 내용이다. 다만, 법률혼에만 상속세 혜택을 준다면 국민들이 동성간 결합이나 동거보다는 법률혼을 선호하게 될 것이므로 세제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파트너들의 성적 결합을 근거로 하여 동성간에 혼인이나 시민결합(civil union)을 제한하는 것은 상속세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라. 자녀 공제의 비교

자녀 공제액은 국가마다 큰 차이를 보인다. 아이슬랜드는 자녀 공제액이 아예 없다. 벨기에, 네덜란드는 각 15,000유로와 22,918유로의 적은 금액만 자녀공제로 허용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1,000,000유로를 공제하며, 미국은 통합세액공제로 12,920,000달러를 공제한다.

<표 118> 자녀 공제액의 비교

국가	자녀 공제
벨기에	15,000유로
칠레	50UTMs
덴마크	46,147유로
핀란드	60,000유로
프랑스	100,000유로
독일	400,000유로
그리스	400,000유로

76) Robin Boardway, Emma Chamberlain, and Carl Emmerson, Taxation of Wealth and Wealth Transfers, 2010. 04, 773쪽.

헝가리	면제
아이슬랜드	없음
아일랜드	335,000유로
이탈리아	1,000,000유로
일본	20세가 될 때까지 연간 100,000엔
리투아니아	면제
룩셈부르크	면제(법정상속분 이내)
네덜란드	22,918유로
폴란드	면제
포르투갈	면제
슬로베니아	면제
스페인	47,858.59유로(13세 미만), 15,956.87유로(21세 미만)
스위스의 각 주	면제(예외: 뇌샬, 보)
터키	1,015,747리라 ¹
영국	641,026
미국	12,920,000달러(통합세액공제)

¹각 상속인에게 모두 같은 금액을 공제하고 있음.

※자료: OECD, Inheritance Taxation in OECD Countries(2021)을 참조하여 수정.

각 국가의 자녀 공제액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 그림과 같다. 왼쪽은 OECD 모든 국가를 비교한 그림이고, 오른쪽은 미국을 뺀 국가들을 비교한 그림이다. 벨기에, 스페인, 핀란드, 네덜란드는 자녀 공제액이 특히 적다. 미국은 다른 국가보다 공제액이 월등히 많은데, 이는 통합세액공제액이 많기 때문이다. 자녀들의 상속에 대해 상속세를 전부 면제하는 국가는 헝가리, 리투아니아,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위스의 대부분 주가 있다. 상속세를 전부 면제하지는 않지만, 가장 높은 공제 혜택을 주는 국가로는 벨기에, 칠레,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이다. 이들 11개 국가는 배우자와 같은 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배우자 다음으로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국가는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일본, 룩셈부르크, 영국이 있다. 대부분 국가에서 입양 자녀는 상속인의 친자녀와 같은 공제 혜택을 받는다. 아일랜드나 스위스 대부분의 주는 양육 자녀(foster children)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부여한다. 독일, 폴란드, 슬로베니아, 일본은 의붓자녀(stepchildren)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부여한다.

<표 119> 배우자 공제와 자녀 공제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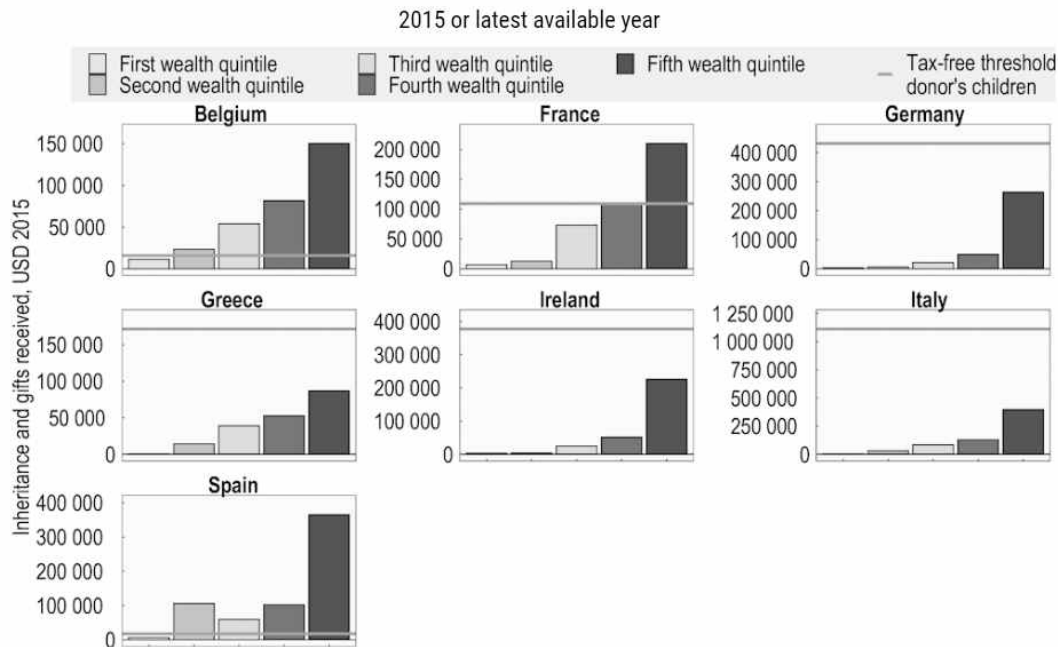
배우자 공제와 비교	국가
배우자 공제와 같은 공제	헝가리, 리투아니아,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벨기에, 칠레,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스위스의 대부분 주
배우자 공제보다 적게 공제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일본, 룩셈부르크, 영국

※자료: OECD, Inheritance Taxation in OECD Countries(2021)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다른 상속인보다 자녀에 대해 유리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근거는 보호·양육에 있다. 특히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상속재산이 생활비와 교육비로 소비될 것이므로 세제상 혜택을 부여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자녀에 대한 상속은 먼 친척에 대한 것보다 탄력적이지 않으므로 더 높은 세율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될 수 있다.⁷⁷⁾ 그렇게 되면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대자산가들의 근로의욕과 자산 축적 의욕을 줄이는 부정적인 행동 반응이 더 높게 나타날 것이다. 더구나 부모는 높은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각종 증여 형태로 자산을 이전할 확률이 높다. 이런 이유로도 자녀에 대한 높은 세액 공제가 정당화된다. 그러나 높은 세액 공제는 전체적인 상속세 세수를 줄이는 것이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자녀 공제에 따른 세부담 혜택이 전체적인 부의 계층 중에 어느 계층에 돌아가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아래 그림은 자녀 상속 공제의 한도를 부의 분포에 따른 평균 상속 가치와 비교한 것이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는 임계값이 부의 분포 평균보다 훨씬 위에 있다. 모든 계층이 혜택을 받고 있다는 뜻이다. 프랑스는 최상위 20%를 제외하고 임계값이 위에 있다. 그러나 자녀 공제액을 많이 인정하지 않는 벨기에와 스페인의 임계값은 최하위 오분위에 있어서만 평균 상속 가치를 초과한다. 그러나 이 그림에 대한 해석은 주의가 필요하다. 상속의 가치는 오분위 내에서도 다양하며 자산의 유형과 같은 요소들이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⁷⁸⁾

<그림 7> 자녀 공제와 부의 분포



※ 자료: OECD, Wealth Distribution Database

마. 인적관계에 따른 세율의 차이

77) OECD, Inheritance Taxation in OECD Countries, 2021.

78) OECD, 위 보고서, 2021.

각국은 상속세 세율로 고정세율이나 누진세율 중 하나를 채택하고 있다. 고정세율은 4~40%까지 범위가 다양하다. 모든 상속인에게 동일한 고정세율을 적용하는 국가로는 아일랜드(33%), 헝가리(18%), 포르투갈(10%), 영국(40%)이다. 이탈리아와 덴마크는 인적관계에 따라 고정세율을 다르게 하고 있다. 즉, 이탈리아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4%, 형제자매에게 6%, 그 이외 사람들에게는 8%를 적용한다. 덴마크는 15%에서 36.25%까지 다양하다.

누진세율은 1%(칠레)부터 80%(벨기에)까지 다양하다.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국가는 거의 모두 인적관계에 따라 여러 구간을 두고 있다.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세율은 일반적으로 다른 가족이나 친족관계가 없는 사람들보다 낮다. 국가 간에 차이도 크지 않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적용되는 최저세율은 1%(칠레와 그리스)에서 10%(일본, 네덜란드)까지의 범위 내에 있지만, 형제자매에게 적용되는 최저세율은 1.2% (칠레)에서 35% (프랑스)까지 분포한다. 자녀에게 적용되는 최고세율은 10%(그리스)에서 55%(일본)까지의 범위가 있으나, 형제자매에게 적용되는 최고세율은 14%(슬로베니아)에서 65%(벨기에)까지 분포한다.

많은 국가들은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인적관계에 따라 상속세 세율에 차등을 두고 있다. 피상속인과 인적관계가 가까울수록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먼 친척일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칠레, 폴란드, 슬로베니아 등은 인적관계에 따른 세율의 차이가 적다. 반면 벨기에는 피상속인의 자녀에게 최저 3%가 적용되지만 삼촌지간에게 최저 35%가 적용된다. 프랑스도 직계존비속에게는 최저 5%가 적용되지만, 형제자매는 35%, 이외 4세대 이내 혈족에게는 55%의 세율이 적용된다.

<표 120> 인적관계에 따른 세율 비교

국가	인적관계	세율(%)
벨기에	배우자, 직계존비속	3~30(브뤼셀, 왈룬), 3~27(플레미시)
	형제자매	20~65(브뤼셀), 20~50(왈룬), 25~55(플레미시)
	삼촌지간, 사촌지간	35~70(브뤼셀), 25~70(왈룬), 25~55(플레미시)
칠레	배우자, 직계존비속	1~25
	형제자매, 삼촌지간, 사촌지간	1.2~30
덴마크	가까운 친척(자녀/의붓자녀와 그들의 자녀, 부모, 자녀/의붓자녀의 배우자, 피상속인과 최소 2년 이상 동거한 사람, 이혼한 배우자,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양육 자녀)	15
폴란드	배우자, 가까운 친척	7~19
프랑스	직계존비속	5~45
	형제자매	35~45 (24,430유로 초과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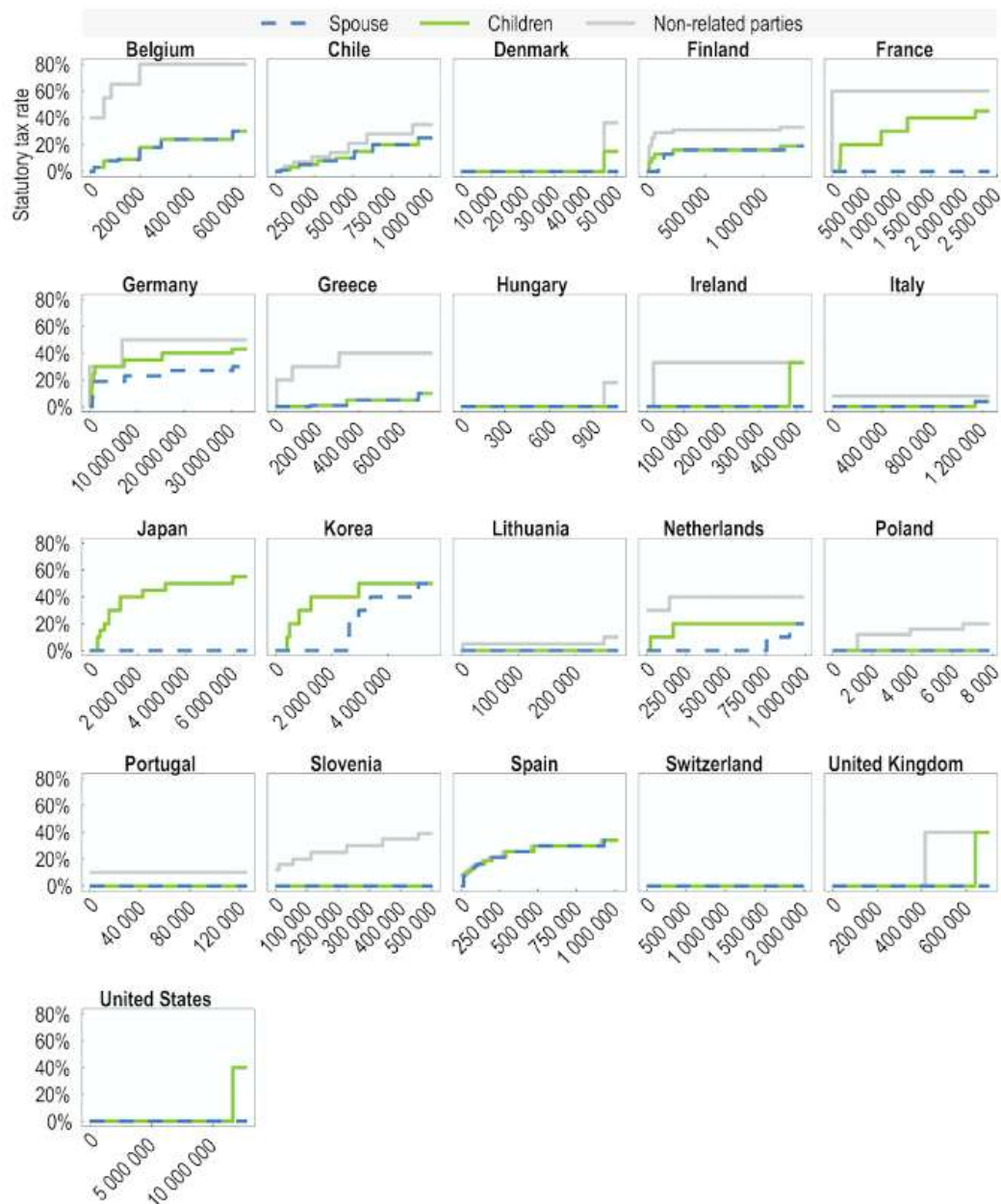
	4세대 이내 혈족	55
독일	배우자, 파트너(life partner), 자녀와 의붓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부모와 조부모	7~30
	형제자매, 조카, 의붓부모, 자녀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이혼한 배우자	15~43
그리스	배우자, 피상속인과 동거계약을 체결하고 최소 2년 이상 동거한 자, 자녀, 손자녀, 부모	0~10
	증손자녀, 조부모, 증조부모, 형제자매, 이복 남매, 삼촌, 이모, 고모, 양육 부모, 배우자의 가족들, 배우자가 이전 결혼으로 낳은 자녀	0~20
이탈리아	배우자, 직계존비속	4
	형제자매	6
	4세대까지 친족, 3세대까지 인척	6
룩셈부르크	직계존비속	0 또는 25 또는 5 (법정상속분 초과분)
	형제자매	6 또는 15 (법정상속분 초과분)
	삼촌, 이모, 고모, 조카, 입양 부모와 입양 자녀 사이	9 또는 15(법정상속분 초과)
	종조부모, 조카의 자녀, 입양부모와 입양자녀의 직계비속 사이	10 또는 15(법정상속분초과)
네덜란드	배우자, 파트너, 직계존비속	10 또는 20
	2세대 이상의 친족	18또는 36
폴란드	배우자, 자녀(입양 자녀와 의붓자녀 포함), 부모, 의붓부모, 형제자매중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자, 자녀의 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모	0~7
	조카, 형제자매의 배우자	0~12
슬로베니아	부모, 형제자매, 그들의 자손들	5~14
	조부모	8~17
스위스	각 주에 따라 세 그룹에서 일곱 그룹으로 구분하여 세율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부모와 조부모, 형제자매, 조카, 삼촌지간, 형제자매의 배우자, 일정기간 이상 동거자 등으로 구분, 뇌샬주는 12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세율을 달리 정함) ¹	1~12(아펜철티너로덴주) 6~30(루체른)

¹특별한 혈연관계나 인척관계가 없더라도 일정기간(5년 이상 또는 10년 이상, 주에 따라 다름) 동거한 사람에게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자료: IBFD, Tax Research Platform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아래 그림은 인적관계(특히 배우자와 자녀)에 따른 법정세율의 차이와 그러한 인적관계가 없는 사람의 법정세율의 차이를 보여준다. 프랑스와 독일, 네덜란드는 배우자, 자녀, 인적관계가 없는 자 순으로 세율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난다.

<그림 8> 인적관계(배우자, 자녀)에 따른 법정세율의 비교(단위: 달러)



※자료: OECD, Inheritance Taxation in OECD Countries, 2020⁷⁹⁾

어떤 국가나 주는 세율에서는 차등을 두지 않지만, 인적관계에 따라 세율에 곱하는 계수에 차등을 두는 경우도 있다. 계수는 스페인과 스위스의 몇 개 주에서 적용하고 있다. 역시 계수도 인적관계가 가까울수록 작다.

79) 한국과 일본은 인적관계에 따라 세율에 차등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배우자와 자녀의 법정세율이 동일하다. 그럼에도 위 그림에서 세율이 왜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지 알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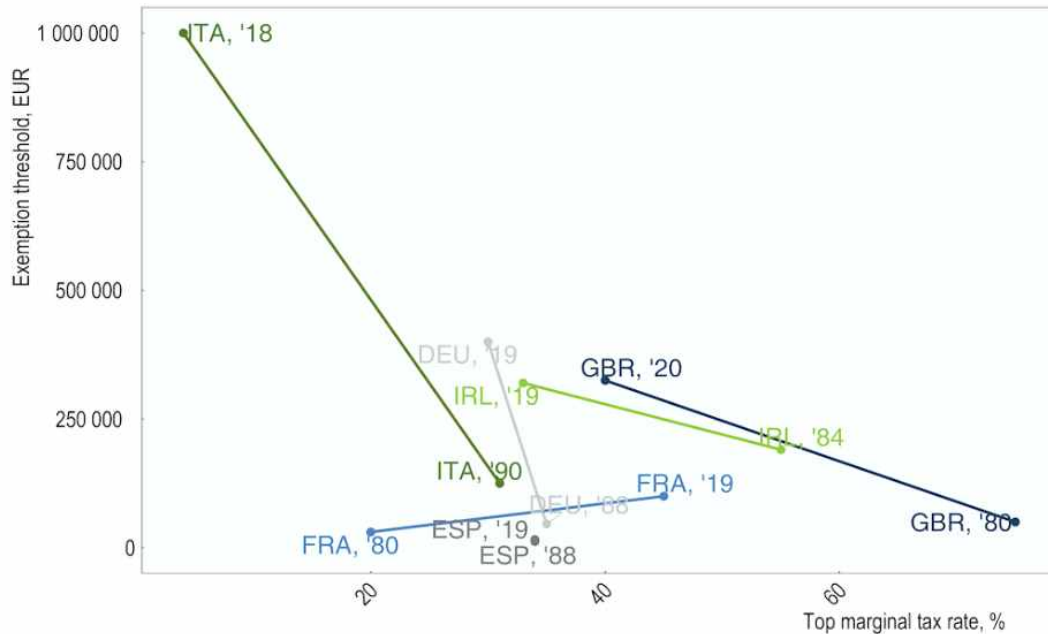
<표 121> 인적관계에 따른 계수

국가	인적관계	계수
스페인	21세 미만인 직계비속	1.0~1.2
	21세 이상인 직계존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삼촌, 조카	1.5882~1.9059
스위스의 베른	부모, 의붓부모, 양육 부모, 형제자매, 이복 형제자매, 조부모, 계조부모, 양육 조부모, 최소 10년간 동거한 사람	6
	조카, 형제자매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삼촌, 고모, 이모	11
스위스의 샤프하우젠	부모, 입양 자녀, 의붓자녀	1
	조부모, 형제자매	2
	부모의 기타 직계비속	3
	조부모의 친족	4
스위스의 주크	자녀의 배우자	0.2
	형제자매, 이복 형제자매	0.4
	조부모, 삼촌, 고모, 이모, 형제자매의 자녀와 의붓자녀, 계손자녀(step-grandchildren)	0.6
	형제자매의 손자녀, 삼촌(이모, 고모)의 자녀	0.8
스위스의 취리히	부모	1
	조부모, 의붓자녀	2
	형제자매	3
	의붓부모	4
	삼촌지간,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5

※자료: IBFD, Tax Research Platform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아래 그림은 두 기간(1980년과 2020년)에 걸쳐 여섯 개 국가의 자녀 공제한도액과 최고세율을 보여준다. 여섯 개 국가 중 네 개 국가(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영국)는 지난 30~40년 동안 최고세율을 낮추고 공제한도액을 높였다. 반면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프랑스는 공제한도액과 최고세율을 둘 다 높였으며, 스페인은 해당 기간 동안 거의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스페인에서는 지방 정부가 상속세 설계에 대한 상당한 자치권을 가지고 있어 지방 수준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2007년에 폴란드는 가족 구성원에 대해 상속세 전부 면제를 도입했고, 2018년에 미국은 최고한도를 두 배로 늘렸다. 이러한 추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산 이전에 대한 유효세율이 낮아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림 9> 1980년과 2020년의 자녀 공제한도액과 최고세율의 변화



※자료: OECD, Inheritance Taxation in OECD Countries, 2020

바. 추가 공제

1) 미성년자에 대한 추가 공제

몇 개 국가는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추가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벨기에에서는 21세 미만의 자녀는 21세까지 잔여 연수 동안 매년 2,500유로를 추가로 공제한다. 아일랜드에서는 피상속인의 자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였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 21세 미만의 손자녀는 피상속인의 자녀와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또한 미성년 자녀를 보호, 양육, 교육하는데 지출한 금액은 피상속인의 금전적 상황을 고려할 때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면 상속세가 면제된다. 미성년자가 아니라도 18세 이상 25세 미만의 자녀가 대학이나 교육기관에서 전일제 교육을 받거나 나이와 상관없이 물리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영구적으로 능력을 상실한 자녀에 대해 지출한 금액도 전액 면제된다. 스페인의 경우 상속인이 13세 미만이면 각 상속인마다 최고 47,858.59유로를 공제한다. 21세 미만이라면 15,956.87유로를 공제하고, 추가로 21세가 될 때까지의 잔여연수에 3,990.72유로를 곱한 금액을 공제한다. 영국에서는 고아가 된 미성년 자녀를 위한 신탁재산은 일반적인 신탁재산에 대한 표준 세금 대우보다 약간 유리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독일에서 자녀는 5세 이하라면 52,00유로, 10세 이하라면 41,000유로, 20세 이하라면 20,500유로, 27세 이하라면 10,300유로까지 추가로 공제된다. 일본의 경우 법정상속인이 20세 미만이라면 20세가 될 때까지 남은 연수에 100,000엔을 곱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2015년 1월 1일 이전에는 60,000엔).

2) 장애인에 대한 추가 공제

일부 국가는 장애를 가진 상속인에게 추가 공제를 허용한다. 프랑스는 정신이나 신체장애로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재산의 이전은 수익자마다 159,325유로를 공제한다. 이는 다른 공제와 함께 추가로 공제된다. 그리스는 상속인이 67% 이상의 장애가 있으면 산출한 세액에서 10%를 추가로 공제한다. 아일랜드는 신체나 정신적인 장애로 영구적으로 완전히 능력을 상실한 부양하는 친척(dependent relative)이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가 면제된다. 또한 장애를 가진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적격 비용(의료 치료 및 관련 유지보수 비용)으로 사용한다면 상속세가 면제된다. 이탈리아는 해당 이탈리아 법률에서 정의한 중대한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해 상속분 중 1.5백만 유로를 공제한다. 네덜란드는 질병 또는 장애가 있는 자녀는 비장애 자녀(22,918유로)보다 더 높은 공제액인 68,740유로를 허용한다. 일본은 법정상속인이 장애인이라면 85세가 될 때까지 남은 연수에 100,000엔을 곱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2015년 1월 1일 이전에는 60,000엔). 중증 장애인이라면 곱하는 금액이 200,000엔으로 늘어난다(2015년 1월 1일 이전에는 120,000엔). 스페인에서 상속인 중 장애인은 장애 정도에 따라서 47,858.59 유로에서 150,253.03유로까지 추가로 공제된다. 스위스의 투르가우 주는 장애인에 대한 상속의 경우 100,000 스위스 프랑을 공제한다. 스위스의 취리히 주는 영구장애나 부분적으로 직업상 장애가 있는 부양 대상자에 대해서는 30,000 스위스 프랑을 공제한다.

사.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이외의 사람에 대한 인적공제

배우자나 자녀뿐만 아니라 삼촌이나 사촌지간, 또는 그 이외에 먼 친척까지 공제를 허용하는 국가도 상당수이다. 예를 들어 프랑스, 그리스, 리투아니아, 폴란드, 스페인 등은 형제자매에게도 공제를 허용한다. 프랑스, 아일랜드, 폴란드, 스페인은 조카들에게도 공제를 허용한다. 이 외에도 그리스는 이복 남매에게, 폴란드는 형제자매의 배우자까지 공제를 허용한다.

혈족관계나 인척관계가 없더라도 피상속인과 특별한 관계를 형성한 사람에 대해서도 인적공제를 허용하는 국가가 있다. 예를 들어, 스위스의 그라우뷘덴 주와 투르가우 주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한 재산에 이전에 대해 상속 공제를 허용한다. 스위스의 주크 주는 좀 더 구체적으로 총 소득이 12,000 스위스 프랑을 초과하지 않는(상속 또는 증여로 인한 소득을 포함)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재산의 이전에 대해 상속 공제를 허용한다. 스위스의 루체른 주와 취리히 주는 가사도우미에게도 상속 공제를 허용한다.

<표 122>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이외의 자에 대한 인적공제 비교

국가	인적 관계	공제금액
칠레	삼촌지간, 사촌지간	5UTMs
프랑스	형제자매	전액공제 ¹ 또는

독일			15,932유로,
	조카		7,967유로
	손자녀		200,000유로
	증손자녀, 부모, 조부모		100,000유로
그리스	증손자녀, 조부모, 증조부모, 형제자매, 이복 남매, 삼촌, 이모, 고모, 양육 부모, 배우자의 가족들, 배우자가 이전 결혼으로 낳은 자녀		30,000유로
아일랜드	형제자매, 조카		32,500유로
이탈리아	형제자매		100,000유로
리투아니아	피후견인, 후견인, 조부모, 손자녀, 형제자매		면제
네덜란드	배우자, 자녀, 부모가 아닌 사람		2,418유로
폴란드	자녀의 배우자, 배우자의 자녀		10,434즈위티
	조카, 형제자매의 배우자		7,878즈위티
	기타의 자		5,308즈위티
스페인	직계존속,		15,956.87유로
	형제자매, 삼촌지간, 조카, 4세대까지 결혼에 의해 형성된 후손과 부모		7,993.46유로
스위스	그라우빈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14,000스위스 프랑
	루체른	가사종사자	2,000스위스 프랑
		손자녀	1,000스위스 프랑
	투르가우	도움이 필요한 사람	100,000스위스 프랑
	주크	총 소득이 12,000 스위스 프랑을 초과하지 않는(상속 또는 증여로 인한 소득을 포함) 일을 할 수 없는 사람	60,000스위스 프랑
		대자녀(godchildren), 가족 구성원	10,000스위스 프랑
	취리히	약혼자, 대자녀(godchildren), 최소 10년 이상 고용한 가사 도우미	15,000스위스 프랑

¹면제 요건은 상속인이 ① 피상속인의 사망 전 최소 5년 동안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였고 ② 미혼, 과부(또는 홀아비), 이혼이나 별거 중이어야 하고 ③ 50세를 초과하거나 장애가 있어야 한다.

※자료: IBFD, Tax Research Platform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가까운 친척과 먼 친척 간에 공제액의 차이를 줄이면 피상속인이 재산을 더 많은 상속인들에게 분산시킬 것이다. 이를 통해 부의 분산을 유도할 수 있다. 반면 공제율의 차이가 클수록 피상속인은 가까운 가족에게만 재산을 남길 것이므로 개인의 선택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는 배우자나 자녀 이외에 ‘그 밖의 인적공제’에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에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과 형제자매를 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어야 공제가 허용된다. 또한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어야 하므로 대부분 직계존비속에 한정될 것이다. 그 밖의 인적공제의 대상자의 범위는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매우 좁다.

아. 가족 주택에 대한 공제

피상속인과 동거하던 가족이 동거하던 주택이나 대지를 상속받는 경우에 물적 공제를 허용하는 국가들이 다수 있다.

벨기에의 브뤼셀 지역과 플레미시 지역에서는 배우자나 법적 동거자가 가족의 주택을 상속하면 상속세를 전부 면제한다. 배우자나 법적 파트너가 아닌 직계존비속이나 다른 동거자가 상속한 경우에는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프랑스는 소유권의 존속기간에 따라 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대한 특정한 세액 공제가 허용된다. 모든 경우에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상속세는 해당 주택 가치의 80%에 대해서만 부과된다. 독일은 피상속인의 사망 시 가계 주택(family home)을 배우자가 상속받으면 상속세가 면제된다. 다만 상속인은 취득 후 10년 동안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자녀나 의붓자녀, 사망한 자녀나 의붓자녀의 자녀들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주택을 즉시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은 과세가 면제된다.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10년간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리스는 가족 주택에 대한 상속공제를 가장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자녀 수에 따라 공제액에 차이가 있는 점이 특이하다. 수익자나 배우자 또는 독립하지 못한 자녀가 가족들이 주거에 필요한 주택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 사용권 또는 거주권을 갖고 있지 않다면, 생존 배우자나 자녀들이 상속받은 주택이나 토지 일부는 상속세가 면제된다. 주택에 대한 공제는 미성년자나 미혼의 수익자마다 200,000유로까지 허용된다. 자녀 양육권을 가진 기혼자나 이혼자, 과부나 홀아비 그리고 미혼부모의 경우 최대 250,000유로까지 공제한다. 만약 상속인이 오직 한 채의 주택(전부 소유권)을 상속받은 경우 처음 두 자녀마다 25,000유로를 추가로 공제하고, 세 번째 이후의 각 자녀마다 30,000유로씩 추가로 공제한다. 토지 일부에 대한 공제는 미성년자나 미혼의 수익자마다 최대 50,000유로를 공제한다. 자녀 양육권을 가진 기혼자, 이혼자, 과부나 홀아비, 미혼부모마다 최대 100,000유로까지 공제한다. 상속인이 오직 토지 일부(전부 소유권)를 상속받은 경우 처음 두 자녀마다 10,000유로, 세 번째 이후의 각 자녀마다 15,000유로까지 추가로 공제한다.

일본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최대 330 제곱미터까지는 일정 부분(예를 들어 20%)만 상속세가 과세된다. 폴란드는 1그룹에 속하는 상속인(배우자, 자녀, 자녀의 배우자, 부모, 의붓부모,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6개월 이내에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와 2그룹(조카,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3그룹(1그룹과 2그룹 이외의 자)에 속하는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특정 조건에 따라 주택의 110㎡에 해당하는 부분의 가치만큼 상속세가 면제된다. 스페인은 가까운 친척이 주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취득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치의 95%를 공제한다. 하지만 최대 122,606유로가 한도 금액이다.

영국의 경우 2017. 4. 5. 이후 사망 시 직계비속에게 이전되는 주택에 대해서 공제가 인정된다. 집을 줄이거나 소유권을 포기하고 동등한 가치의 자산이 직계비속에게 이전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요건을 갖춘 주택이 사망 시에 직계비속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2022/23년에서

2024/25년까지는 17만 5천 파운드이다. 한편 순가치가 2백만 파운드를 초과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주택 상속 공제금액이 줄어든다. 위 금액을 매 2파운드 당 1파운드씩 공제금액이 줄어든다. 헝가리는 상속인들의 물적공제를 허용하는 대신 주거용 부동산과 그에 딸린 가치가 있는 권리에 대해 9%의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자. 소액 상속 공제

인적관계에 상관없이 상속인들이 받는 소액의 상속금액에 대해 상속세를 전부 면제하는 국가들이 있다. 금액은 국가마다 다르다. 소액 상속에 대한 상속세 면제는 행정비용과 징수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표 123> 소액 상속 공제 비교

국가	상속금액	
벨기에	1,250유로(브뤼셀 지역), 620유로(왈론 지역), 50,000유로(플레미시 지역)	
핀란드	20,000유로	
프랑스	1,594유로	
독일	20,000유로	
그리스	6,000유로	
아이슬랜드	5백만 크로나	
아일랜드	3,000유로	
일본	110만엔	
리투아니아	3,000유로	
룩셈부르크	1,250유로	
스위스	아펜젤-아우서로덴	2,000스위스 프랑
	바젤슈타트주	10,000스위스 프랑
	베른	12,000스위스 프랑
	글라우스	5,000스위스 프랑
	취라	10,000스위스 프랑
	로체른	1,000스위스 프랑
	니트발덴	20,000스위스 프랑
	장크트갈렌	5,000스위스 프랑
	투르가우	5,000스위스 프랑
	우리	15,000스위스 프랑
	발레	10,000스위스 프랑
	보	10,000스위스 프랑
	취리히	5,000스위스 프랑

※자료: IBFD, Tax Research Platform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4. 소결론

가. 배우자 공제 확대의 필요성

OECD의 많은 국가들은 배우자의 상속세를 전부 면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배우자의 상속분에 대해 상속세를 전액 면제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⁸⁰⁾ 논거로는 ‘1세대 1회’ 과세원칙을 가장 중요하게 꼽고 있다. 부부간에 상속재산의 이전은 동일 세대간의 이전인데, 이에 대해 한 번 과세하고 나서 생존 배우자가 사망함으로써 다음 세대로 이전할 때 상속세를 또 한 번 과세하게 되면 ‘1세대 2회’ 과세가 되므로 부당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혼 시 재산분할을 증여로 보지 않는 이유(즉, 혼인생활 중 재산축적을 위해 생존 배우자가 상당한 기여를 했기 때문에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봄)와도 같은 맥락에서 상속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중에 증여공제에 있어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차별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에 관한 내용이 있다. 이 결정에서 ‘증여’를 ‘상속’으로 읽으면 배우자가 상속받을 때 배우자 공제를 확대해야 하는 당위성을 찾을 수 있다. 결정의 내용은 이렇다. “배우자간 증여는 재산의 세대 사이의 수직적 이전이 아닌 동일 세대 사이의 수평적 이전으로서 부의 세습방지라는 증여세의 과세목적상 제한의 필요성이 그다지 크지 않고, 친밀 정도가 가장 강하게 인정되는 인적관계로서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많은 부분 배우자의 기여분이 인정되는 반면, 직계존비속 사이의 증여는 세대 사이의 부의 이전으로서 부의 세습을 방지하고 재산의 사회적 환원을 유도하려는 증여세의 과세목적상 이를 제한할 필요성이 크고,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도 배우자에 비하여 경미한 수준에 그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직계존비속인 수증자의 공제한도를 배우자에 비하여 낮은 수준으로 정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고 할 것이다.”

생각건대, 배우자 간 자산의 이전은 동일 세대 간의 수평적 이전이고 배우자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할 때 생존 배우자가 상속할 때 상속세를 전부 면제하거나 공제액을 최대한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배우자 중 일방이 사망함으로써 인하여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부담시키고, 이혼에 의하여 재산을 분할 취득하는 배우자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면제시키는 것은 불공평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법 감정과도 조화될 수 없다.⁸¹⁾ 최소한 상속재산의 50%는 생존 배우자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상속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상속세를 면제한다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이연일 뿐이다. 생존 배우자의 생활을 위해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그 배우자가 사망할 때 자녀에게 상속되고 이때 상속세를

80) 김정식, “부부단위 과세제도의 입법론적 연구-상속세 및 증여세를 중심으로-”, 조세법연구 제11권 제2호, 2005, 408쪽; 최명근, 앞의 책, 339쪽.

81) 김병일, 앞의 논문, 76쪽.

과세하게 되기 때문이다.⁸²⁾ 1996년에 발표된 논문이기는 하지만 여기서는 금융자산 등에 대한 재산분할 여부 확인이 실무상 불가능한 문제, 배우자 상속분의 전액 공제에 따른 혜택이 대부분 고액 자산가에게 집중되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배우자 상속분을 전액 면제할 수는 없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⁸³⁾ 그러나 현재는 금융재산에 대한 실명제, 국세청이 확보하고 있는 데이터, 중앙정부 기관간 정보교환 등에 따라 세무행정의 어려움은 해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해외의 공제제도 현황을 보면 높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배우자 공제 혜택을 받는 것은 사실이다.

한편 전액 면제를 하게 되면 과세 형평상의 문제와 재정수입의 감소가 우려되므로 부부 유산 합산과세제도 도입을 제안하는 견해도 있다.⁸⁴⁾ 이에 따르면 일방 배우자의 사망 시 배우자 상속공제를 한도 없이 인정한 후 다른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두 부부 각각의 사망 당시 상속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상속세액을 산출한 후 먼저 사망한 배우자의 사망 시 납부한 상속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다.

나. 인적 추가공제의 세분화 및 다양화

우리나라는 2015년에 자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자녀의 나이를 20세에서 19세로 낮추었다. 하지만 현실에서 자녀들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도 독립을 하지 못하고, 대학 졸업 후에도 취업을 하지 못해 부모와 경제적으로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자녀의 부양료와 학업 등을 위해 사용될 것이 예정되어 있다. 따라서 자녀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녀의 나이를 대학 졸업까지인 24세로 연장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일랜드는 18세 이상 25세 미만의 자녀가 대학이나 교육기관에서 전일제 교육을 받는다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도 전액 면제한다. 또한 독일은 자녀의 나이를 구분하여 공제액을 세분화하고 있다. 미취학 아동과 취학 아동, 취학 이후에도 초등학생과 고등학생 등은 생활비와 사교육 학비 등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공제액을 세분화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다. 주택에 대한 상속공제이기는 하지만 그리스는 세 번째 이후의 각 자녀마다 30,000유로씩 추가로 공제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세제상 혜택을 부여한다면 다자녀에 대한 추가 공제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⁸⁵⁾

또한 연로자 공제는 65세 이상이면 모두 같은 금액으로 공제받고 있는데, 이에 대해 연로자 중간병 간호가 필요한 75세 이상인 연로자를 추가 공제해주자는 제안도 있다.⁸⁶⁾ 초고령화 사회로

82) 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7헌바13 전원재판부.

83) 한상국, 배준호, “상속세 배우자공제한도제도의 개편방향 검토”, 재정금융연구 제3권 제2호, 1996. 12. 164쪽.

84) 박성만, 정범식,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공제 개선방안”, 재정정책논집, 제13집 제4호, 한국재정정책학회, 2011. 12. 253쪽.

85) 이상신, “유산취득세 전환의 법적 쟁점”, 2023년 한국세법학회 제29회 하계학술대회, 한국세법학회, 2023.

86) 김광현, “우리나라의 상속세 공제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회계학회 학술발표논문집, 한국세무회

접어들면서 연로자 공제도 나이에 따라 공제액을 세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장애인 공제에 대해서도 일률적인 공제액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장애라고 하더라도 장애 등급에 따라 생계비와 병원비에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 스페인이나 일본 등은 장애 등급이나 중증 장애인에게 더 많은 금액을 추가로 공제하고 있다. 우리도 장애 등급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공제액을 차등하여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인적공제 혜택을 받는 인적관계의 범위가 협소하다. OECD 국가들 중에는 친족과 인척을 포함하여 4촌까지 넓히고 있는 나라도 있으며, 친인척 관계가 없더라도 양육 자녀나 일정기간 동거한 자나 심지어 가사도우미까지도 상속공제를 허용하기도 한다. 인적공제를 적용받는 사람이 많을수록 부의 분산 효과가 커져서 부의 집중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법정상속인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지만, 인적공제 범위를 넓히면 유증이나 사인증여를 통한 부의 분산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한가지 문제는 상속세법과 가족법의 불일치가 생기는 것이다. 그런데 사인증여나 유증을 받는 사람은 가족법상 상속인은 아니지만 상속세법에서는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다. 따라서 가족법상 상속인이 아니어도 상속세법에서 인적공제 대상자를 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본다.

다. 물가상승을 반영한 공제금액의 변동

우리나라의 상속세 인적공제 금액은 1997년 이후 거의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물가상승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반해 인적공제액을 이에 따라 높이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세부담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한다.

1997년과 2021년의 소비자물가지수를 비교하여 일괄공제금액 5억 원을 현재 화폐가치 변화로 추정할 때 2023년 일괄공제 금액은 8억 4,050원이 적정하다는 연구가 있다.⁸⁷⁾ 이 연구에서는 기초공제금액도 현재 화폐가치의 변동으로 측정하면 3억 1,260만 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공제금액을 주기적으로 인상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⁸⁸⁾

<표 124> 소비자물가상승률(2010~2022년)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상승률 (%)	2.9	4.0	2.2	1.3	1.3	0.7	1.0	1.9	1.5	0.4	0.5	2.5	5.1

※자료: 나라지표(<https://www.index.go.kr>)

미국이나 영국은 거의 매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공제액을 인상하고 있다. OECD에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주요국들은 각종 공제 항목의 공제금액을 인상하여 상속세의 실효세율을 낮

계학회, 2001. 12, 87쪽.

87) 박성욱, 이재호, 전해진, 앞의 논문, 156쪽.

88) 같은 취지로 원종학, 앞의 보고서, 114쪽.

추고 있다. 이는 자산 가격의 상승으로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조정하고자 하는 의도이다. 우리나라도 공제액을 물가상승률에 연동시켜 실질적으로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

라. 인적관계에 따른 세율의 차등화

우리나라는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인적관계에 따라 세율에 차이가 없다. 유산취득세 방식을 취하는 OECD 국가 중 많은 국가는 세율을 정할 때 인적관계와 과세표준을 모두 고려한다. 인적관계가 가까울수록 낮은 세율표를 적용한다. 이렇게 하면 상속세 세부담을 낮춰 경제 활력을 제고할 수 있고, 조세회피 행위도 다소 방지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⁸⁹⁾ 과세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한다면 인적공제액을 늘리지 않더라도 세율을 차등화하여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세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마. 배우자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확대하는 방안

배우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배우자에게 주택을 상속할 때 별도의 공제제도를 두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허용하고 있지만 그 요건이 엄격하다. 반드시 10년 이상 피상속인과 1주택에 동거하면서 1세대를 구성해야지만 된다. 공제금액도 6억 원을 한도로 하고 있다. 피상속인 사망 이후에도 상속인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요건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생존 배우자가 상속받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100%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무 거주 요건을 추가하면 될 것이다. OECD 국가 중 벨기에, 독일 등은 배우자의 동거주택 상속에 대해 상속세를 전액 면제한다.

반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 완화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아예 폐지하자는 견해도 존재한다.⁹⁰⁾

바.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실효성 검증

1993년 금융실명제를 전격적으로 실시하면서 금융재산이 양성화되었다. 이로 인해 늘어난 세 부담을 줄이고 저축을 장려한다는 명분으로 1997년 금융재산 상속공제 제도를 도입하였다.⁹¹⁾ 그러나 다른 상속재산과 달리 금융재산에만 물적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 조세평등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1990년도에는 부동산 등의 시가 반영률이 낮은 반면 금융재산은 가치가 명확하게 파악되었다. 하지만 현재 부동산자산 가액은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비교 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공시가격을 평가액으로 한다. 공시가격은 정부의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

89) 박성욱, 이재호, 전해진, 앞의 논문, 153쪽.

90) 박준, 앞의 논문, 157쪽.

91) 폐지해야 한다는 견해로 박준, 앞의 논문, 155쪽.

로드맵이라는 정책 목표에 따라 시가 반영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통상적 시장, 정상적 거래, 성립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적정가격을 평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연 3%씩 높여 향후 10~15년에 걸쳐 시세의 90%로 현실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토지는 2020년에 현실화율을 65.5%로 하고 9년에 걸쳐 90%로 제고할 계획이었다.⁹²⁾

OECD 국가 중에 금융재산이라고 하여 특별히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곳은 없다. 과세방식이 유산취득세로 변경된다면 금융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에게만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계속 허용하는 것은 정당성에 의문이 있다. 이는 상속분할 시에 다른 재산을 분할받은 상속인과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92)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 발표”, 2020. 11. 3.자.

V. 상속세제 과세방식 전환에 따른 세부담 효과

1. 과세방식 전환에 따른 세부담 변동

유산취득세로 상속세 과세방식을 전환하게 되면 상속재산의 규모 및 상속인의 구성에 따른 세 부담 변동의 불균형이 야기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상속재산의 규모가 크고 자녀 수가 많을수록 과세표준의 분할에 따른 세부담 감소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유산세 과세방식에서 사실상 면세점 역할을 수행하는 기초공제와 일괄공제가 폐지되면 상속재산 규모가 크지 않고 자녀 수가 적은 상속인들의 세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대규모·다자녀 상속의 세부담 감소와 소규모·소자녀 상속의 세부담 증가라는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공제제도의 개편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유산취득세 전환에 따른 상속공제의 개편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유산취득세 방식과 조화를 이루기 어려운 기초공제와 일괄공제를 모두 폐지하고 분할된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인별 인적공제를 적용한다. 둘째, 유산세 방식과 유산취득세 방식을 혼합하여 총상속재산에 대하여 1차로 기초공제를 적용한 다음 상속인별로 분할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2차로 인적공제를 적용한다.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상속세 과세방식을 전환함에 따라 상속세 부담이 어떻게 변동되는지를 파악하고자 설정한 주요 가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세 대상이 되는 상속 건수(피상속인 수)는 연간 20,000명이다. 둘째, 상속재산은 법정지분율에 따라 분할된다. 셋째, 상속인의 구성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와 배우자가 없는 경우로 구분하여 자녀 수가 3명인 경우까지를 분석 대상으로 한다. 넷째, 상속공제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만을 고려하며 물적공제는 고려하지 않는다.

가. 재산규모의 분포

상속재산 규모별 상속건수(피상속인 수)의 분포를 추정하기 위하여 총상속재산가액 등 규모별 상속세 결정 현황에 관한 국세청 통계를 활용하였다. <표 125>는 2022년 귀속 상속재산별 피상속인의 수, 재산규모별 피상속인 수가 전체 피상속인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여준다.

<표 125> 재산규모별 피상속인 비율

구분	피상속인 수	비율(%)
10억 이하	4,081	28.84
10억 초과 20억 이하	6,920	43.73
20억 초과 30억 이하	2,035	12.86

30억 초과 40억 이하	838	5.30
40억 초과 50억 이하	451	2.85
50억 초과 60억 이하	242	1.53
60억 초과 70억 이하	151	0.95
70억 초과 80억 이하	120	0.76
80억 초과 90억 이하	94	0.59
90억 초과 100억 이하	70	0.44
100억 초과 150억 이하	168	1.06
150억 초과 200억 이하	71	0.45
200억 초과 300억 이하	42	0.27
300억 초과 400억 이하	21	0.13
400억 초과 500억 이하	10	0.06
500억 초과	26	0.16
합계	15,823	100.00

※자료: 국세청 통계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나. 인적 특성의 가정

상속인의 인적 특성을 추정하기 위하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데이터 및 통계청 인구총조사를 사용하였다. 상속인 특성별 상속 건수 분포의 추정은 다음의 3단계를 거친다. 첫째, 피상속인의 배우자 유무를 추정하기 위하여 재정패널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제13차 재정패널데이터의 조사 시점인 2020년 기준 60세 이상의 가구주를 잠재적 피상속인으로 선정하여 배우자 생존 여부를 확인한 결과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69%, 이혼 또는 사별 등의 원인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31%로 나타났다. 둘째, 피상속인별 자녀수의 구성의 분포를 추정하기 위하여 통계청의 인구총조사에 포함되어 있는 세대구성/가구원수별 총조사가구(일반가구)를 활용하였다. 제13차 재정패널데이터의 조사 시점인 2020년을 기준으로 60세 이상인 가구주가 40세 이상이었던 시기가 피상속인별 자녀 수를 추정하기에 적합하다고 보아 2000년 인구총조사 당시 혼인한 부부들의 자녀 수 구성 비율을 파악하였다. 셋째, <표 126>에 제시한 바와 같이 상속인들의 인적 특성에 대한 최종 비율은 60세 이상이면서 배우자가 생존해 있을 확률과 2000년 기준 혼인한 부부의 자녀 수 구성 비율을 동시에 고려하여 산출하였다.

<표 126> 상속인 인적 구성 비율의 추정

구분	상속인 구성	빈도	비율(%)
S0	배우자 단독상속	1,219,281	12.14
C1	자녀 1명 단독상속	909,926	9.06
C2	자녀 2명 공동상속	1,485,541	14.79
C3	자녀 3명 공동상속	334,694	3.33
SC1	배우자와 자녀 1명 공동상속	2,031,658	20.23
SC2	배우자와 자녀 2명 공동상속	3,316,876	33.02
SC3	배우자와 자녀 3명 공동상속	747,295	7.44
합계		10,045,271	100.00

※자료: 국세청 통계, 통계청 인구총조사, 재정패널데이터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다. 기초공제와 일괄공제를 모두 폐지하는 경우

<표 127>은 배우자 공제와 자녀 공제를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기초공제와 일괄공제를 모두 폐지하는 경우 과세방식 전환에 따른 유효세율(상속세 합계액/총상속재산)의 증감을 보여준다. 상속재산규모가 10억 원인 경우에는 상속인이 배우자만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부담 증가효과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상속인이 배우자만 있는 경우(S0)에는 배우자 공제한도 30억 원이 적용되는 구간까지는 유효세율 변화가 없으나 30억 원을 초과하는 구간부터 상속세부담이 증가한다. 그러나 상속재산 규모가 커짐에 따라 기초공제 폐지가 세부담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누진세율 구조로 인하여 점차 감소하게 된다. 상속인이 자녀 1명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C1)에는 상속재산의 규모에 관계 없이 세부담이 항상 증가하게 되며 상속재산의 규모가 작을수록 일괄공제 폐지에 따른 세부담 증가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난다. 한편, 유산취득세 하의 과세표준 분할에 따른 세부담의 감소효과는 자산규모가 100억 원이면서 상속인이 자녀 3명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 가장 크게 나타났다.

<표 127> 기초공제와 일괄공제를 폐지하는 경우 세부담(유효세율) 변화

(단위: %)

인적특성 \ 재산규모	10억원	20억원	30억원	40억원	50억원	100억원	200억원	300억원	400억원	500억원
S0	0.0	0.0	0.0	1.5	1.6	1.0	0.5	0.3	0.3	0.2
C1	13.5	9.0	6.0	5.6	4.5	2.3	1.1	0.8	0.6	0.5
C2	7.0	0.5	0.0	-1.3	-3.0	-2.6	-1.3	-0.9	-0.7	-0.5
C3	5.0	-3.3	-5.5	-5.8	-6.6	-7.5	-3.7	-2.5	-1.9	-1.5
SC1	6.0	5.8	5.0	4.5	3.6	-2.4	-1.2	-0.8	-0.6	-0.5
SC2	7.4	3.0	1.3	0.0	0.0	-5.1	-3.6	-2.4	-1.8	-1.4
SC3	7.3	0.8	-2.2	-3.3	-3.6	-6.1	-6.0	-4.0	-3.0	-2.4

※자료: 국세청 통계연보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표 128>은 기초공제와 일괄공제를 모두 폐지하는 대신 배우자 공제를 2배로 확대하는 경우의 과세방식 전환에 따른 유효세율 변화를 보여준다. 배우자 법정상속분에 대한 면세점이 60억 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상속재산의 규모가 크고 상속인 가운데 배우자가 있는 경우 유효세율이 큰 폭으로 감소한다. 구체적으로 상속재산 규모가 100억 원이면서 상속인이 배우자로만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 확대 전에 비하여 유효세율이 약 15%p 감소하며,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1명인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 확대 전에 비하여 유효세율이 약 10%p 감소한다. 요컨대 과세방식 전환에 따른 배우자 공제의 확대의 세부담 감소 효과는 배우자가 있으면서 자산규모가 비교적 큰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28〉 기초공제와 일괄공제를 폐지하고 배우자공제를 2배로 확대하는 경우
세부담(유효세율) 변화

(단위: %)

계산규모 인적특성	10억원	20억원	30억원	40억원	50억원	100억원	200억원	300억원	400억원	500억원
S0	0.0	0.0	0.0	-4.5	-11.2	-14.0	-7.0	-4.7	-3.5	-2.8
C1	13.5	9.0	6.0	5.6	4.5	2.3	1.1	0.8	0.6	0.5
C2	7.0	0.5	0.0	-1.3	-3.0	-2.6	-1.3	-0.9	-0.7	-0.5
C3	5.0	-3.3	-5.5	-5.8	-6.6	-7.5	-3.7	-2.5	-1.9	-1.5
SC1	6.0	5.8	5.0	4.5	3.6	-12.8	-8.7	-5.8	-4.3	-3.5
SC2	7.4	3.0	1.3	0.0	0.0	-8.6	-10.9	-7.4	-5.6	-4.4
SC3	7.3	0.8	-2.2	-3.3	-3.6	-6.6	-12.2	-9.0	-6.8	-5.4

※자료: 국세청 통계연보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라. 유산세 방식의 기초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표 129〉는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서 현행 유산세 방식의 기초공제 2억 원을 적용하는 경우의 유효세율 변화를 보여준다. 이로써 유산세 방식의 기초공제와 일괄공제를 모두 폐지하는 경우 소규모·소자녀 상속인들에게 집중되는 세부담 증가를 다소 경감시킬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상속인이 자녀 1명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C1)의 유효세율은 7.5%로서 기초공제를 적용하기 전에 비하여 유효세율이 약 6%p 감소된다.

〈표 129〉 기초공제 2억원을 적용하는 경우 세부담(유효세율) 변화

(단위: %)

계산규모 인적특성	10억원	20억원	30억원	40억원	50억원	100억원	200억원	300억원	400억원	500억원
S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C1	7.5	5.0	3.3	3.1	2.5	1.3	0.6	0.4	0.3	0.3
C2	3.0	-2.5	-2.7	-3.3	-4.6	-3.6	-1.8	-1.2	-0.9	-0.7
C3	1.0	-6.3	-7.5	-7.8	-8.2	-8.5	-4.2	-2.8	-2.1	-1.7
SC1	4.4	4.6	3.9	3.7	3.0	-3.2	-1.7	-1.1	-0.8	-0.7
SC2	5.1	1.6	0.1	-1.1	-0.9	-5.9	-4.1	-2.7	-2.1	-1.6
SC3	4.7	-0.5	-3.5	-4.3	-4.7	-6.7	-6.5	-4.4	-3.3	-2.6

※자료: 국세청 통계연보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1996년 이후 기초공제가 2억 원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으나 그간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때 실질 소비력을 기준으로 기초공제액은 3억 원 이상이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초공제의 확대는 소규모·소자녀 상속인들에게 집중되는 세부담의 증가를 경감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표 130〉은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서 기초공제 3억 원을 적용하는 경우의 유효세율 변화를 보여준다. 예컨대 상속인이 자녀 1명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C1)의 유효세율이 4.5%로서 기초공제를 적용하기 전에 비하여 유효세율이 약 9%p 감소된다.

〈표 130〉 기초공제 3억원을 적용하는 경우 세부담(유효세율) 변화

(단위: %)

세안규모 인적특성	10억원	20억원	30억원	40억원	50억원	100억원	200억원	300억원	400억원	500억원
S0	0.0	0.0	0.0	-0.8	-0.8	-0.5	-0.3	-0.2	-0.1	-0.1
C1	4.5	3.0	2.0	1.9	1.5	0.8	0.4	0.3	0.2	0.2
C2	1.0	-4.0	-4.0	-4.3	-5.4	-4.1	-2.1	-1.4	-1.0	-0.8
C3	-1.0	-7.8	-8.5	-8.8	-9.0	-9.0	-4.5	-3.0	-2.2	-1.8
SC1	3.6	4.0	3.4	3.3	2.6	-3.7	-1.9	-1.3	-1.0	-0.8
SC2	4.0	1.1	-0.4	-1.7	-1.4	-6.3	-4.4	-2.9	-2.2	-1.7
SC3	3.3	-1.2	-4.2	-4.8	-5.2	-7.1	-6.8	-4.5	-3.4	-2.7

※자료: 국세청 통계연보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마. 유산세 방식의 기초공제를 적용하면서 배우자공제 제도를 확대

〈표 131〉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기초공제 2억 원을 적용하고 배우자 공제를 2배로 확대하는 경우, 〈표 132〉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기초공제 3억 원을 적용하고 배우자 공제를 2배로 확대하는 경우의 유효세율 증감을 각각 보여준다.

〈표 131〉 기초공제 2억원을 적용하고 배우자공제를 2배로 확대하는 경우
세부담(유효세율) 변화

(단위: %)

세안규모 인적특성	10억원	20억원	30억원	40억원	50억원	100억원	200억원	300억원	400억원	500억원
S0	0.0	0.0	0.0	-4.5	-11.2	-15.0	-7.5	-5.0	-3.8	-3.0
C1	7.5	5.0	3.3	3.1	2.5	1.3	0.6	0.4	0.3	0.3
C2	3.0	-2.5	-2.7	-3.3	-4.6	-3.6	-1.8	-1.2	-0.9	-0.7
C3	1.0	-6.3	-7.5	-7.8	-8.2	-8.5	-4.2	-2.8	-2.1	-1.7
SC1	4.4	4.6	3.9	3.7	3.0	-13.2	-9.2	-6.1	-4.6	-3.7
SC2	5.1	1.6	0.1	-1.1	-0.9	-9.1	-11.3	-7.7	-5.8	-4.6
SC3	4.7	-0.5	-3.5	-4.3	-4.7	-7.2	-12.6	-9.4	-7.0	-5.6

※자료: 국세청 통계연보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표 132〉 기초공제 3억원을 적용하고 배우자공제를 2배로 확대하는 경우
세부담(유효세율) 변화

(단위: %)

세안규모 인적특성	10억원	20억원	30억원	40억원	50억원	100억원	200억원	300억원	400억원	500억원
S0	0.0	0.0	0.0	-4.5	-11.2	-15.5	-7.8	-5.2	-3.9	-3.1
C1	4.5	3.0	2.0	1.9	1.5	0.8	0.4	0.3	0.2	0.2
C2	1.0	-4.0	-4.0	-4.3	-5.4	-4.1	-2.1	-1.4	-1.0	-0.8
C3	-1.0	-7.8	-8.5	-8.8	-9.0	-9.0	-4.5	-3.0	-2.2	-1.8
SC1	3.6	4.0	3.4	3.3	2.6	-13.4	-9.4	-6.3	-4.7	-3.8
SC2	4.0	1.1	-0.4	-1.7	-1.4	-9.3	-11.6	-7.9	-5.9	-4.7
SC3	3.3	-1.2	-4.2	-4.8	-5.2	-7.4	-12.8	-9.5	-7.1	-5.7

※자료: 국세청 통계연보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2. 과세방식 전환에 따른 세수 증감 시뮬레이션

상속세 과세방식의 전환 및 공제제도의 개편에 따른 세수 증감 추계액을 부록에서 제시하였다. 세수의 증감은 재산규모·인적특성별 연간 추정 상속건수에 상속재산금액과 유효세율 증감을 곱하여 산출하였다.

<표 133>은 기초공제와 일괄공제를 모두 폐지하고 자녀 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경우 재산규모·인적특성별 상속세 세수 증감 추계액을 보여준다. 전체 상속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85%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속재산 규모 10억~30억 원에서 상속세 세수가 약 1조 원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재산규모가 60억 원 이상부터 세수가 감소하여 전체 세수는 약 8,158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표 134>는 기초공제와 일괄공제를 모두 폐지하고 배우자 공제를 2배로 확대하는 경우 재산규모·인적특성별 상속세 세수 증감 추계액을 보여준다. 상속재산 규모 10억~30억 원에서는 배우자 공제 확대 전에 비하여 상속세 세수의 변화가 없으나, 상속재산 규모 50억 원 이상에서 배우자 공제 확대 전에 비하여 상속세 세수가 약 9,613억 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상속세는 약 825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표 135>는 유산취득세로 과세방식을 전환하면서 기초공제 2억 원을 적용하는 경우 재산규모·인적특성별 상속세 세수 증감 추계액을 보여준다. 상속재산 규모 10억~30억 원에서 상속세 세수가 약 4,821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상속재산 규모 50억 원 이상에서 약 4,164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상속세는 약 656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표 136>은 유산취득세로 과세방식을 전환하면서 기초공제 3억 원을 적용하는 경우 재산규모·인적특성별 상속세 세수 증감 추계액을 보여준다. 상속재산 규모 10억~20억 원에서 상속세 세수가 약 2,48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상속재산 규모 30억 원 이상에서 약 5,509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상속세는 약 656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표 137>은 기초공제 2억원을 적용하고 배우자 공제를 2배로 확대하는 경우 상속세 세수 증감 추계액을 보여준다. 상속재산 규모 10억~30억 원에서 상속세 세수가 약 4,821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상속재산 규모 40억 원 이상에서 약 1조 1,185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상속세는 약 6,364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표 138>은 기초공제 3억원을 적용하고 배우자 공제를 2배로 확대하는 경우 상속세 세수 증감 추계액을 보여준다. 상속재산 규모 10억~20억 원에서 상속세 세수가 약 2,48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상속재산 규모 30억 원 이상에서 약 1조 2,376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상속세는 약 9,896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표 133> 기초공제와 일괄공제를 폐지하는 경우 세수의 증감

(단위: 억원)

세안규모 인적특성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50	200	250	350	450	500	합계
S0	0	0	0	77	55	30	23	18	14	11	26	11	6	3	2	4	280
C1	706	1,426	419	216	117	63	38	32	25	18	43	18	11	5	2	7	3,145
C2	597	129	0	(79)	(126)	(113)	(73)	(57)	(47)	(34)	(81)	(34)	(21)	(10)	(5)	(13)	35
C3	96	(189)	(142)	(81)	(63)	(43)	(32)	(32)	(29)	(22)	(52)	(22)	(15)	(7)	0	(7)	(640)
SC1	700	2,034	780	385	207	37	(12)	(36)	(42)	(42)	(101)	(42)	(26)	(12)	(7)	(16)	3,808
SC2	1,415	1,733	327	0	0	0	(32)	(123)	(154)	(148)	(504)	(216)	(130)	(65)	(29)	(79)	1,996
SC3	315	109	(124)	(104)	(76)	(53)	(42)	(40)	(39)	(42)	(177)	(84)	(48)	(24)	(12)	(24)	(466)
합계	3,829	5,242	1,261	416	115	(79)	(128)	(238)	(272)	(260)	(846)	(370)	(222)	(111)	(49)	(129)	8,158

※자료: 국세청 통계, 통계청 인구총조사, 재정패널데이터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표 134> 기초공제와 일괄공제를 폐지하고 배우자공제를 2배로 확대하는 경우 세수의 증감

(단위: 억원)

세안규모 인적특성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50	200	250	350	450	500	합계
S0	0	0	0	(232)	(386)	(355)	(276)	(234)	(196)	(154)	(364)	(154)	(84)	(42)	(28)	(56)	(2,562)
C1	706	1,426	419	216	117	63	38	32	25	18	43	18	11	5	2	7	3,145
C2	597	129	0	(79)	(126)	(113)	(73)	(57)	(47)	(34)	(81)	(34)	(21)	(10)	(5)	(13)	35
C3	96	(189)	(142)	(81)	(63)	(43)	(32)	(32)	(29)	(22)	(52)	(22)	(15)	(7)	0	(7)	(640)
SC1	700	2,034	780	385	207	(37)	(137)	(209)	(234)	(230)	(746)	(312)	(191)	(87)	(52)	(121)	1,751
SC2	1,415	1,733	327	0	0	0	(32)	(161)	(231)	(251)	(1,329)	(653)	(400)	(200)	(89)	(244)	(113)
SC3	315	109	(124)	(104)	(76)	(53)	(42)	(40)	(39)	(46)	(279)	(171)	(106)	(54)	(27)	(54)	(791)
합계	3,829	5,242	1,261	106	(327)	(538)	(552)	(701)	(751)	(719)	(2,808)	(1,328)	(804)	(396)	(199)	(489)	825

※자료: 국세청 통계, 통계청 인구총조사, 재정패널데이터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표 135> 기초공제 2억원을 적용하는 경우 세수의 증감

(단위: 억원)

예산규모 인의특성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50	200	250	350	450	500	합계
S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C1	392	792	233	120	65	35	21	18	14	10	24	10	6	2	1	4	1,747
C2	256	(647)	(304)	(204)	(193)	(149)	(101)	(79)	(65)	(47)	(112)	(47)	(29)	(14)	(7)	(18)	(1,759)
C3	19	(364)	(194)	(109)	(78)	(51)	(37)	(36)	(32)	(25)	(59)	(25)	(17)	(8)	0	(8)	(1,024)
SC1	513	1,610	614	317	170	(4)	(43)	(63)	(63)	(58)	(144)	(60)	(37)	(17)	(10)	(23)	2,702
SC2	980	949	36	(160)	(86)	(46)	(60)	(154)	(182)	(171)	(574)	(246)	(148)	(74)	(33)	(90)	(59)
SC3	200	(65)	(201)	(136)	(98)	(65)	(49)	(46)	(44)	(47)	(192)	(91)	(52)	(26)	(13)	(26)	(950)
합계	2,361	2,275	185	(171)	(220)	(280)	(268)	(360)	(372)	(339)	(1,057)	(460)	(276)	(137)	(62)	(162)	656

※자료: 국세청 통계, 통계청 인구총조사, 재정패널데이터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표 136> 기초공제 3억원을 적용하는 경우 세수의 증감

(단위: 억원)

예산규모 인의특성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50	200	250	350	450	500	합계
S0	0	0	0	(39)	(28)	(15)	(12)	(9)	(7)	(6)	(13)	(6)	(3)	(2)	(1)	(2)	(140)
C1	235	475	140	72	39	21	13	11	8	6	14	6	4	2	1	2	1,048
C2	85	(1,035)	(456)	(267)	(227)	(167)	(115)	(90)	(74)	(53)	(127)	(53)	(33)	(16)	(8)	(21)	(2,657)
C3	(19)	(451)	(219)	(123)	(85)	(55)	(39)	(38)	(34)	(27)	(63)	(27)	(18)	(9)	0	(9)	(1,215)
SC1	420	1,398	530	282	152	(21)	(58)	(77)	(74)	(66)	(166)	(69)	(42)	(19)	(12)	(27)	2,151
SC2	762	619	(109)	(240)	(129)	(69)	(75)	(170)	(196)	(183)	(609)	(261)	(157)	(78)	(35)	(96)	(1,025)
SC3	143	(152)	(239)	(151)	(109)	(71)	(53)	(49)	(46)	(49)	(199)	(95)	(54)	(27)	(14)	(27)	(1,192)
합계	1,627	853	(353)	(465)	(387)	(377)	(338)	(422)	(422)	(378)	(1,162)	(505)	(303)	(150)	(68)	(179)	(3,029)

※자료: 국세청 통계, 통계청 인구총조사, 재정패널데이터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표 137> 기초공제 2억원을 적용하고 배우자공제를 2배로 확대하는 경우 세수의 증감

(단위: 억원)

계산규모 인의특성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50	200	250	350	450	500	합계
S0	0	0	0	(232)	(386)	(355)	(290)	(248)	(207)	(165)	(390)	(165)	(90)	(45)	(30)	(60)	(2,664)
C1	392	792	233	120	65	35	21	18	14	10	24	10	6	2	1	4	1,747
C2	256	(647)	(304)	(204)	(193)	(149)	(101)	(79)	(65)	(47)	(112)	(47)	(29)	(14)	(7)	(18)	(1,759)
C3	19	(364)	(194)	(109)	(78)	(51)	(37)	(36)	(32)	(25)	(59)	(25)	(17)	(8)	0	(8)	(1,024)
SC1	513	1,610	614	317	170	(57)	(149)	(222)	(244)	(237)	(784)	(330)	(202)	(92)	(55)	(128)	725
SC2	980	949	36	(160)	(86)	(46)	(60)	(184)	(249)	(264)	(1,381)	(681)	(418)	(209)	(93)	(255)	(2,120)
SC3	200	(65)	(201)	(136)	(98)	(65)	(49)	(46)	(44)	(50)	(290)	(177)	(109)	(56)	(28)	(56)	(1,269)
합계	2,361	2,275	185	(404)	(606)	(688)	(664)	(797)	(827)	(778)	(2,992)	(1,415)	(858)	(422)	(212)	(522)	(6,364)

※자료: 국세청 통계, 통계청 인구총조사, 재정패널데이터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표 138> 기초공제 3억원을 적용하고 배우자공제를 2배로 확대하는 경우 세수의 증감

(단위: 억원)

계산규모 인의특성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50	200	250	350	450	500	합계
S0	0	0	0	(232)	(386)	(355)	(297)	(256)	(213)	(171)	(403)	(171)	(93)	(47)	(31)	(62)	(2,715)
C1	235	475	140	72	39	21	13	11	8	6	14	6	4	2	1	2	1,048
C2	85	(1,035)	(456)	(267)	(227)	(167)	(115)	(90)	(74)	(53)	(127)	(53)	(33)	(16)	(8)	(21)	(2,657)
C3	(19)	(451)	(219)	(123)	(85)	(55)	(39)	(38)	(34)	(27)	(63)	(27)	(18)	(9)	0	(9)	(1,215)
SC1	420	1,398	530	282	152	(67)	(155)	(228)	(248)	(240)	(803)	(339)	(207)	(94)	(57)	(132)	211
SC2	762	619	(109)	(240)	(129)	(69)	(75)	(195)	(258)	(271)	(1,407)	(694)	(427)	(213)	(95)	(261)	(3,061)
SC3	143	(152)	(239)	(151)	(109)	(71)	(53)	(49)	(46)	(52)	(295)	(180)	(111)	(57)	(29)	(57)	(1,507)
합계	1,627	853	(353)	(659)	(745)	(763)	(720)	(844)	(865)	(808)	(3,084)	(1,458)	(885)	(435)	(218)	(539)	(9,896)

※자료: 국세청 통계, 통계청 인구총조사, 재정패널데이터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VI. 결론

우리나라는 상속세법 제정 시부터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다. 유산세 방식하에서 개별적인 조세회피 사례에 대처하기 위해 입법을 보완하면서 지금까지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각종 상속공제 제도는 1997년 이후로 거의 개정이 되지 않고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상속세는 대자산가만 부담하는 세제라는 인식이 흔들리고 있다. 부동산 자산 가격이 상승하고 실거래 반영 비율이 높아지면서 중산층까지 상속세를 부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상속세는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미미하지만 부의 재분배를 통한 자본주의 모순을 제거하는 수단이라는 정책적인 당위성을 가진 조세이다. 따라서 상속세의 정책적인 성격을 유지하면서 중산층의 세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상속세 폐지론보다는 상속세제 개편 논의가 더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 상속세제 개편 논의 중 대표적인 것이 현재의 유산세 과세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OECD 국가 중 상속세제를 갖고 있는 국가들은 대부분 유산취득세 방식을 취하고 있다.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 각자의 인적사정에 따라 공제가 가능하므로 담세력에 따른 과세라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할 때 각종 공제제도의 변경이 불가피하다. 또한 세수에 미치는 영향과 소득계층에 따라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OECD 국가들의 인적공제 제도를 검토하여 향후 과세방식 전환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생존 배우자에 대한 공제 확대 또는 배우자의 상속세 완전면제, 인적공제 제도의 확대(자녀 연령에 따른 차등, 장애등급에 따른 차등, 인적관계의 확대), 물가상승을 반영한 공제금액의 변동, 인적관계에 따른 세율의 차등화, 배우자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확대, 금융재산공제 폐지 등을 제안하였다.

유산취득세로 상속세 과세방식을 전환하게 되면 상속재산의 규모 및 상속인의 구성에 따른 세부담 변동의 불균형이 야기될 수 있다. 상속재산의 규모가 크고 자녀 수가 많을수록 과세표준 분할에 따른 세부담 감소가 예상되지만, 기초공제와 일괄공제가 폐지되면 상속재산 규모가 크지 않고 자녀 수가 적은 상속인들의 세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대규모·다자녀 상속의 세부담 감소와 소규모·소자녀 상속의 세부담 증가라는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공제제도의 개편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유산취득세로의 상속세 개편에 따른 세부담 증감의 불균형을 해결하고자 본 연구는 실행 가능한 두 가지의 개편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유산세 방식의 기초공제를 적용하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3억으로 공제금액을 확대한다. 둘째, 배우자공제를 현행 수준의 2배로 확대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세부담 예측에 기초한 합리적인 상속공제 개편방안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성훈, 오종현, “상속과 증여에 대한 세부담 격차 연구”, 재정학연구 제14권 제2호(통권 제109호), 2021.
- 기석도, “주요 OECD 국가의 상속·증여세부담에 관한 비교분석”, 산업경제연구 제34권 제4호(통권 제156호), 한국산업경제학회, 2021.
- 김광현, “우리나라의 상속세 공제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회계학회 학술발표논문집, 한국세무회계학회, 2001. 12.
- 김대홍, “영국의 기업승계를 위한 사업자산공제에 관한 연구”, 중견기업연구 제10권 제1호, 2023. 4.
- 김두복, 서희열, “상속세 과세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과세체계와 배우자상속공제를 중심으로”, 세무학연구 제35권 제2호, 한국세무학회, 2018.
- 김두형, “배우자 상속공제와 적용요건에 관한 연구”, 일감법학 제31호,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6.
- _____, “상속공제 적용 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논집 제33권 제2호, 2020.
- 김병일, “상속세 증여세제 개편방안”, 조세연구 제17권 제3집, 한국조세연구포럼, 2017. 9.
- 김석환, “이전세제 개편 논의와 시사점에 대한 고찰-미국의 유산세 폐지와 우리나라의 포괄주의 증여과세를 중심으로”, 강원법학 제28권, 2009.
- 김신언, “유산세형 상속과세제도에서 우리나라 상속공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세와 법 제4권 제2호, 2011.
- 김유찬, 이유향, 「주요국의 조세제도-독일편」, 한국재정연구원, 2009.
- 김정식, “부부단위 과세제도의 입법론적 연구-상속세 및 증여세를 중심으로-”, 조세법연구 제11권 제2호, 2005.
- 김혜성, 이영한, 최기호, “상속세의 자본이득세 전환 검토”, 세무학연구 제39권 제1호, 한국세무학회, 2022.
- 박민, “미국의 상속세 폐지에 관한 연구—찬·반 양론을 중심으로”, 조세학술논집 제20집, 2004.
- 박성만, 정범식,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공제 개선방안”, 재정정책논집, 제13집 제4호, 한국재정정책학회, 2011, 12.

- 박성욱, 이재호, 전해진, “상속세 세율 및 인적공제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 조세연구 제 23권 제3집, 한국조세연구포럼, 2023.
- 박준, “상속세 및 증여세 개선방안 연구-공제조항 및 부동산 과세체계를 중심으로-”, 공간과 사회 제31권 제2호(통권 76호), 2021.
- 박훈, 채현석, 「상속 증여세 실무해설」, 삼일인포마인, 2012.
- 송원근, 유진성, 허원제, 김영신, “주요국의 상속·증여세 최근 동향 및 시사점”, 정책연구 13-14, 한국경제연구원, 2013. 11.
- 서정우, “주요국의 상속세 과세제도 비교 및 시사점 : 인적·물적공제 및 세율제도를 중심으로”, 조세연구 제18권 제3집(통권 제41권), 한국조세연구포럼, 2018.
- 신호영,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유산세방식의 헌법적 정당성 연구—헌법상 평등원칙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저스티스 통권 제163호, 2017. 12.
- 심충진, “상속세 과세체계와 인적공제에 대한 연구”, 세무와 회계연구 통권 제17호(제8권 제1호), 한국세무학회, 2018.
- 안호영, 박훈, “상속세 과세방식 전환 시 법제도적 개선방안 연구-위장분할 방지를 중심으로-”, 세무학연구 제32권 제1호, 한국세무학회, 2015.
- 원종학, 「주요국의 상속증여세제 현황 및 최근 동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2.
- 이상신,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 세무와 회계저널 제20권 5호, 한국세무학회, 2019.
- _____, “유산취득세 전환의 법적 쟁점”, 2023년 한국세법학회 제29회 하계학술대회, 한국세법학회, 2023.
- 이정민,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요건으로서 피상속인의 당해 주택의 10년간 보유가 필요한지 여부”, 조세와 법 제8권 제1호, 2015. 6.
- 정지선, “상속시 정산과세제도의 합리적인 정착방안에 관한 연구”, 조세와 법 제2권 제1호, 2009. 6.
- 최명근, “우리나라 상속과세체계의 개편시론”, 재정논집 제5집, 한국재정학회, 1991.
- _____, 「미국의 유산세 폐지와 정책적 시사점」, 한국조세연구원, 2002.
- _____, 「상속과세존폐론」, 경제법률평론, 2007.
- 한상국, 배준호, “상속세 배우자공제한도제도의 개편방향 검토”, 재정금융연구 제3권 제2호, 1996. 12.
- 황헌순, “일본 상속세제의 시사점”, 2023년 한국세법학회 제29회 하계학술대회 발표자

료, 한국세법학회, 2023.

국회예산정책처, OECD 회원국들의 상속 관련 세제와 시사점, 외국 입법·정책 분석, 2021.

EY, 「Worldwide estate and inheritance tax guide」, 2023.

IBFD - Tax Research Platform (<https://research.ibfd.org/#/>)

IRS, Publication 5332(Rev.2-2021)

OECD, Inheritance Taxation in OECD Countries, 2021.

OECD, Questionnaire on Inheritance, Estate, and Gift Taxes, 2020.

OECD, Tax database(<https://www.oecd.org/tax/tax-policy/tax-database>)

Robin Boadway, Emma Chamberlain, and Carl Emmerson, Taxation of Wealth and Wealth Transfers, 2010. 04.